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528호

2019. 7. 4.(목)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9-1797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5
제2019-180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제2019-182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제2019-182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고 시

제2019-210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0
제2019-211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8
제2019-212호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57
제2019-213호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고시	71
제2019-21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1
제2019-215호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98
제2019-216호 수색·중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99
제2019-217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고시	110
제2019-218호 2019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115

◆ 공 고

제2019-1746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16
제2019-174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120
제2019-1766호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21

제2019-1767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 작성(경미한 사항 변경) 열람 공고 ..	122
제2019-17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23
제2019-1774호 2019년도 제8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124
제2019-178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28
제2019-1803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	130
제2019-1804호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36
제2019-1805호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152
제2019-1813호 공시송달 공고	170

◆ 구 고 시

제2019-84호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171
제2019-6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달맞이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의 고시(성동구)	178
제2019-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강북구)	180
제2019-88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정정) 고시 (도봉구)	185
제2019-7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188
제2019-9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대문구)	190
제2019-91호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마포구)	192
제2019-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 고시 (양천구)	195
제2019-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강서구) ..	198
제2019-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동작구)	201
제2019-12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서초구)	204

◆ 구 공 고

제2019-614호 도시계획시설(새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위한 열람공고(용산구)	207
제2019-615호 도시계획시설(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위한 열람공고(용산구)	209
제2019-616호 도시계획시설(이촌소공원 조성사업)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위한 열람공고(용산구)	211
제2019-67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동네뒷산공원화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노원구)	213
제2019-6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마포구)	222
제2019-99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강서구)	225
제2019-10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228
제2019-1158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I-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영등포구)	230

◆ 사업소고시

제2019-1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3
제2019-1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3
제2019-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4
제2019-1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4
제2019-1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5
제2019-1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5
제2019-1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6
제2019-1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6
제2019-1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7
제2019-1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37

◆ 사업소공고

제2019-16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238
--	-----

◆ 기 타

제2019-18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43
제2019-18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43
제2019-18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44
제2019-18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45
제2019-19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정정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46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97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먹거리시민위원회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 및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발전을 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0일까지 연장하는 조문 신설(안 제35조)

나. 기존의 위원회 존속기한 부칙 조문 폐지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정책과(전화 : 02-2133-4709, 팩스 : 02-2133 -49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0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015. 7. 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개정하였으나, 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음.
- 나. 이에 따른 조례 적용 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규정의 시행(2015. 7. 30.) 전 결정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15. 7. 30.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981호)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
- 나. 조례의 시행(2015. 7. 30.) 이전에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또는 지구 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2133-8327, FAX: 2133-0736, E-mail: brickjan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2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분장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별 사무분장 사항 등을 규정하고, 타 실·본부·국과의 업무를 조정·이관함

-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을 둠(안 제143조)
- 2) 실·본부·국별 부서 및 사무 이관(안 제5조, 제10조, 제17조의2)
 - ▶ 민관협력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 민주시민교육 업무: 평생교육국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나. 실·본부·국별 부서 신설(안 제5조 및 제141조)

- 1) 서울혁신기획관에 전환도시담당관 신설: 전환도시 정책, 국제 행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업 등 분장
 - 2) 감사위원회에 공공감사담당관 신설: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등 분장
- 다. 보조기관·보좌기관 신설 및 직제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1) 보조기관 직제정비: 경제일자리기획관(경제정책실), 복지기획관(복지정책실)
- 2) 보좌기관 신설 및 직제정비: 보행친화기획관(도시교통실)

라. 그 밖에 실·본부·국 내의 직제 및 사무분장 등 정비

- 1) 도시기반시설본부(안 제69조)
 - ▶ 동북선2과 신설: 동북선 착공에 따른 직제 신설
 - ▶ 과 단위 명칭변경: 경전철과 → 신립선과, 신교통과 → 동북선1과
- 2) 개관예정인 서울생활사박물관 관련 업무를 서울역사박물관에 신설함(안 제97조)
 - ▶ 단, 개관시기를 고려하여 2019. 8. 1.부터 시행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4, FAX: 02-2133-0822, E-mail: 201211268@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2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61명)

나. 업무이관 및 효율적인 인력운용 등을 위한 직렬 조정 및 이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신설 및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 (+61명)

1)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 3급 이상 행정기구 신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조사를 전담하는 ‘공공감사담당관’ 신설 등 시정 핵심사업 추진인력 증원(+56명)

2)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등 의정활동 지원 인력 증원(+5명)

나. 행정기구 신설, 업무이관, 효율적인 인력운용 등을 위한 직렬 조정 및 정원 이체 (71명)

- 1) 공공개발 기능 강화를 위한 직렬 조정(1명)
-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정원 이체(58명): 본청 4급 △3, 5급 이하 △55 → 합의제 4급 +3, 5급 이하 +55
- 3) 납세자보호관 업무 이관(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법무담당관)에 따른 정원 이체(1명): 합의제 5급 이하 △1 → 본청 5급 이하 +1
- 4) 서울생활사박물관 업무 이관(박물관과 → 서울역사박물관)에 따른 정원 이체 (11명): 본청 5급 이하 △11 → 사업소 5급 이하 +1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4, FAX: 02-2133-0822, E-mail: 201211268@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0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호(1968.0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4.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6호(2018.3.2)로 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시설외지구)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신림공영차고지(중복결정)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3. 면 적 : 12,376,760㎡(시설외지구 10,277,293㎡)****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관악구 공원녹지과(☎ 879-6521)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지구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원 시설 구역	계	12,376,760	683,906.59	83	32,885.53	92,155.82	1,238	12,376,760	686,423.19	83	32,885.53	92,155.82	1,247	증)2,516.6㎡
	소계	2,099,467	512,514.55	71	32,001.73	91,132.02	1,121	2,099,467	512,514.55	71	32,001.73	91,132.02	1,121	
	관음사지구	205,952	35,316	4	175.18	175.18	63	205,952	35,316	4	175.18	175.18	63	
	낙성대지구	435,578	163,645.4	27	17,447.20	49,810.40	208	435,578	163,645.4	27	17,447.20	49,810.40	208	
	청룡산지구	208,071	31,716	6	1,493	2,483	99	208,071	31,716	6	1,493	2,483	99	
	신림동계곡지구	409,039	107,493	13	4,161.26	16,399.01	64	409,039	107,493	13	4,161.26	16,399.01	64	
	약수암지구	361,723	48,264	4	1,233	4,675	139	361,723	48,264	4	1,233	4,675	139	
	독산지구	227,188	62,733.80	12	5,153.84	14,941.28	309	227,188	62,733.80	12	5,153.84	14,941.28	309	
	선우지구	75,393	17,719.05	2	789.05	789.05	27	75,393	17,719.05	2	789.05	789.05	27	
	호암사지구	126,784	29,281	1	81.9	163.8	23	126,784	29,281	1	81.9	163.8	23	
	삼성산지구	10,118	3,192				41	10,118	3,192				41	
	신도비지구	9,394	3,684	1	59	59	30	9,394	3,684	1	59	59	30	
우림지구	3,869	731				14	3,869	731				14		
문성지구	26,358	8,739.30	1	1,408.30	1,636.30	104	26,358	8,739.30	1	1,408.30	1,636.30	104		
시설지구외	10,277,293	171,392.04	12	883.80	1,023.80	117	10,277,293	173,908.64	12	883.80	1,023.80	126	증)2,516.6㎡	
시설구역률(법정 20%)		(2,099,467 / 12,376,760) * 100 = 16.96%						(2,099,467 / 12,376,760) * 100 = 16.96%						
시설률(법정 20%이하)		(683,906.59 / 12,376,760) × 100 = 5.53%						(686,423.19 / 12,376,760) × 100 = 5.54%						증) 0.01%
건폐율(법정 4%이하)		(32,885.53 / 12,376,760) × 100 = 0.27%						(32,885.53 / 12,376,760) × 100 = 0.27%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시설외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시설지구외 - 총괄표(관악구 신림동 140-2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등)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등)	바닥면적 (㎡)	연면적 (㎡)												
기반 시설	계	10,277,293.00	171,392.04	12	883.80	1,023.80	117	10,277,293.00	173,908.64	12	883.80	1,023.80	126	증2,516.60										
	소 계	230,459.95	97,851.95					232,811.95	100,203.95					증 2,352.0										
	도 로	210,659.95	97,851.95					213,011.95	100,203.95					증 2,352.0										
	광 장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녹지연결로	(1,254.00)	(1,254.00)					(1,254.00)	(1,254.00)															
	조 경 시 설	1,543.40	1,543.40				31	1,543.40	1,543.40				31											
	유 희 시 설																							
	휴 양 시 설	52,165.81	52,165.81	6	308.00	448.00	50	52,330.41	52,330.41	6	308.00	448.00	59	증 164.60										
	교 양 시 설																							
	운 동 시 설																							
	편 의 시 설	13,919.00	13,919.00	1	33.00	33.00	18	13,919.00	13,919.00	1	33.00	33.00	18											
	관 리 시 설	5,911.88	5,911.88	5	542.80	542.80	18	5,911.88	5,911.88	5	542.80	542.80	18											
	녹지 및 기타	9,973,292.96						9,970,776.36		(7)	(1,071.79)	(1,743.04)		감 2,516.60										
	시 설 륜 (법정 20%)	(171,392.04 / 10,277,293) * 100 = 1.67%																(173,908.64 / 10,277,293) * 100 = 1.69%		증 0.02%				
	건 폐 율 (법정 4%)	(883.8 / 10,277,293) * 100 = 0.009%																(883.8 / 10,277,293) * 100 = 0.009%		-				

나. 시설조서(시설지구외)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변경전		구조	규모	변경후		구조	규모	비고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물(㎡)	공작물(기)			
합계	소계			10,277,293.71	71,392.04	883.8	1,023.8		12층	883.8	1,023.8		12층	중 2,516.6
	도로			230,459.93	97,851.95									중 2,352.0
기반시설	광장	가	서울대 입구	19,800	(19,800)									중 2,352.0
	녹지 연결로	가-1	삼성동 산 87-11	(1,004)	(1,004)									
		가-2	신림동 336-8	(250)	(250)									
	소계			1,543.4	1,543.4		31							
	맞이마당	맞	삼성동 산 86-6	534.6	534.6									
조경	조형	모	삼성동 산86-6	(20.9)	(20.9)		1	목재						
	피고라	자	삼성동 산86-6	(6.2)	(6.2)		1	목재						
녹지 공간소	초정	차	삼성동 산86-6	(12.5)	(12.5)		2	목재						
	노기 공간소	이	삼성동 산86-6	(24.0)	(24.0)		1	목재						
작업대	작업대	보	삼성동 산86-6	(4.8)	(4.8)		3	목재						
	토양 관찰시설	소	삼성동 산86-6	(0.8)	(0.8)		3	목재						
퇴비장	퇴비장	오	삼성동 산86-6	(24.0)	(24.0)		1	목재						
		카	삼성동 산86-6	515.7	515.7									
잔디마당	잔디마당	카-1	삼성동 산86-6	(413.6)	(413.6)									
		카-2	삼성동 산86-6	(27.1)	(27.1)									
		카-3	삼성동 산86-6	(75.0)	(75.0)									
		하	삼성동 산86-6	154.1	154.1									
생태연못	생태연못	하-1	삼성동 산86-6	(15.0)	(15.0)									
		하-2	삼성동 산86-6	(139.1)	(139.1)									
창포원	창포원	기	삼성동 산86-6	134.7	134.7									
		기-1	삼성동 산86-6	(94.6)	(94.6)									
		기-2	삼성동 산86-6	(40.1)	(40.1)									
		니	삼성동 산86-6	115.9	115.9									
계류	계류	니-1	삼성동 산86-6	(78.2)	(78.2)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변경 후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조 경 시 설	계류	나-2	삼성동 산86-6임	(13.1)	(13.1)												
		나-3	삼성동 산86-6임	(24.6)	(24.6)												
	계단	리	삼성동 산86-6임	4.0	4.0					1						1	
		미	삼성동 산86-6임	(7)	(7)	목재				7	목재					7	
	침식 방지 시설	키	삼성동 산86-6임														
		티	삼성동 산86-6임	11.2	11.2	목재				1						1	
	아령조류관 철대	히	삼성동 산86-6임			목재				1						1	
		도	삼성동 산86-6임	24.9	24.9	목재				3						3	
	목교	노-1	삼성동 산86-6임	(12.6)	(12.6)	목재				(1)						(1)	
		노-2	삼성동 산86-6임	(6.6)	(6.6)	목재				(1)						(1)	
휴 양 시 설	데크	노-3	삼성동 산86-6임	(5.7)	(5.7)	목재				(1)						(1)	
		데	삼성동 산86-6임	32.3	32.3	목재				3						3	
	데크	도-1	삼성동 산86-6임	(4.4)	(4.4)	목재				(1)						(1)	
		도-3	삼성동 산86-6임	(2.1)	(2.1)	목재				(1)						(1)	
	데크	노-6	삼성동 산86-6임	(25.8)	(25.8)	목재				(1)						(1)	
		로	삼성동 산86-6임	16.0	16.0					3						3	
	토9미생물 관개용 소 계	나	10 개소	52,165.81	52,165.81		6통	308	448	50						59	총 164.60
		나-1	신림 산105-23일대	21,879	21,879					16						16	
	휴양소	나-2	신림 산105-30일대	(3,400)	(3,400)												
		나-3	신림 125-4일대	(2,240)	(2,240)												
휴 양 시 설	휴양소	나-4	신림 125-4일대	(1,080)	(1,080)												
		나-5	신림 산56-2일대	(980)	(980)	목조				(4)						(4)	
	휴양소	나-6	신림 산29일대	(3,240)	(3,240)					(2)						(2)	
		나-7	신림 산52	(2,520)	(2,520)												
	휴양소	나-8	신림 산29	(1,440)	(1,440)	목조				(1)						(1)	
		나-9	신림 산29	(1,224)	(1,224)	목조				(2)						(2)	
	휴양소	나-10	신림 산29	(1,995)	(1,995)	목조				(4)						(4)	
		나-11	신림 산29	(3,760)	(3,760)	목조				(4)						(4)	
	휴양소	나-12	신림 산29	(3,760)	(3,760)	목조				(4)						(4)	
		나-13	신림 산29	(3,760)	(3,760)	목조				(4)						(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야유회장		다	3 개소	8,280	8,280		1동	128	128	3	다	3 개소	8,280	8,280		1동	128	128	3				
		다-1	신림 산57-13일대	(1,080)	(1,080)						다-1	신림 산57-13일대	(1,080)	(1,080)									
		다-2	신림 산57-13일대	(2,160)	(2,160)					(3)	다-2	신림 산57-13일대	(2,160)	(2,160)					(3)				
		다-3	신림 산57-13일대	(5,040)	(5,040)	목조	(1동)	(128)	(128)		다-3	신림 산57-13일대	(5,040)	(5,040)	목조	(1동)	(128)	(128)					
	야영장	라	4 개소	13,430	13,430		1동	40	40	22	라	4 개소	13,430	13,430		1동	40	40	22				
		라-1	신림 산56-2	(5,760)	(5,760)					(6)	라-1	신림 산56-2	(5,760)	(5,760)					(6)				
		라-2	신림 산58-5	(1,440)	(1,440)					(4)	라-2	신림 산58-5	(1,440)	(1,440)					(4)				
		라-3	신림 산56-2일대	(2,880)	(2,880)					(4)	라-3	신림 산56-2일대	(2,880)	(2,880)					(4)				
	휴게소	라-4	신림 산56-2	(3,350)	(3,350)	목조	(1동)	(40)	(40)	(8)	라-4	신림 산56-2	(3,350)	(3,350)	목조	(1동)	(40)	(40)	(8)				
		마	7 개소	8,515.01	8,515.01		4동	140	280	2	마	7 개소	8,515.01	8,515.01		4동	140	280	2				
		마-1	신림 산100-14일 대	(1,440)	(1,440)						마-1	신림 산100-14일대	(1,440)	(1,440)									
		마-2	시흥 산126-1의1 필지	(1,180)	(1,180)	목조	(1동)	(35)	(70)		마-2	시흥 산126-1의1필지	(1,180)	(1,180)	목조	(1동)	(35)	(70)					
	가로쉼터	마-3	시흥 산84-15의1 필지	(1,490)	(1,490)	목조	(1동)	(35)	(70)		마-3	시흥 산84-15의1필지	(1,490)	(1,490)	목조	(1동)	(35)	(70)					
		마-4	시흥 산84-15의1 필지	(2,230)	(2,230)	목조	(1동)	(35)	(70)		마-4	시흥 산84-15의1필지	(2,230)	(2,230)	목조	(1동)	(35)	(70)					
마-5		시흥 산6-5의1필 지	(2,160)	(2,160)	목조	(1동)	(35)	(70)		마-5	시흥 산6-5의1필지	(2,160)	(2,160)	목조	(1동)	(35)	(70)						
마-6		신림 산85-25일대	(8,06)	(8,06)					1	마-6	신림 산85-25일대	(8,06)	(8,06)					1					
의자 편 상 아외 탁자 창의자 쉼터	마-7	신림 산85-25일대	(6,95)	(6,95)					1	마-7	신림 산85-25일대	(6,95)	(6,95)					1					
										바	신림 산138-30일대	164.60	164.60						증 164.60				
		시설부지내			목재				1		가로쉼터내			목재				9	신 설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5		시설부지내			목재				5					
	초	삼성동 산86-6	61.8	61.8						초	삼성동 산86-6	61.8	61.8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편의 시설	소 계		13,919	13,919		1동	33	33	18	18			13,919	13,919		1동	33	33	18			
		전지역							16	16									16			
	1	신림 산56-2	1,080	1,080	목조	1동	33	33			1	신림 산56-2	1,080	1,080	목조	1동	33	33				
	바	5 개소	12,839	12,839					2	2	바	5 개소	12,839	12,839						2		
		바-1	신림 산29	(4,712)	(4,712)						바-1	신림 산29	(4,712)	(4,712)								
		바-2	봉천 산4-10일대	(3,185)	(3,185)	목조				(1)	바-2	봉천 산4-10일대	(3,185)	(3,185)	목조					(1)		
		바-3	봉천 산4-9	(1,235)	(1,235)	목조				(1)	바-3	봉천 산4-9	(1,235)	(1,235)	목조					(1)		
		바-4	봉천 산4-9	(1,237)	(1,237)						바-4	봉천 산4-9	(1,237)	(1,237)								
		바-5	시흥 산108-4 외3필지	(2,470)	(2,470)						바-5	시흥 산108-4 외3필지	(2,470)	(2,470)								
	소 계		5,911.88	5,911.88		5동	542.8	542.8	18	6			5,911.88	5,911.88		5동	542.8	542.8	18			
	2	2 개소	2,300	2,300		2동	256	256	6	6	2	2 개소	2,300	2,300		2동	256	256	6			
2-1		신림 산56-2	(900)	(900)	목조	(1동)	(128)	(128)	(3)	2-1	신림 산56-2	(900)	(900)	목조	(1동)	(128)	(128)	(3)				
	2-2	신림 산56-2	(1,400)	(1,400)	목조	(1동)	(128)	(128)	(3)	2-2	신림 산56-2	(1,400)	(1,400)	목조	(1동)	(128)	(128)	(3)				
	3 개소	1,404.8	1,404.8		3동	286.8	286.8	1		3	3 개소	1,404.8	1,404.8		3동	286.8	286.8	1				
관 리 시 설	3-1	신림 산61-1	(360)	(360)	조적	(1동)	(20)	(20)		3-1	신림 산61-1	(360)	(360)	조적	(1동)	(20)	(20)					
	3-2	봉천 산4-10일대	(798)	(798)	조적	(1동)	(20)	(20)		3-2	봉천 산4-10일대	(798)	(798)	조적	(1동)	(20)	(20)					
	3-3	삼성동 산86-6임	(246.8)	(246.8)	철근콘크리트조	(1동)	(246.8)	(246.8)	(1)	3-3	삼성동 산86-6임	(246.8)	(246.8)	철근콘크리트조	(1동)	(246.8)	(246.8)	(1)				
	사	시흥 산93-2 외1필지	1,200	1,200							사	시흥 산93-2외1필지	1,200	1,200								
	아	시흥 산73-1 외1필지	1,004	1,004						아	시흥 산73-1외1필지	1,004	1,004									
	②	신림동 산85-25 일대	3.08	3.08					11	②	신림동 산85-25일대	3.08	3.08						11			
누 지 및 기타	소 계		9,973,292.96									9,970.77 6.36								감 2,516.60		
	누 지 등	전지역	9,973,292.96								전지역	9,970.77 6.36			철근콘크리트조	(7)동	(1,071.79)	(1,743.04)		감 2,516.60		

다. 도로조서

- 공원내 도시계획 결정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7,331.0	112,808.0				
변경					7,484.0	114,859.0				증2,051㎡
당초	대로	계			760.0	26,600.0				
		1	27	35	760.0	26,600.0	도시계획도로	봉천 산178-1	광장 42호	
	중로	계			4,109.0	74,828.0				
		1	106	20	2,460.0	49,200.0	도시계획도로	신림 산73-2임	시흥 산93-1	
		1	105	20	730.0	14,600.0		신림 산197-61	신림 산181-8	
		3	93	12	417.0	5,004.0		신림 산4	광 장	
		3	94	12	502.0	6,024.0		신림 227-3	광 장	
	소로	계			2,462.0	13,431.0				
					2,615.0	15,482.0				증2,051㎡
당 초		1		10	911.0	8,980.0	도시계획도로	시흥 산120-2임	시흥 산112	
변 경		1		10	1,551.0	2,400.0	도시계획도로	시흥 산112	시흥 산108-7	
신설		1	5	10~12	153.0	2,051.0	도시계획도로	신림136-10	신림138-1	

-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46,816.2	97,963.92				
변경					46,902.2	98,264.92				증301㎡
당초	소로	계			2,772.5	10,550.6				
변경					2,858.5	10,851.6				증301㎡
당초		3	1	6	270.0	1,620.0	연결도로	신림 산87-1	신림 산132-2	
당초		3	2	6	228.0	1,368.0	연결도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1	
당초		3	3	4	60.0	360.0	연결도로	신림 산119-2	신림 산119-2	
당초		3	4	4	130.0	520.0	연결도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1	
당초		3	5	4	154.0	616.0	연결도로	신림 산117-1	소 3-4	
당초		3	6	4	138.0	552.0	연결도로	신림 산69-18	신림 산61-4	
당초		3	7	4	408.0	1,632.0	연결도로	신림 산62	신림 산69-4	
당초		3	8	4	276.0	1,104.0	연결도로	신림 산63-5	신림 산63-42	
당초		3	9	4	136.0	544.0	연결도로	신림 산49	성불암	
당초		3	10	4	110.0	440.0	연결도로	신림 산119-2	신림 산119-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소로	3	11	3.0	227.1	681.4	진입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3	12	1.5	40.4	60.6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3	13	1.5	65.5	98.3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3	14	2.0	63.3	126.7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3	15	2.0	32.1	64.3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3	16	2.0	39.5	79.0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3	17	1.6	18.2	29.1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3	18	1.6	32.8	52.5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3	19	2.0	81.7	163.3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3	20	1.7	36.0	61.2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3	21	1.5	123.8	185.7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3	22	1.6	29.1	46.6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3	23	2.0	73.0	145.9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24	3.5	86.0	301.0	진 입 로	신림138-30	신림138-35	증30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계		42,287.0	84,574.0				
변경					44,082.0	87,301.35				증 2,727.35 (오류수정 1,182)
당초			1	2	203.0	406.0	산책로	독산 산6-2	독산 산8	
당초			2	2	18.0	36.0	산책로	독산 산6-2	독산 산6-2	
당초			3	2	321.0	642.0	산책로	독산 산6-2	독산 산6-2	
당초			4	2	490.0	980.0	산책로	산 4-1	신림 산120	
당초			5	2	216.0	432.0	산책로	산 4-1	신림 산121-1	
당초			6	2	600.0	1,200.0	산책로	독산 산117	독산 산4-9	
당초			7	2	215.0	430.0	산책로	신림 산114-3	산 4-6	
당초			8	2	216.0	432.0	산책로	산 4-7	산 4-9	
당초			9	2	300.0	600.0	산책로	소 3-5	독산 산112-10	
당초			10	2	270.0	540.0	산책로	산 4-9	산 4-14	
당초			11	2	92.0	184.0	산책로	독산 산202	독산 산119-2	
당초			12	2	317.0	634.0	산책로	독산 산113-1	독산 산204-17	
당초			13	2	134.0	268.0	산책로	시흥 산137	시흥 산137	
당초			14	2	480.0	960.0	산책로	산 4-16	신림 산108	
당초			15	2	190.0	380.0	산책로	산 4-14	신림 685-60	
당초			16	2	285.0	570.0	산책로	산 4-13	신림 산105-18	
당초			17	2	149.0	298.0	산책로	시흥 산203	독산 137-1	
당초			18	2	109.0	218.0	산책로	시흥 산138-2	시흥 산138-2	
당초			19	2	1,073.0	2,146.0	산책로	독산 산199-1	독산 산126-1	
당초			20	2	208.0	416.0	산책로	시흥 산126-11	시흥 산126-1	
당초			21	2	186.0	372.0	산책로	시흥 산126-1	시흥 산125-2	
당초			22	2	74.0	148.0	산책로	시흥 산130-1	시흥 산126-1	
당초			23	2	338.0	676.0	산책로	시흥 산125-2	시흥 산112	
당초			24	2	325.0	650.0	산책로	산 4-27	신림 산159-5	
당초			25	2	98.0	196.0	산책로	산 4-24	신림 산159-5	
당초			26	2	56.0	112.0	산책로	신림 산156-1	산 4-2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27	2	594.0	1,188.0	산책로	산 4-28-2	신림 160-74	
당초			28	2	122.0	244.0	산책로	신림 산158-1	신림 369-1	
당초			29	2	480.0	960.0	산책로	산 4-30	산 4-28	
당초			30	2	286.0	572.0	산책로	산 4-29	신림 산88	
당초			31	2	852.0	1,704.0	산책로	신림 산97-13	산 4-30	
당초			32	2	165.0	330.0	산책로	산 4-32	신림 산87-1	
당초			33	2	195.0	390.0	산책로	중 2-1	산 4-32	
당초			34	2	86.0	172.0	산책로	시흥 산118	시흥 산120-1	
당초			35	2	72.0	144.0	산책로	시흥 산126-1	시흥 산116	
당초			36	2	42.0	84.0	산책로	시흥 산126-1	시흥 산116	
당초			37	2	109.0	218.0	산책로	시흥 산116	시흥 산116	
당초			38	2	120.0	240.0	산책로	시흥 산116	시흥 산112	
당초			39	2	654.0	1,308.0	산책로	산 4-39	산 4-61	
당초			40	2	672.0	1,344.0	산책로	산 4-40	신림 산57-13	
당초			41	2	158.0	316.0	산책로	산 4-41	신림 산57-13	
당초			42	2	60.0	120.0	산책로	산 4-42	신림 산57-13	
당초			43	2	252.0	504.0	산책로	산 4-42	신림 산57-13	
당초			44	2	216.0	432.0	산책로	산 4-46	산 4-44	
당초			45	2	744.0	1,488.0	산책로	산 4-41	신림 산58-4	
당초			46	2	342.0	684.0	산책로	신림 산58-4	신림 산58-2	
당초			47	2	1,440.0	2,880.0	산책로	산 4-40	신림 산59	
당초			48	2	270.0	540.0	산책로	산 4-48	산 4-50	
당초			49	2	240.0	480.0	산책로	신림 산61-1	산 40-51	
당초			50	2	330.0	660.0	산책로	성불암	산 4-52	
당초			51	2	630.0	1,260.0	산책로	신림 산29	신림 산31-1	
당초			52	2	225.0	450.0	산책로	신림 산63-1	신림 28-11	
당초			53	2	750.0	1,500.0	산책로	산 4-52	신림 산24-1	
당초			54	2	340.0	680.0	산책로	산 4-52	신림 산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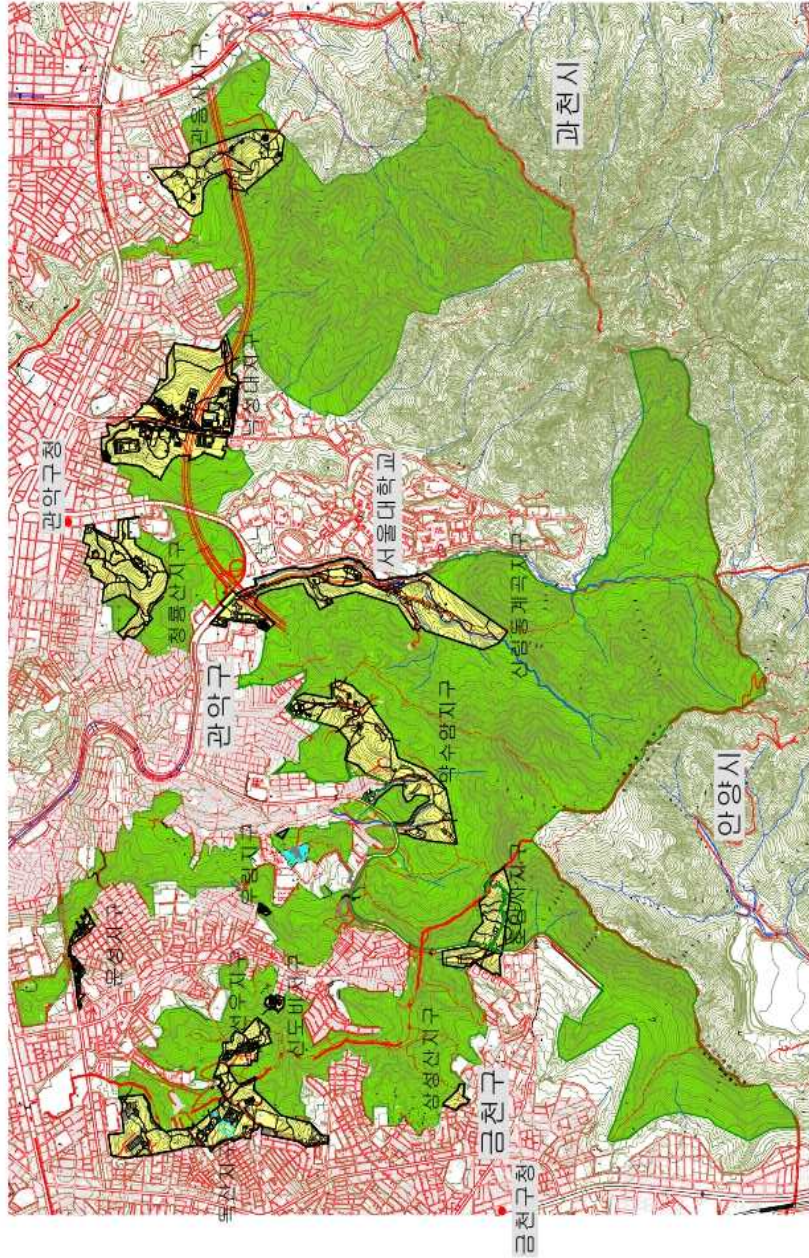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55	2	540.0	1,080.0	산책로	산 4-54	신림 산27-1	
당초			56	2	162.0	324.0	산책로	신림 산56-2	산 4-58	
당초			57	2	414.0	828.0	산책로	산 4-59	전망대	
당초			58	2	540.0	1,080.0	산책로	산 4-60	산 4-65	
당초			59	2	1,266.0	2,532.0	산책로	산 4-40	신림 산65-2	
당초			60	2	1,080.0	2,160.0	산책로	신림 산56-2	산 4-63	
당초			61	2	606.0	1,212.0	산책로	산 4-61	산 4-60	
당초			62	2	1,020.0	2,040.0	산책로	신림 산56-2	산 4-65	
당초			63	2	145.0	290.0	산책로	대피소	신림 산56-2	
당초			64	2	1,640.0	3,280.0	산책로	신림 산55	신림 193-1	
당초			65	2	348.0	696.0	산책로	산 4-65	신림 산56-2	
당초			66	2	1,380.0	2,760.0	산책로	신림 산56-2	신림 산56-2	
당초			67	2	330.0	660.0	산책로	산 4-67	신림 산56-2	
당초			68	2	185.0	370.0	산책로	신림 산6-1	산 4-70	
당초			69	2	335.0	670.0	산책로	도서관	신림 산9-1	
당초			70	2	450.0	900.0	산책로	산 4-70	대 1-27	
당초			71	2	360.0	720.0	산책로	봉천 산4-9	봉천 산4-8	
당초			72	2	960.0	1,920.0	산책로	봉천 산4-8	산 4-83	
당초			73	2	540.0	1,080.0	산책로	봉천 산29-1	산 4-73	
당초			74	2	420.0	840.0	산책로	봉천 산29-1	산 4-74	
당초			75	2	840.0	1,680.0	산책로	산 4-73	봉천 산17-3	
당초			76	2	370.0	740.0	산책로	산 4-75	산 4-76	
당초			77	2	360.0	720.0	산책로	산 4-76	산 4-80	
당초			78	2	350.0	700.0	산책로	산 4-78	봉천 산3-6	
당초			79	2	925.0	1,850.0	산책로	산 4-83	신림 산2-1	
당초			80	2	420.0	840.0	산책로	남현 산57-4	남현 산57-10	
당초			81	2	330.0	660.0	산책로	산 4-80	남현 산100-4	
당초			82	2	1,320.0	2,640.0	산책로	남현 104-3	남현 산100-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83	2	180.0	360.0	산책로	산 4-83	전망휴게소	
당초			84	2	540.0	1,080.0	산책로	남현 산104-2	현 산99-5	
당초			85	2	259.0	518.0	산책로	시흥 산118	현 산99-5	
당초			86	2	219.0	438.0	산책로	시흥 산112	시흥 산112	
당초			87	2	380.0	760.0	산책로	시흥 산112	시흥 산108-1	
당초			88	2	203.0	406.0	산책로	시흥 산112	시흥 산108-3	
당초			89	2	867.0	1,734.0	산책로	시흥 산126-1	시흥 산100-1	
당초			90	2	213.0	426.0	산책로	시흥 산108-1	시흥 산100-1	
당초			91	2	349.0	698.0	산책로	시흥 산108-4	시흥 산108-1	
당초			92	2	306.0	612.0	산책로	시흥 산95	시흥 산100-43	
당초			93	2	98.0	196.0	산책로	시흥 산93-1	시흥 산100-43	
당초			94	2	90.0	180.0	산책로	시흥 산95	시흥 산93-1	
당초			95	2	600.0	1,200.0	산책로	시흥 산95	시흥 산95-3	
당초			96	2	65.0	130.0	산책로	시흥 산83-1	시흥 산83-13	
당초			97	2	266.0	532.0	산책로	시흥 산83-1	시흥 산83-38	
당초			98	2	451.0	902.0	산책로	시흥 산93-2	시흥 산83-39	
당초			99	2	192.0	384.0	산책로	시흥 산83-38	시흥 산75-2	
당초			100	2	292.0	584.0	산책로	시흥 산73-1	시흥 산73-1	
당초			101	2	181.0	362.0	산책로	시흥 산73-1	시흥 산73-1	
당초			102	2	145.0	290.0	산책로	시흥 산6-5	시흥 산73-1	
당초			103	2	307.0	614.0	산책로	시흥 산73-1	시흥 산73-1	
당초			104	2	494.0	988.0	산책로	시흥 산73-7	시흥 산5	
당초			105	2	180.0	360.0	산책로	시흥 산4-29	시흥 산73-1	
당초			106	2	365.0	730.0	산책로	시흥 산5	시흥 산5	
당초			107	2	225.0	450.0	산책로	시흥 산100-1임	시흥 산100-1임	
당초			108	2	225.0	450.0	산책로	시흥 산100-1임	시흥 산93-1임	
당초			109	2	141.0	282.0	산책로	시흥 산100-1임	시흥 산100-1임	
당초			110	1.5	121.0	181.5	산책로	삼성동 산87-11	삼성동 산87-11	
당초			111	1.5	51.0	76.5	산책로	삼성동 산87-11	삼성동 산87-11	
당초			112	2	24.0	47.5	산책로	신림동 산132-4임	신림동 336-8수	
당초			113	2~3	29.0	93.0	산책로	신림동 산132-4임	신림동 336-8수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114	1.0	293.2	293.2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15	0.8	5.0	4.0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16	2.0	1.9	3.8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17	0.8	12.3	9.9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18	1.2	32.5	39.0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19	2.0	2.2	4.5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20	2.0	87.7	175.4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21	1.4	16.9	23.7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22	1.3	40.7	53.0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23	1.0	12.2	12.2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24	0.8	9.9	7.9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25	1.2	12.5	15.0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26	0.8	26.4	21.1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27	0.8	25.7	20.5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28	2.3	1.0	2.2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29	1.3	21.3	27.7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30	0.8	49.1	39.3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31	0.7	22.8	16.0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32	0.7	19.6	13.7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33	1.3	22.5	29.3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34	0.8	6.8	5.4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35	1.5	44.3	66.4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36	1.2	51.8	62.1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37	1.0	31.2	31.2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38	0.5	24.0	12.0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39	0.5	20.7	10.4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40	0.5	14.5	7.2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당초			141	2.0	48.4	96.84	산책로	신림 산85-1	공원경계	
당초			142	2.0	21.9	43.91	산책로	산책로 141	공원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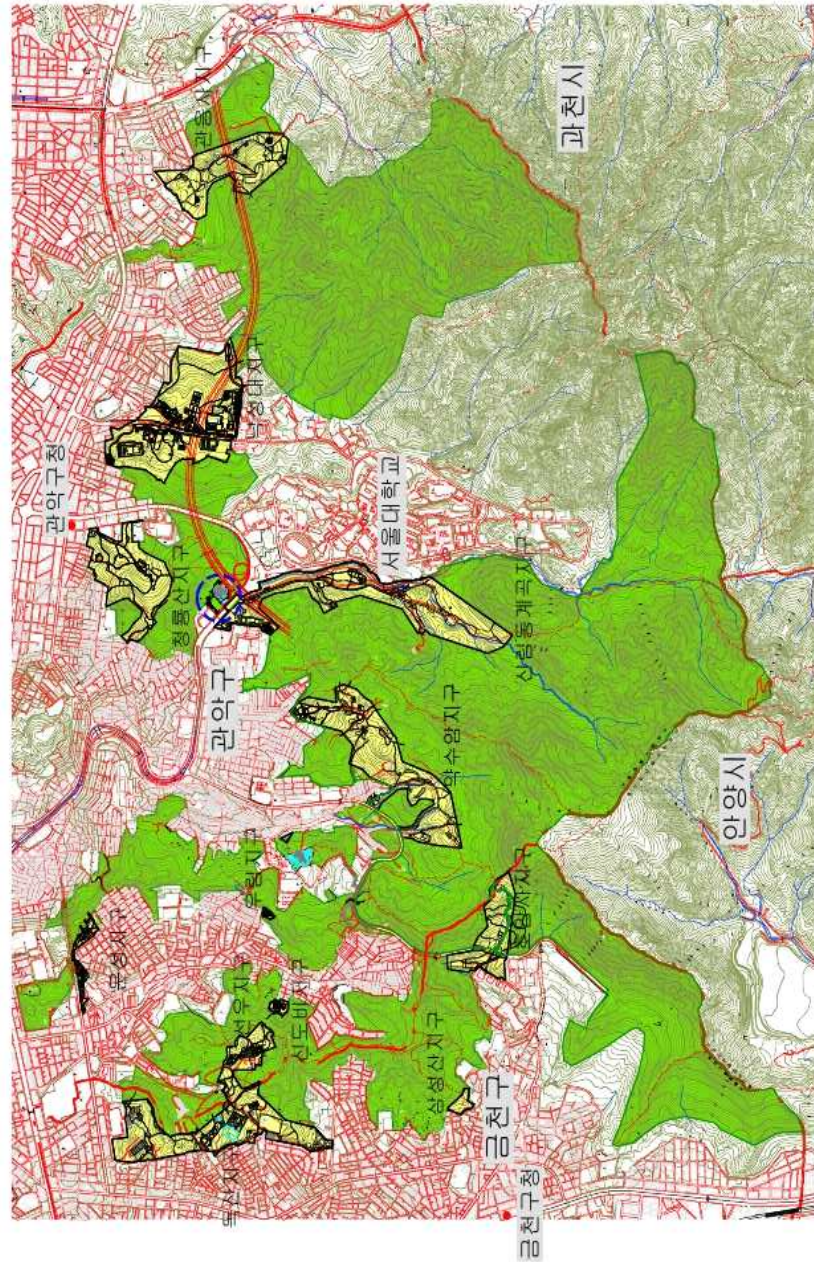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희노(朴成桂熙奴)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zK

SCALE=1/15,000

3.0km

1.5

9.0

— 0 —

부분조성계획도(변경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표(변경전)

구분	면적	지명	부처면적(㎡)	면적	면적	면적
조성	12,263.00	조성	12,263.00	조성	12,263.00	조성
조성	12,263.00	조성	12,263.00	조성	12,263.00	조성

부분조성계획도(변경후)

관공영역지정공공기관



■ 조성계획표(변경후)

구분	번호	시점명	부유면적(m ²)	잔존면적(m ²)	잔존률 (%)
총 계		시점 부지 소재	12,282.00		9
기안촌 시점			2,516.6		
		도로	2,352.0		
홍산동 시점	하	소재	164.6	164.6	9
		번지		카운터타인	9
북지 시점		소재	1,419.6		
		녹지	1,419.6		
기타	A	공유지	3,346.8		
		소재	0,346.8	11,071.2	1,453.044
[7층]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1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4호(2015.1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62호(2016.3.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03호(2016.4.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호(2017.1.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94호(2017.1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8호(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7호(2018.6.7.) 재정비촉진계획[기반시설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6호(2019.3.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5호(2019.6.7.)로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중구 충무로4가 12-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1.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변경없음)

지 구 명 (지구유형)	위 치	면 적 (㎡)			개발기간
		기 정	변 경	변경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9,356.4	-	439,356.4	2006.10 ~ 2023.12

2. 세운재정비촉진계획

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39,356.4	-	439,356.4	100	-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58,288.3	증) 23.8	158,312.1	36.0	-
	공공청사	7,600.0	-	7,600.0	1.7	중구청 존치
	학교시설	13,055.1	-	13,055.1	3.0	덕수중학교 존치
	하 천	8,423.4	-	8,423.4	1.9	청계천
	광 장	0.0	-	0.0	-	-
	공 원	10,108.6	-	10,108.6	2.3	4개소
	녹 지	7,298.8	-	7,298.8	1.7	-
	연구시설	1,198.7	-	1,198.7	0.3	
	공공공지	0.0	-	0.0	-	-
	도 로	110,603.7	증) 23.8	110,627.5	25.2	-
택지 (획지)	소 계	281,068.1	감) 23.8	281,044.3	64.0	-
	복합개발용지	254,185.1	감) 23.8	254,161.3	57.9	-
	남산자이(주거복합)	5,216.5	-	5,216.5	1.2	존 치
	국도호텔(상업:숙박)	1,800.0	-	1,800.0	0.4	
	중앙대코플라자	1,060.6	-	1,060.6	0.2	
	명보아트홀	1,256.5	-	1,256.5	0.3	
	매일경제신문	1,778.4	-	1,778.4	0.4	
	세운상가군	15,771.0	-	15,771.0	3.6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운상가군은 세운가동상가 ~ 진양상가에 이르는 일련의 상가를 의미함

②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③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㉓ 도로계획 (변경)

㉓ 도로 (변경)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6-2-23,2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지적측량 결과 도로의 면적이 경미하게 변경, 선형변경없음

(세운6-2-24구역:0.2㎡감소)

㉓ 보행자전용도로 (변경없음)

㉓ 공원 및 녹지 (변경없음)

㉓ 학교 (변경없음)

㉓ 공공청사 및 연구시설 (변경없음)

㉓ 기타 (변경없음)

④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⑤ 교통계획(변경없음)

⑥ 경관계획(변경없음)

⑦ 광고물관리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변경없음)

⑧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기정		변경		비고
구역 명	면적(㎡)	구역 명	면적(㎡)	
6-2-23구역	1,416.9	6-2-23구역	1,278.6	이면부
6-2-24구역	3,507.1	6-2-24구역	3,621.4	이면부

※ 상기 구역 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접한 구역의 경계조정

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변경없음)

⑩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부담률		부담률 보정	조정후 부담률		비고
구 역		구역 면적(㎡)	대지 (㎡)	공공용지 (㎡)	대지 (㎡)	공공용지 (㎡)	면적 (㎡)	비율 (%)	추가면적 (㎡)	면적 (㎡)	비율 (%)	
6-2 구역	기정 (합계)	63,214.6	54,143.4	9,071.2	51,798.4	11,416.3	2,345.1	4.33	244.1	2,589.2	4.78	
	6-2-1	2,106.1	1,805.8	300.3	1,799.8	306.3	6.0	0.33	-	6.0	0.33	
	6-2-2	1,954.7	1,713.9	240.8	1,603.0	351.7	110.9	6.47	-	110.9	6.47	
	6-2-3	1,836.3	1,566.0	270.3	1,399.9	436.4	166.1	10.61	-	166.1	10.61	
	6-2-4	1,942.8	1,829.5	113.3	1,641.1	301.7	188.4	10.30	-	188.4	10.30	
	6-2-5	1,495.3	1,307.7	187.6	1,374.3	121.0	-66.6	-5.09	66.6	0.0	0.00	
	6-2-6	1,574.9	1,323.5	251.4	1,305.9	269.0	17.6	1.33	-	17.6	1.33	
	6-2-7	1,905.0	1,762.8	142.2	1,649.7	255.3	113.1	6.41	-	113.1	6.41	
	6-2-8	1,534.9	1,345.4	189.5	1,393.6	141.3	-48.2	-3.58	48.2	0	0	
	6-2-9	1,710.8	1,365.5	345.3	1,390.3	320.5	-24.8	-1.82	24.8	0.0	0.00	
	6-2-10	1,234.4	1,051.7	182.7	1,016.6	217.8	35.1	3.34	-	35.1	3.34	
	6-2-11	733.1	656.5	76.6	580.0	153.1	76.5	11.65	-	76.5	11.65	
	6-2-12	880.5	821.4	59.2	813.1	67.5	8.3	1.01	-	8.3	1.01	
	6-2-13	664.8	618.3	46.5	574.1	90.7	44.2	7.15	-	44.2	7.15	
	6-2-14	1,219.8	1,116.7	103.1	1,111.0	108.8	5.7	0.51	-	5.7	0.51	
	6-2-15	631.5	595.6	35.9	589.9	41.6	5.7	0.95	-	5.7	0.95	
	6-2-16	1,110.3	1,005.0	105.3	871.1	239.2	133.9	13.33	-	133.9	13.33	
	6-2-17	1,260.8	1,112.2	148.6	1,108.1	152.7	4.1	0.37	-	4.1	0.37	
	6-2-18	937.7	768.0	169.7	764.3	173.4	3.7	0.48	-	3.7	0.48	
	6-2-19	899.0	853.7	45.3	822.7	76.3	31.0	3.63	-	31.0	3.63	
	6-2-20	939.5	819.2	120.3	765.3	174.2	53.9	6.57	-	53.9	6.57	
	6-2-21	594.4	559.7	34.7	519.7	74.7	40.0	7.15	-	40.0	7.15	
	6-2-22	1,478.1	1,137.1	341.0	1,107.4	370.7	29.7	2.61	-	29.7	2.61	
	6-2-23	1,416.9	973.4	443.5	1,005.4	411.5	-32.0	-3.29	32	0.0	0.00	
	6-2-24	3,507.1	2,988.8	518.3	2,814.7	692.4	174.1	5.82	-	174.1	5.82	
	6-2-25	586.3	548.6	37.7	481.0	105.3	67.6	12.33	-	67.6	12.33	
	6-2-26	807.9	755.3	52.6	658.1	149.7	97.2	12.87	-	97.2	12.87	
	6-2-27	1,038.8	929.3	109.5	928.0	110.8	1.3	0.14	-	1.3	0.14	
	6-2-28	1,595.7	1,414.6	181.1	1,237.5	358.2	177.1	12.52	-	177.1	2.52	
	6-2-29	599.9	480.4	119.5	445.3	154.6	35.1	7.31	-	35.1	7.31	
	6-2-30	410.9	345.5	65.4	345.0	66.0	0.5	0.15	-	0.5	0.15	

구 분		현 황			계 획		부담률		부담률 보정	조정후 부담률		비고
구 역	구역 면적(㎡)	대지 (㎡)	공공용지 (㎡)	대지 (㎡)	공공용지 (㎡)	면적 (㎡)	비율 (%)	추가면적 (㎡)	면적 (㎡)	비율 (%)		
6-2 구역	6-2-31	747.3	530.4	216.9	510.7	236.6	19.7	3.72	-	19.7	3.72	
	6-2-32	1,004.1	912.0	92.1	810.6	193.5	101.4	11.11	-	101.4	11.11	
	6-2-33	1,294.0	1,179.6	114.4	1,082.1	212.0	97.5	8.27	-	97.5	8.27	
	6-2-34	864.7	736.8	128.0	667.8	196.9	69.0	9.36	-	69.0	9.36	
	6-2-35	1,470.3	1,107.1	363.2	1,152.5	317.8	-45.4	-4.10	45.4	0.0	0.00	
	6-2-36	947.1	748.4	198.7	775.5	171.6	-27.1	-3.62	27.1	0.0	0.00	
	6-2-37	1,101.9	833.0	268.9	811.2	290.6	21.8	2.61	-	21.8	2.61	
	6-2-38	1,120.5	1,015.5	105.0	1,014.8	105.7	0.7	0.06	-	0.7	0.06	
	6-2-39	884.8	687.7	197.1	649.0	235.8	38.7	5.62	-	38.7	5.62	
	6-2-40	2,736.0	2,186.7	549.3	2,185.7	550.3	1.0	0.05	-	1.0	0.05	
	6-2-41	1,878.9	1,340.7	538.3	1,243.2	635.8	97.5	7.27	-	97.5	7.27	
	6-2-42	720.2	554.0	166.2	529.4	190.8	24.6	4.45	-	24.6	4.45	
	6-2-43	668.1	585.3	82.8	584.8	83.3	0.5	0.09	-	0.5	0.09	
	6-2-44	1,472.3	1,126.4	345.9	1,039.1	433.1	87.3	7.75	-	87.3	7.75	
	6-2-45	1,540.4	1,435.7	104.8	1,393.1	147.3	42.5	2.96	-	42.5	2.96	
	6-2-46	764.0	628.5	135.5	602.9	161.1	25.6	4.07	-	25.6	4.07	
	6-2-47	1,908.6	1,726.8	181.8	1,657.3	251.3	69.5	4.03	-	69.5	4.03	
	6-2-48	1,216.5	1,122.3	94.2	1,052.8	163.8	69.5	6.20	-	69.5	6.20	
	6-2-49	727.4	600.1	127.3	552.4	175.1	47.7	7.96	-	47.7	7.96	
	6-2-50	1,539.1	1,515.3	23.8	1,367.4	171.7	147.9	9.76	-	147.9	9.76	
	변경 (합계)	63,190.6	54,119.4	9,071.2	51,774.6	11,416.1	2,344.9	4.33	247.2	2,592.1	4.79	
	6-2-1	2,106.1	1,805.8	300.3	1,799.8	306.3	6.0	0.33	-	6.0	0.33	
	6-2-2	1,954.7	1,713.9	240.8	1,603.0	351.7	110.9	6.47	-	110.9	6.47	
	6-2-3	1,836.3	1,566.0	270.3	1,399.9	436.4	166.1	10.61	-	166.1	10.61	
	6-2-4	1,942.8	1,829.5	113.3	1,641.1	301.7	188.4	10.30	-	188.4	10.30	
	6-2-5	1,495.3	1,307.7	187.6	1,374.3	121.0	-66.6	-5.09	66.6	0.0	0.00	
	6-2-6	1,574.9	1,323.5	251.4	1,305.9	269.0	17.6	1.33	-	17.6	1.33	
	6-2-7	1,905.0	1,762.8	142.2	1,649.7	255.3	113.1	6.41	-	113.1	6.41	
	6-2-8	1,534.9	1,345.4	189.5	1,393.6	141.3	-48.2	-3.58	48.2	0	0	
	6-2-9	1,710.8	1,365.5	345.3	1,390.3	320.5	-24.8	-1.82	24.8	0.0	0.00	
	6-2-10	1,234.4	1,051.7	182.7	1,016.6	217.8	35.1	3.34	-	35.1	3.34	
	6-2-11	733.1	656.5	76.6	580.0	153.1	76.5	11.65	-	76.5	11.65	
	6-2-12	880.5	821.4	59.2	813.1	67.5	8.3	1.01	-	8.3	1.01	
	6-2-13	664.8	618.3	46.5	574.1	90.7	44.2	7.15	-	44.2	7.15	
6-2-14	1,219.8	1,116.7	103.1	1,111.0	108.8	5.7	0.51	-	5.7	0.51		
6-2-15	631.5	595.6	35.9	589.9	41.6	5.7	0.95	-	5.7	0.95		
6-2-16	1,110.3	1,005.0	105.3	871.1	239.2	133.9	13.33	-	133.9	13.33		
6-2-17	1,260.8	1,112.2	148.6	1,108.1	152.7	4.1	0.37	-	4.1	0.37		
6-2-18	937.7	768.0	169.7	764.3	173.4	3.7	0.48	-	3.7	0.48		
6-2-19	899.0	853.7	45.3	822.7	76.3	31.0	3.63	-	31.0	3.63		
6-2-20	939.5	819.2	120.3	765.3	174.2	53.9	6.57	-	53.9	6.57		
6-2-21	594.4	559.7	34.7	519.7	74.7	40.0	7.15	-	40.0	7.15		
6-2-22	1,478.1	1,137.1	341.0	1,107.4	370.7	29.7	2.61	-	29.7	2.61		

구 분			현 황		계 획		부담률		부담률 보정	조정후 부담률		비고
구 역		구역 면적(㎡)	대지 (㎡)	공공용지 (㎡)	대지 (㎡)	공공용지 (㎡)	면적 (㎡)	비율 (%)	추가면적 (㎡)	면적 (㎡)	비율 (%)	
6-2 구역	6-2-23	1,278.6	897.5	381.1	908.1	370.5	-10.6	-1.2	10.6	-	-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6-2-24	3,621.4	3,040.7	580.7	2,888.2	733.2	152.5	5.02	24.5	177.0	5.82	
	6-2-25	586.3	548.6	37.7	481.0	105.3	67.6	12.33	-	67.6	12.33	
	6-2-26	807.9	755.3	52.6	658.1	149.7	97.2	12.87	-	97.2	12.87	
	6-2-27	1,038.8	929.3	109.5	928.0	110.8	1.3	0.14	-	1.3	0.14	
	6-2-28	1,595.7	1,414.6	181.1	1,237.5	358.2	177.1	12.52	-	177.1	2.52	
	6-2-29	599.9	480.4	119.5	445.3	154.6	35.1	7.31	-	35.1	7.31	
	6-2-30	410.9	345.5	65.4	345.0	66.0	0.5	0.15	-	0.5	0.15	
	6-2-31	747.3	530.4	216.9	510.7	236.6	19.7	3.72	-	19.7	3.72	
	6-2-32	1,004.1	912.0	92.1	810.6	193.5	101.4	11.11	-	101.4	11.11	
	6-2-33	1,294.0	1,179.6	114.4	1,082.1	212.0	97.5	8.27	-	97.5	8.27	
	6-2-34	864.7	736.8	128.0	667.8	196.9	69.0	9.36	-	69.0	9.36	
	6-2-35	1,470.3	1,107.1	363.2	1,152.5	317.8	-45.4	-4.10	45.4	0.0	0.00	
	6-2-36	947.1	748.4	198.7	775.5	171.6	-27.1	-3.62	27.1	0.0	0.00	
	6-2-37	1,101.9	833.0	268.9	811.2	290.6	21.8	2.61	-	21.8	2.61	
	6-2-38	1,120.5	1,015.5	105.0	1,014.8	105.7	0.7	0.06	-	0.7	0.06	
	6-2-39	884.8	687.7	197.1	649.0	235.8	38.7	5.62	-	38.7	5.62	
	6-2-40	2,736.0	2,186.7	549.3	2,185.7	550.3	1.0	0.05	-	1.0	0.05	
	6-2-41	1,878.9	1,340.7	538.3	1,243.2	635.8	97.5	7.27	-	97.5	7.27	
	6-2-42	720.2	554.0	166.2	529.4	190.8	24.6	4.45	-	24.6	4.45	
	6-2-43	668.1	585.3	82.8	584.8	83.3	0.5	0.09	-	0.5	0.09	
	6-2-44	1,472.3	1,126.4	345.9	1,039.1	433.1	87.3	7.75	-	87.3	7.75	
	6-2-45	1,540.4	1,435.7	104.8	1,393.1	147.3	42.5	2.96	-	42.5	2.96	
	6-2-46	764.0	628.5	135.5	602.9	161.1	25.6	4.07	-	25.6	4.07	
	6-2-47	1,908.6	1,726.8	181.8	1,657.3	251.3	69.5	4.03	-	69.5	4.03	
	6-2-48	1,216.5	1,122.3	94.2	1,052.8	163.8	69.5	6.20	-	69.5	6.20	
	6-2-49	727.4	600.1	127.3	552.4	175.1	47.7	7.96	-	47.7	7.96	
	6-2-50	1,539.1	1,515.3	23.8	1,367.4	171.7	147.9	9.76	-	147.9	9.76	

※ 기반시설부담률은 기존 공공용지 무상양여를 전제로 하되 사업시행 시 측량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가면적은 건축물로 제공하며 사업시행인가 시 구체적인 용도 및 제공면적을 결정하고, 측량 및 건축계획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함

- ⑪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변경없음)
- ⑫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⑬ 촉진구역별 사업계획(변경)
 - 「세운재정비촉진지구(6-23,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고
- ⑭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없음)
- ⑮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㉔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

㉔ 용도지역(변경없음)

㉔ 용도지구(변경)

㉔ 미관지구(변경)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구간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폐지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동아일보사~ 청계천6가	67,200	2,800	양측12	건교부고시 290호 (73.7.4)	청계천 지구
폐지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필동1가~종로3가	24,000	1,000	양측12	건교부고시 290호 (73.7.4)	삼일로 지구

• 미관지구 변경결정 사유서

지구명	지구의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미관지구 폐지 - 91,200㎡ → 0㎡ (감)91,2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 (2019.4.18.)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 반영	

㉔ 방화지구(변경없음)

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㉔ 교통시설

㉔ 도로(변경)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7	40~47 (3.5~6.5m)	주간선 도로	4,000 (432)	서대문광장 (종로3가 45-4)	동대문광장 (종로4가 50-10)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4구역 일부구간 경관녹지를 도로로 시설변경 (폭 7.5m)
기정	대로	2	3	30	집산 도로	1,800 (464)	시청앞광장	을지로6가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을지로 대림상가~삼풍상가 (을지로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 6.0m~10.6m)
기정	중로	1	29	20	집산 도로	1,450 (459)	저동1가	광희동광장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722호 (36.3.26)	마른내길 호텔PJ~ 신성상가 (마른내길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 도로 결정 (폭 3.5~44.2m)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54	충무로4 86-3	충무로4가 47-3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234호 (84.4.27)	6-4구역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26	4~19	집산 도로	850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세운상가 서측도로 삼풍상가 ~ 진양상가 서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 전용도로 결정 (폭3.0~15.0m)
기정	중로	2	127	19	집산 도로	780	종로3가 32-8	충무로4가 11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세운상가 동측도로 삼풍상가 ~ 진양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 전용도로결정 (폭4.0~15.0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5	충무로4가 66-3	충무로4가 99-9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234호 (84.4.27)	6-4구역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89	을지로3가 164-1	입정동 139-4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3구역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97	을지로4가 30-2	주교동 145-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44	인현동2가 134-3	을지로4가 267-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3구역 삼풍상가데크 보행연결통로 중복결정(4.6m)
기정	중로	3	-	13.5 ~18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130호 (03.5.26)	청계천 북측
기정	중로	3	-	12~ 16.5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130호 (03.5.26)	청계천 남측
기정	소로	1	2	12	국지 도로	116	산림동 250-1	입정동 122-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3구역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41	산림동 278-1	입정동 21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3구역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16	주교동 170-1	산림동 83-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중로	1	5	10	국지 도로	132	주교동 184-2	산림동 52-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21	장사동 182-3	장사동 233-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08	인현동1가 99-1	을지로3가 282-9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30	인현동1가 94-3	을지로4가 314-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34	인현동2가 198-2	인현동2가 99-1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65	인현동1가 136	초동 39-8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87	충무로3가 34-8	인현동1가 110-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17	충무로4가 125-44	충무로3가 37-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변경	소로	2	7	8	국지 도로	217	충무로4가 125-44	충무로3가 37-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40	필동2가 5-3	충무로4가 5-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15	필동2가 13-20	충무로4가 125-44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10	8	국지 도로	70	충무로4가 125-54	충무로4가 129-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9	예관동 17-1	을지로4가 293-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3구역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17	인현동2가 181-47	인현동2가 154-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73	충무로4가 38	인현동2가 181-1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219	장사동 106-2	장사동 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9	종로3가 162-1	종로3가 45-4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78	장사동 41-2	장사동 2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79	장사동 47-5	장사동 57-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86	장사동 74	장사동 83-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70	장사동 221-3	장사동 212-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55	장사동 204-1	장사동 19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74	산림동 112-5	산림동 18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67	을지로3가 291-18	을지로3가 291-4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0	4	국지 도로	122	을지로3가 285-3	을지로3가 271-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92	인현동1가 55-5	초동 2-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65	인현동1가 15-5	인현동1가 31-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35	초동 22-2	초동 22-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73	인현동1가 58-20	초동 22-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5	4	국지 도로	61	인현동1가 59-20	인현동1가 99-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85	인현동1가 5-10	인현동2가 95-1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77	인현동2가 99-28	인현동1가 70-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8	8	국지 도로	211	충무로4가 11-2	인현동1가 114-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변경	소로	3	18	8	국지 도로	211	충무로4가 11-2	인현동1가 114-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73	인현동2가 192-20	인현동2가 20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88	인현동2가 182-11	인현동2가 22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73	충무로4가 14	인현동1가 132-7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변경	소로	3	21	6	국지 도로	73	충무로4가 14	인현동1가 132-7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82	충무로4가 24-6	인현동2가 189-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40	필동2가 13-6	필동2가 13-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85	인현동2가 168-1	인현동2가 13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3	26	4	국지 도로	76	인현동2가 168-1	인현동2가 181-8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179	충무로4가 55	인현동2가 181-8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 도로 입체적결정 결정 조서 (높이는 해수면기준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을지로4가 310-2일대	면적(㎡)	162.99	-	162.99	서울시 고시 제2017-394호 (17.11.9)	
				길이(m)	33.90	-	33.90		
				폭(m)	3.00~6.15	-	3.00~6.15		
				높이(m)	25.50~38.35	-	25.50~38.35		
세부 사항	기정								-
	입체적 결정범위 1. 삼풍상가 데크(계획)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계단 - 지상부(1F) A=110.61㎡ , H=25.50 ~ 30.40m - 지상부(2F) A=45.97㎡, H=30.40 ~ 33.55m - 지상부(3F) A=6.41㎡, H=33.55 ~ 38.35m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 2-7	도로	○ 면적 변경 - 세운6-2-24구역:0.2㎡감소	○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선형변경 없음	6-2구역
소로 3-18	도로			6-2구역
소로 3-21	도로			6-2구역

⑥ 철도(변경없음)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철도	고속철도(5호선)	종로구 종로4가 32-8번지 일대	(80)	(1,397)	건교부고시695호 (90.10.19)	-
기정	2	철도	고속철도(3호선)	벽제~양재동간	40.7km (310)	(3,479)	건교부고시53호 (80.2.22)	-
기정	3	철도	도시철도(5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주교동 122일대	-	6,259.4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기정	4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을지로4가 261	205	5,998.5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 철도 입체적결정 결정 조서 (높이는 해수면기준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	철도	을지로4가 206-1 일대	면적(㎡)	69.7	-	69.7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5호선)
				길이(m)	8.6	-	8.6		
				폭(m)	10.0	-	10.0		
				높이(m, 지하)	14.6~31.0	-	14.6~31.0		
세부 사항	기정								
	입체적 결정범위 1. 배오개길 서측 환기구 일부 - 지상부 : A=19.3㎡, H=24.5m~31.0m (증 0.6m) - 지하부 : A=69.7㎡(지상중복 19.3㎡), H=14.6m~24.5m								
기정	4	철도	을지로4가 250 일대	면적(㎡)	728.5	-	728.5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2호선) ·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부 부분 H=13.6m~29.0m · 엘리베이터 부분 H=13.7m~29.5m · 연결부 부분 H=14.7m~23.3m · 냉각탑 및 공조실 부분 H=17.6m ~31.6m
				길이(m)	53.9	-	53.9		
				폭(m)	33.1	-	33.1		
				높이(m, 지하)	13.5~31.6	-	13.5~31.6		
세부 사항	기정								
	입체적 결정범위 1. 을지로4가교차로 남서측 출입시설, 냉각탑 일부 (변경) - 지상부 : A=292.6㎡, H=24.5m~31.6m - 지하부 : A=637.6㎡(지상중복 204.4㎡), H=13.5m~24.5m 2. 을지로 남측 환기구 일부 (변경없음) - 지하부 : A=2.7㎡, H=15.4m~22.8m								

㉠ 공간시설(변경없음)

㉡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방제시설(변경없음)

②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세운 6-2-23구역) 정비계획 변경

1. 정비구역

가. 촉진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구역 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2구역	6-2-23구역	중구 충무로4가 1-8번지 일원	1,416.9	감) 138.3	1,278.6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상기 구역 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접한 구역의 경계조정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2-23구역)		1,416.9	감) 138.3	1,278.6	100.0	-
도시계획 시 설 등	소계	411.5	감) 41.0	370.5	28.9	-
	도로	411.5	감) 41.0	370.5	28.9	-
택 지 (획 지)	6-2-23구역	1,005.4	감) 97.3	908.1	71.1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416.9	감) 138.3	1,278.6	100.0	-
일반상업지역	1,416.9	감) 138.3	1,278.6	100.0	-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변경)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187	총무로3가 34-8	인현동1가 110-1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17	총무로4가 125-44	총무로3가 37-5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변경	소로	2	7	8	국지 도로	217	총무로4가 125-44	총무로3가 37-5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73	총무로4가 14	인현동1가 132-7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도로명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소로2-7	도로	○ 구역계 조정 - 세운6-2-23구역:41㎡감소 (411.5㎡→370.5㎡)	○ 구역계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선형변경 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고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6-2-23 구역	1,416.9	대지	1,005.4	중구 충무로4가 1-8번지 일원	20	-	-	20	-	-
변경	6-2-23 구역	1,278.6	대지	908.1 (감 97.3)	중구 충무로4가 1-8번지 일원	18	-	-	18	-	-

②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기정	6-2-23 구역	1,416.9	-	1,005.4	충무로4가 1-8번지 일원	-	-	-	-	-	-	-
변경	6-2-23 구역	1,278.6 감)138.3	-	908.1	충무로4가 1-8번지 일원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해 당 사 항 없 음									
용적률 (변경없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상한용적률 (공공시설 부지제공)	-								
최고높이 (공공시설부지 제공)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건축한계선	마른내길변	퇴계로변		배오개길,돈화문로변			8m 초과 도로변		
			기정	3m	3m		3m			1m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정비사업 시행 계획(변경없음)

자.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보호수 없음(변경없음)

차.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타. 세입자 대책(변경없음)

③ 세운재정비촉진구역 (세운 6-2-24구역) 정비계획 변경

1. 정비구역

가. 촉진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구역 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2구역	6-2-24구역	중구 충무로4가 12-1번지 일원	3,507.1	증) 114.3	3,621.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상기 구역 면적은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접한 구역의 경계조정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6-2-24구역)		3,507.1	증) 114.3	3,621.4	100.0	－
도시계획 시 설 등	소계	692.4	증) 40.8	733.2	20.2	－
	도로	692.4	증) 40.8	733.2	20.2	－
택 지 (획 지)	6-2-24구역	2,814.7	증) 73.5	2,888.2	79.8	－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용도지역(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507.1	증) 114.3	3,621.4	100.0	-
일반상업지역	3,507.1	증) 114.3	3,621.4	100.0	-

② 용도지구(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217	총무로4가 125-44	총무로3가 37-5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변경	소로	2	7	8	국지 도로	217	총무로4가 125-44	총무로3가 37-5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기정	소로	3	18	8	국지 도로	211	총무로4가 11-2	인현동1가 114-1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변경	소로	3	18	8	국지 도로	211	총무로4가 11-2	인현동1가 114-1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73	총무로4가 14	인현동1가 132-7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변경	소로	3	21	6	국지 도로	73	총무로4가 14	인현동1가 132-7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선형변경없음)

• 도로 변경결정 사유서

도로명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소로2-7	도로	○ 구역계 조정 및 측량값 반영 - 세운6-2-24구역:40.8㎡증가 (692.4㎡→733.2㎡)	○ 구역계 조정 및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선형변경 없음	
소로3-18	도로		○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선형변경 없음	
소로3-21	도로		○ 측량값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선형변경 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배치, 형태,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고

바.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6-2-24 구역	3,507.1	대지	2,814.7	중구 총무로4가 12-1번지 일원	16	-	-	16	-	-
변경	6-2-24 구역	3,621.4	대지	2,888.2 (증 73.5)	중구 총무로4가 12-1번지 일원	18	-	-	18	-	-

②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준	허용	상한					
기정	6-2-24 구역	3,507.1	-	2,814.7	충무로4가 12-1번지 일원	-	고층 : 60% 저층 : 80%	600%	700%	기반시설제공에 따른 완화적용	기준 : 40 최고 : 50	-			
변경	6-2-24 구역	3,621.4 (증)114.3	-	2,888.2	충무로4가 12-1번지 일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고층 : 60% 저층 : 80%	600%	700%	기반시설제공에 따른 완화적용	기준 : 40 최고 : 50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해 당 사 항 없 음												
용적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인센티브 항목		적용내용		완화량							
				도심주거도입		주거면적의 30%소형주택 (전용면적 60㎡이하)건립		30.0%							
				관광인프라구축 및 문화복합시설 설치		문화 및 집회시설 도입 시		15.0%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가로활성화 용도 (소매점포, 근생시설 등) 1층 도입		15.0%							
				공공보행통로, 확장보도		공공보행통로 및 확장 보도 조성		10.0%							
				창조적 디자인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건축계획 수립		5.0%							
				도심산업진흥시설		도심특화산업 수용		25.0%							
				친환경개발		벽면녹화		10.0%							
				옛길 흔적남기기, 옛길보전 등		옛 흔적남기기		원형보전		36.0%					
								형태보전		18.0%					
								흔적표시		6.0%					
				추가 세입자 대책 수립		추가 세입자 대책 수립 시		대체영업장		25.0%					
								우선임차권		15.0%					
				합 계		-		100.0%							
				※ 완화량은 건축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인가 시 산정하여 100%이하 적용											
		상한용적률 (공공시설 부지제공)		= [1.3 × (기반시설제공면적 ÷ 제공후대지면적)] × (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 이하											
최고높이 (공공시설부지 제공)					= 기준높이 × (기반시설제공면적 ÷ 대지면적)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건축한계선		마른내길변		퇴계로변		배오개길, 둔화문로변		8m 초과 도로변					
		기정		3m		3m		3m		1m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정비사업 시행 계획(변경없음)

자. 기준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보호수 없음(변경없음)

차.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타. 세입자 대책(변경없음)

④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기정, 변경)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기정,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변경)

-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 6-2-23,24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기정, 변경)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기정,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 서류(지형도면 포함)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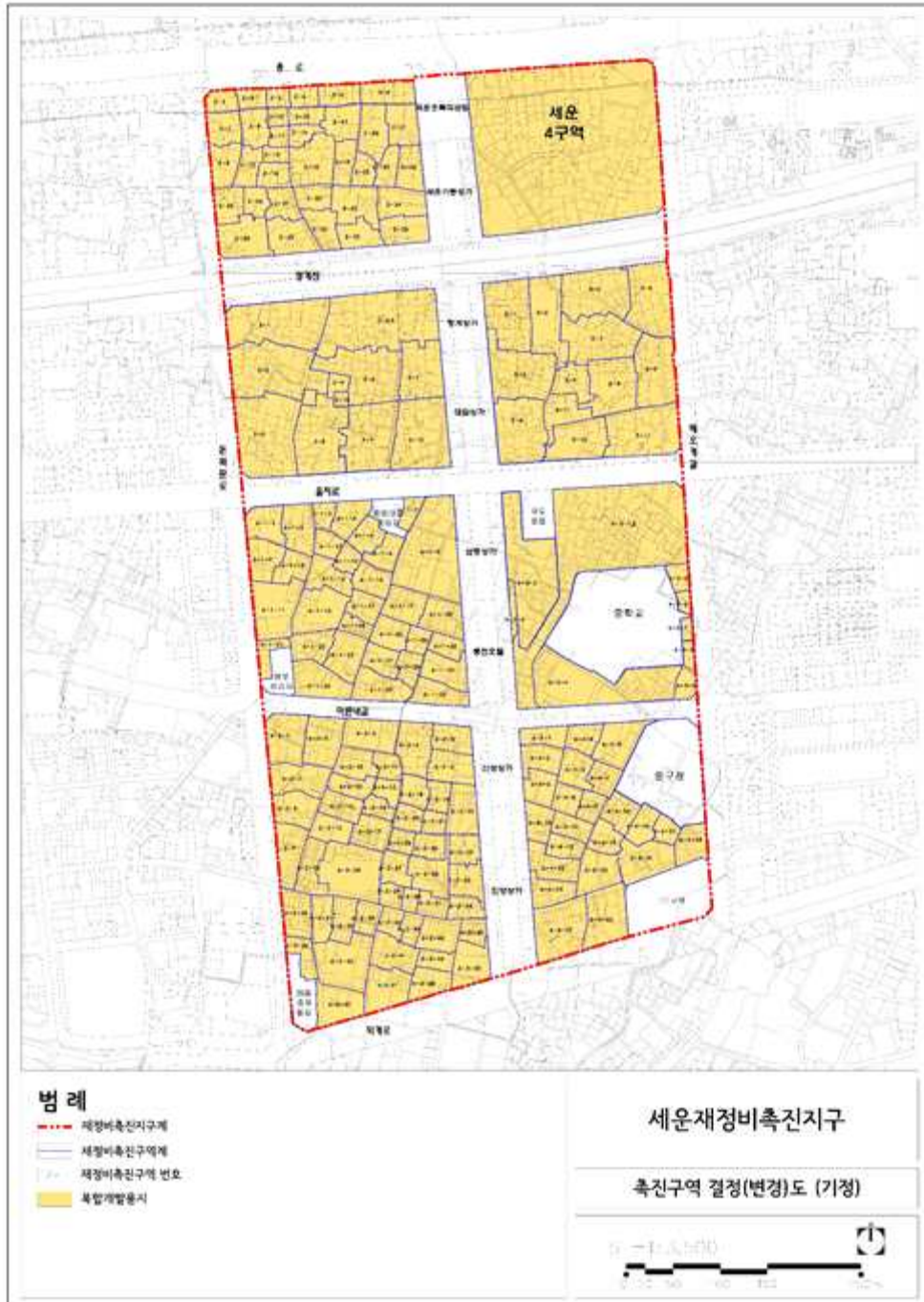
⑥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역사도심재생과(02-2133-8500) 및 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54)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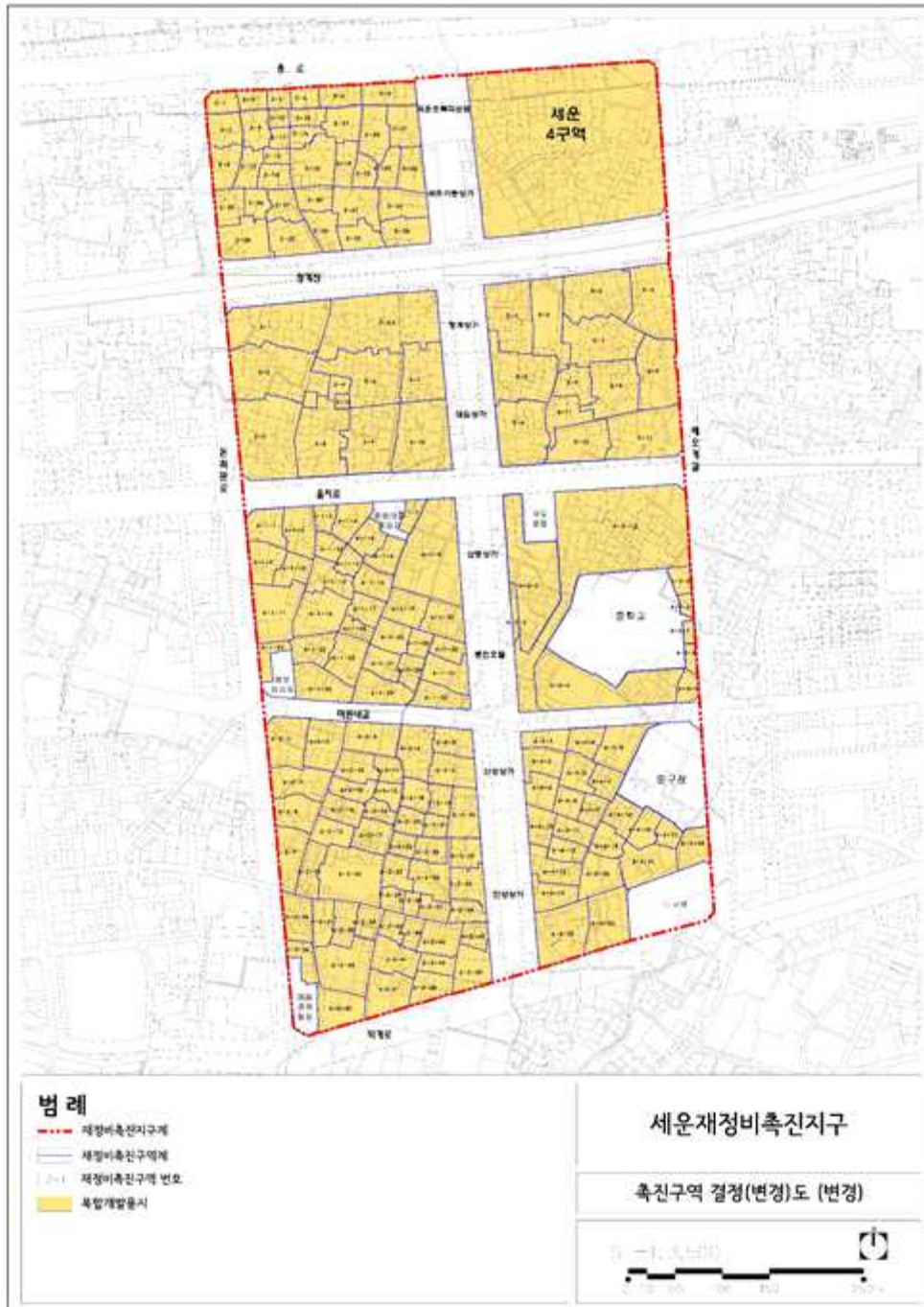
【붙임】 지형도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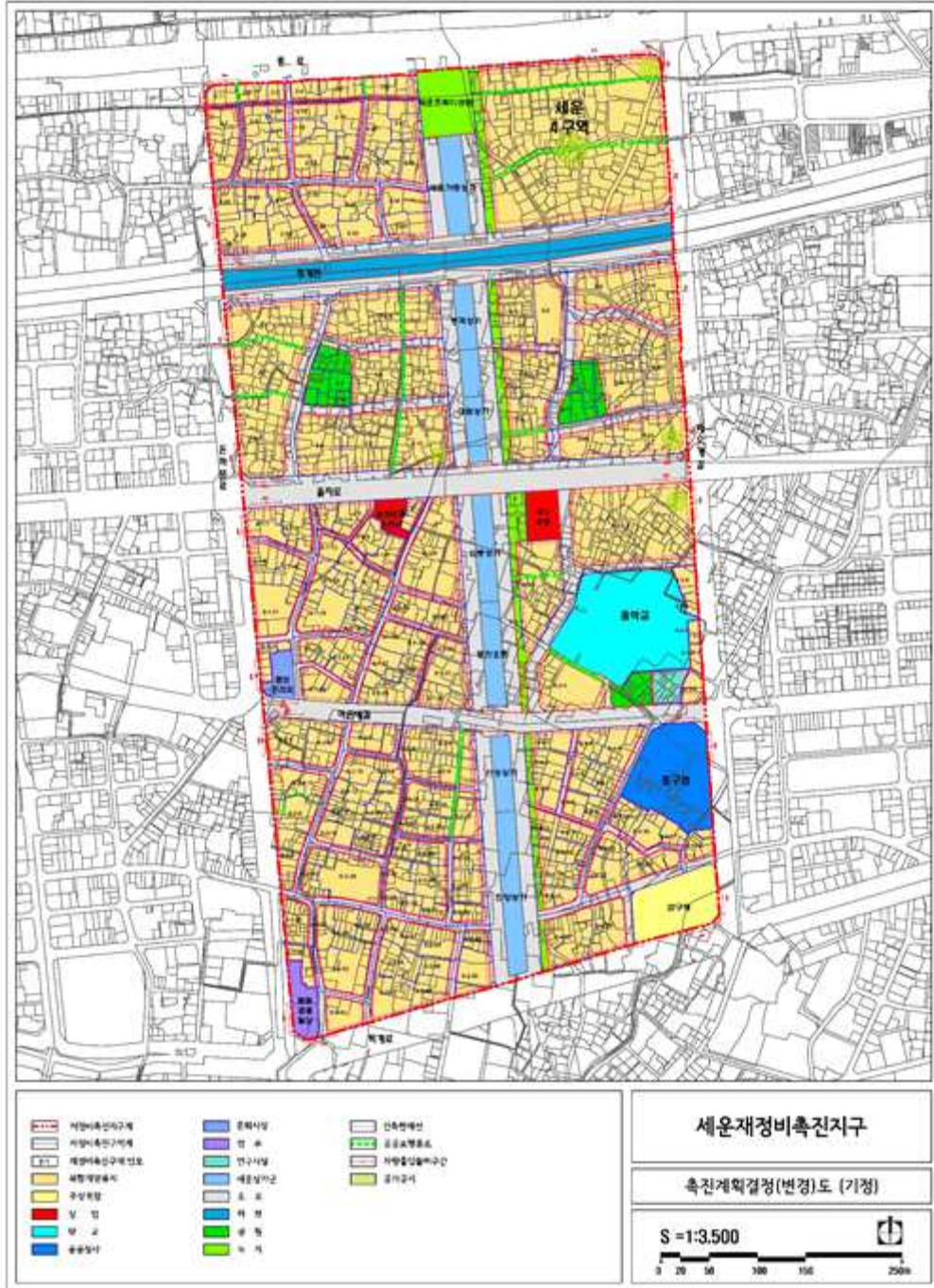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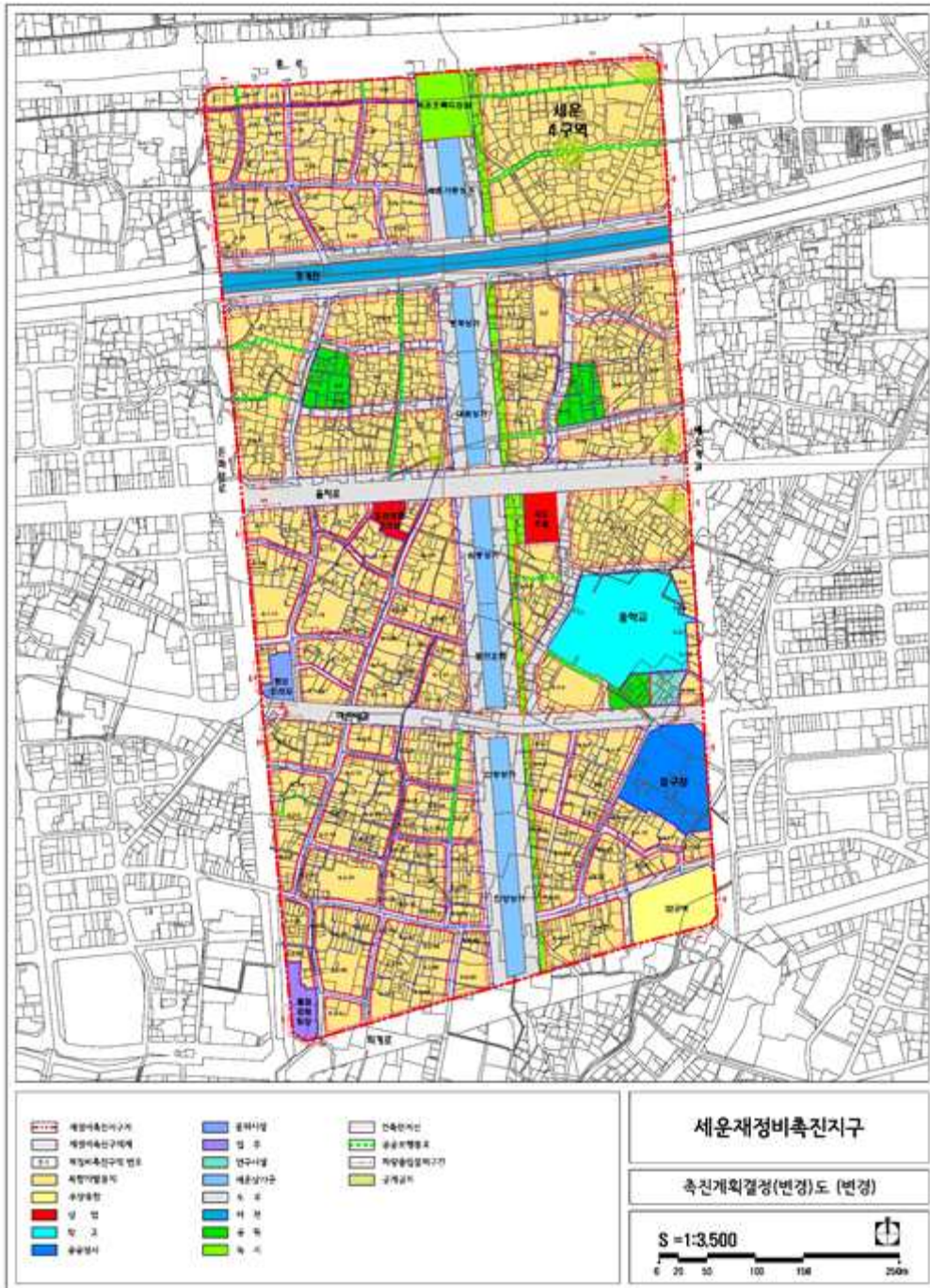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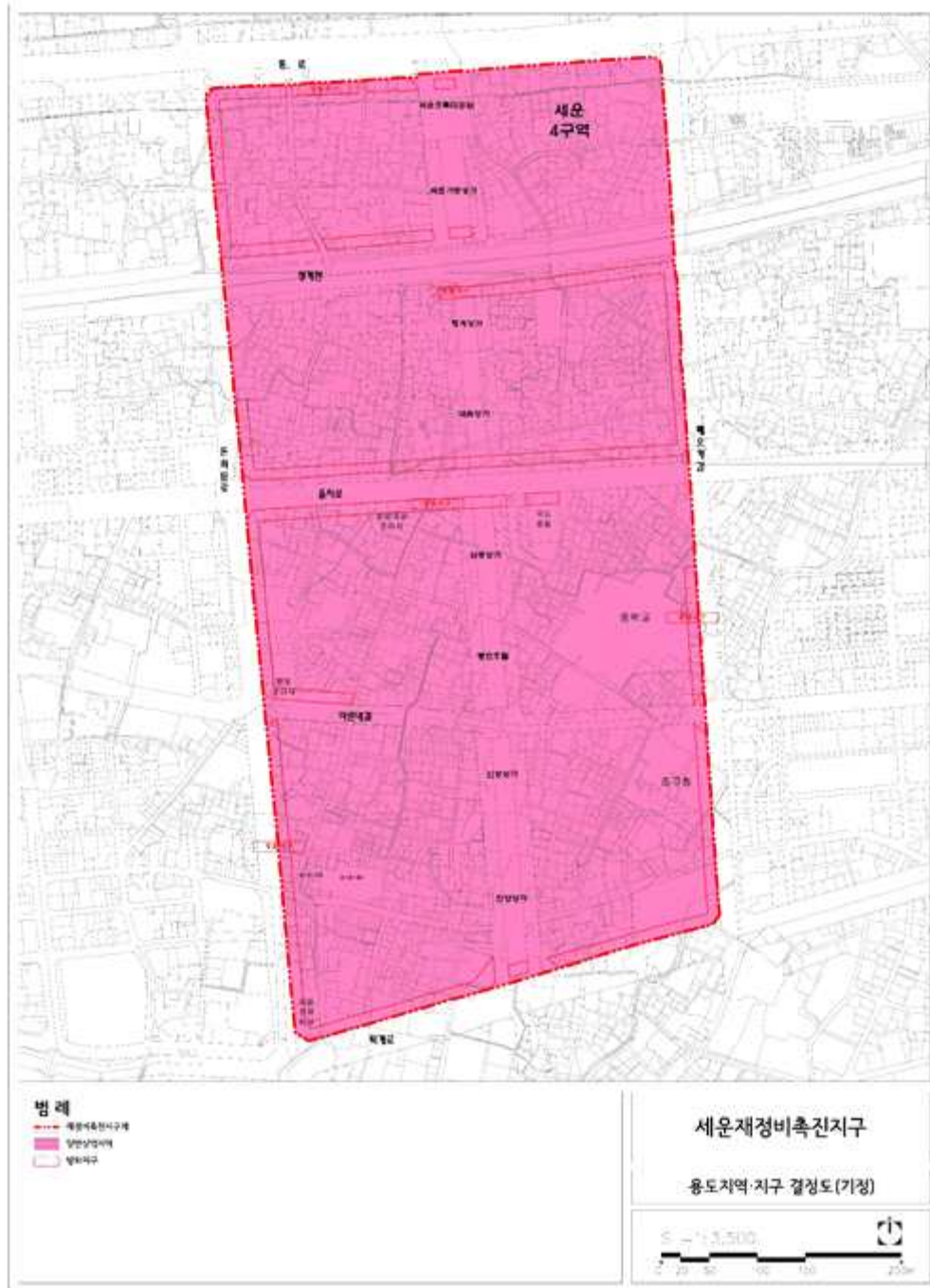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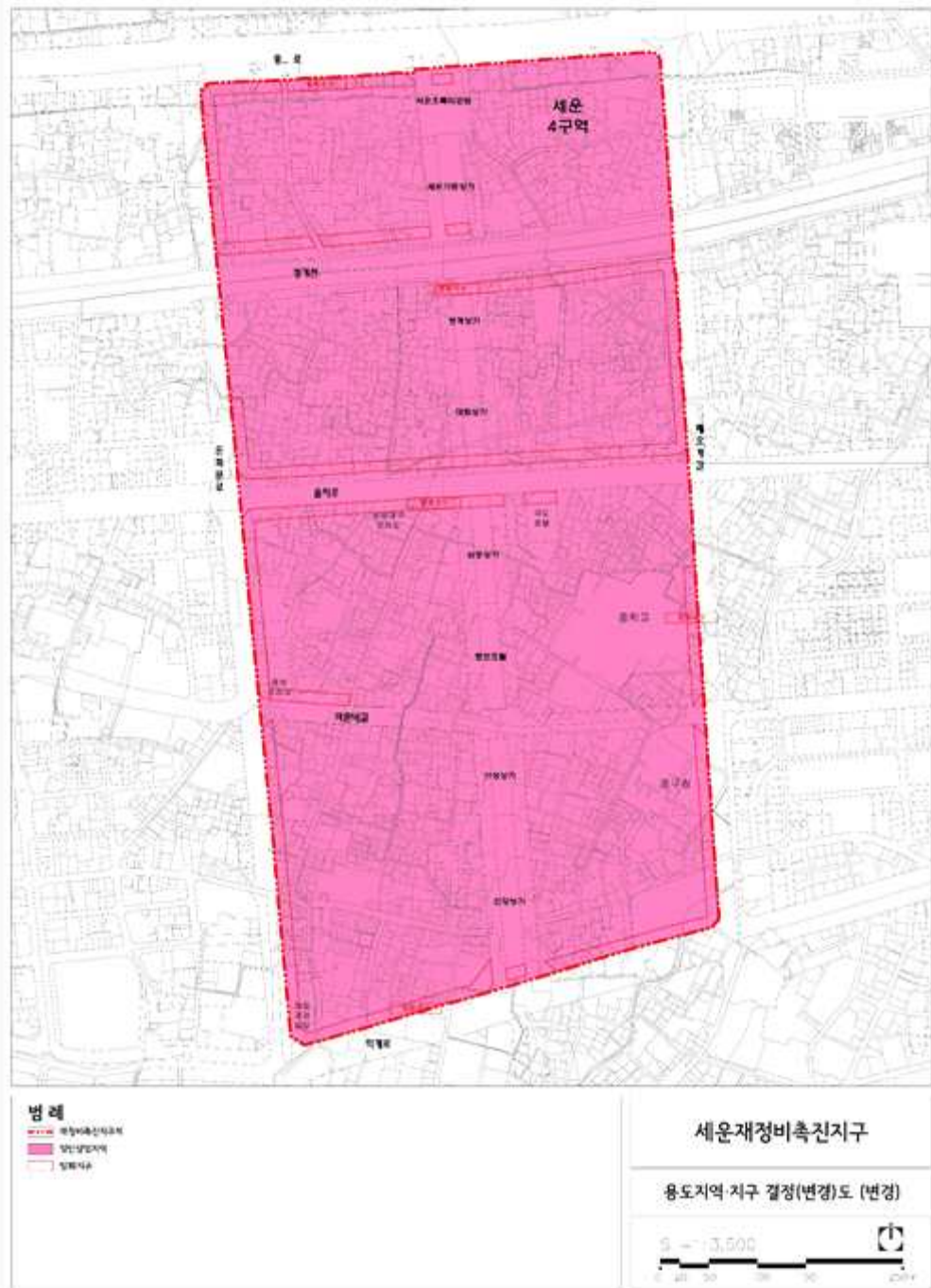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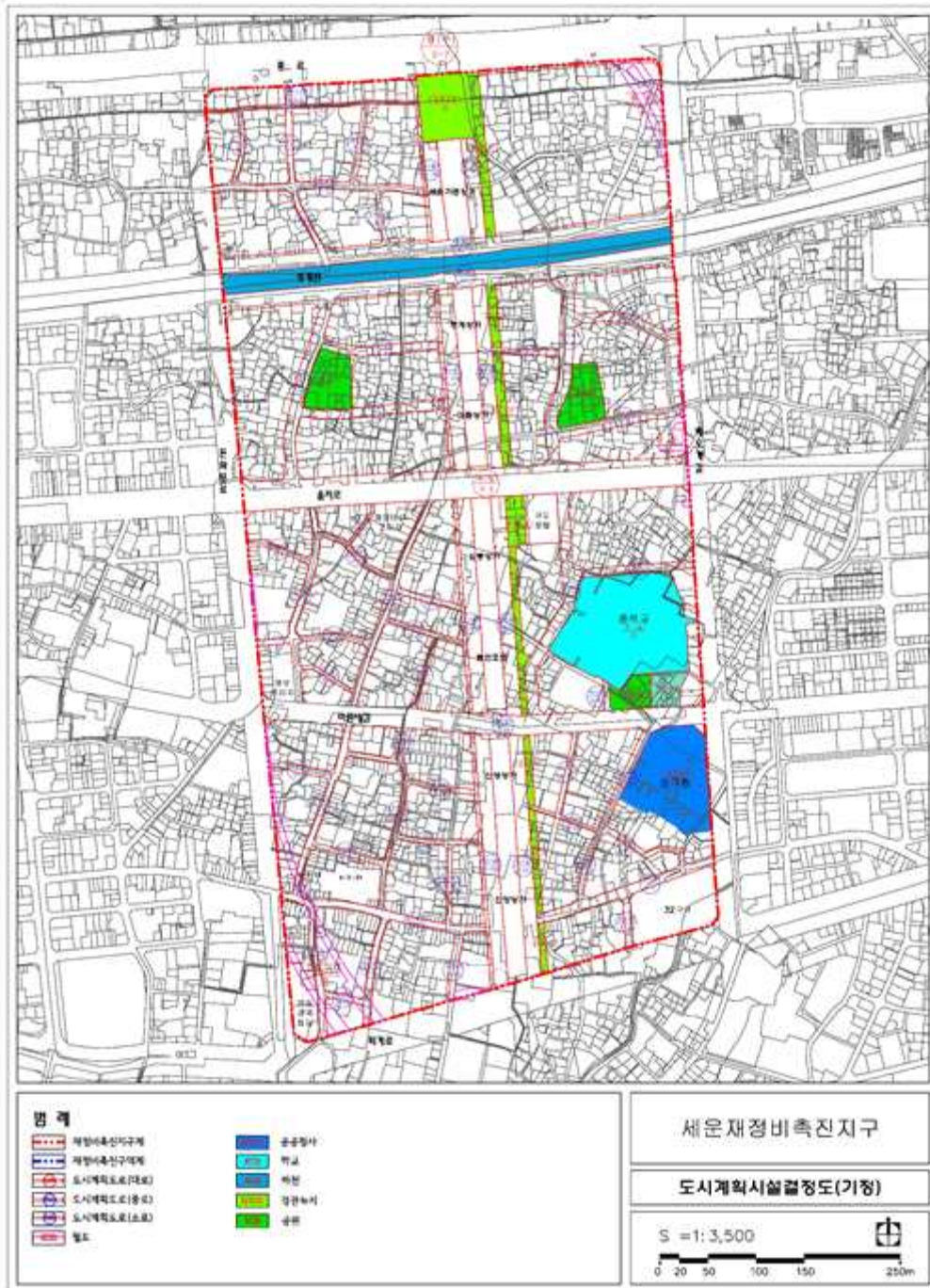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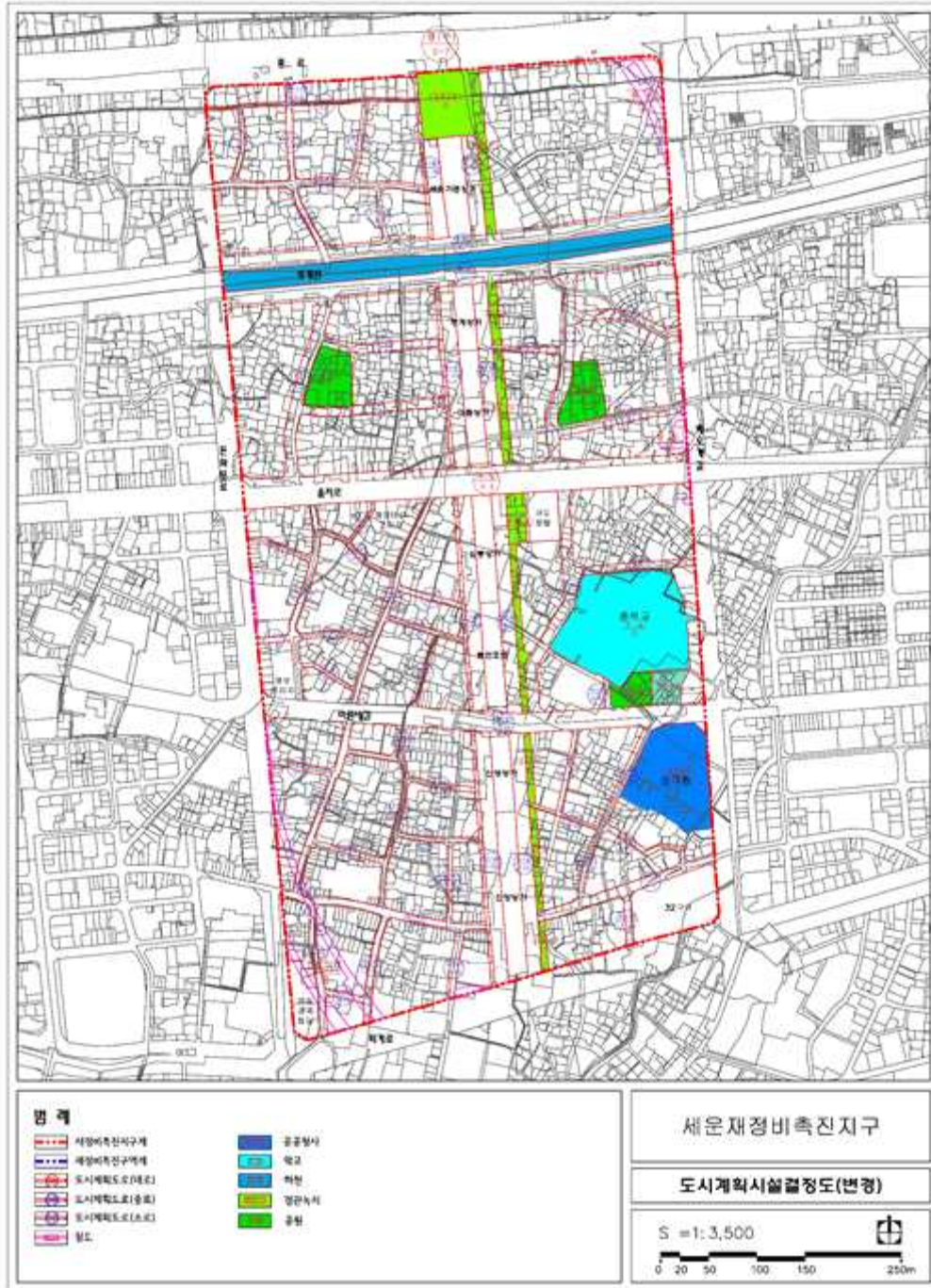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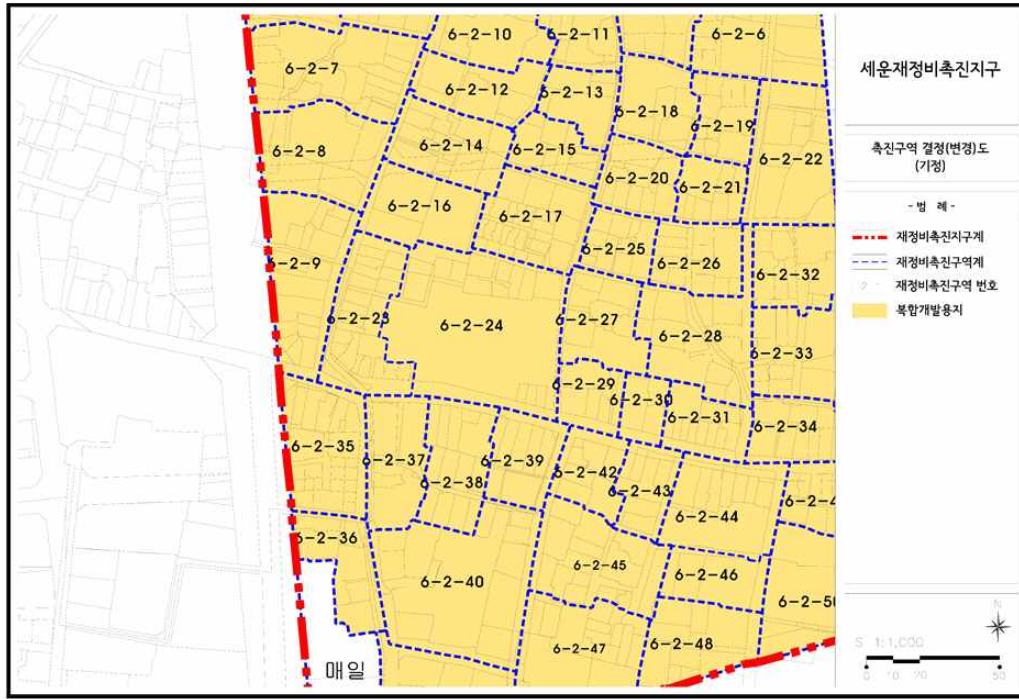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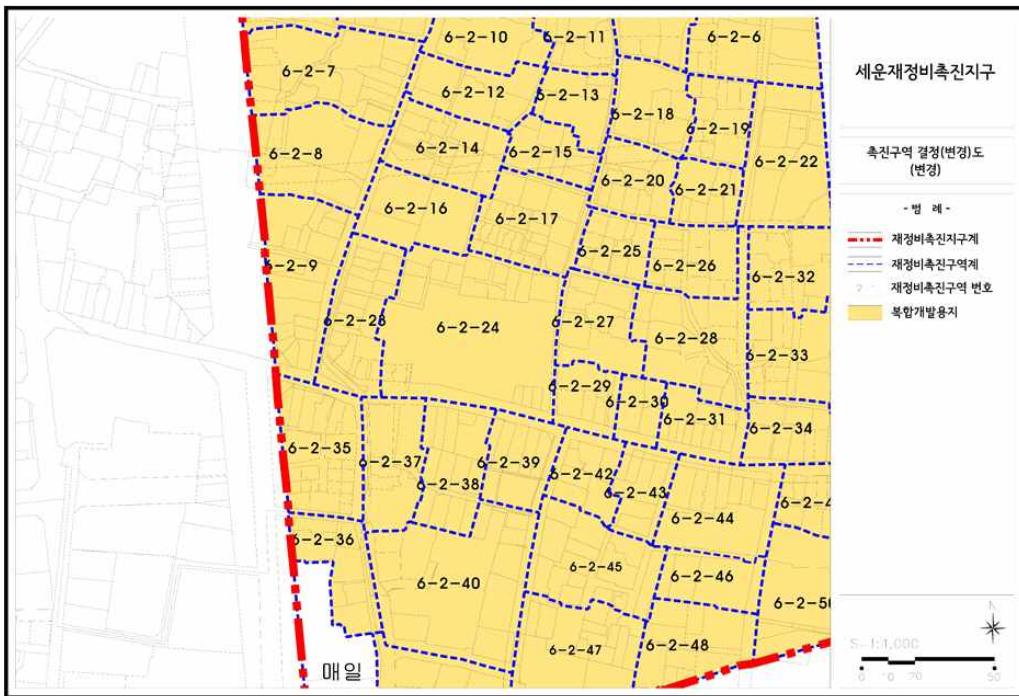


-세운재정비촉진구역(세운 6-2-23,24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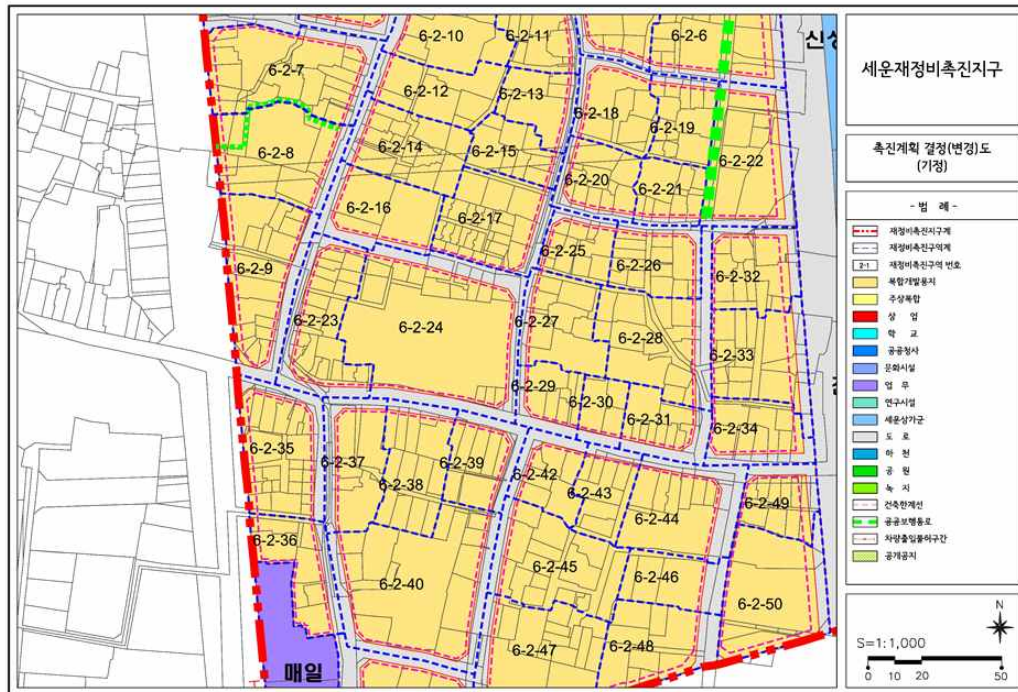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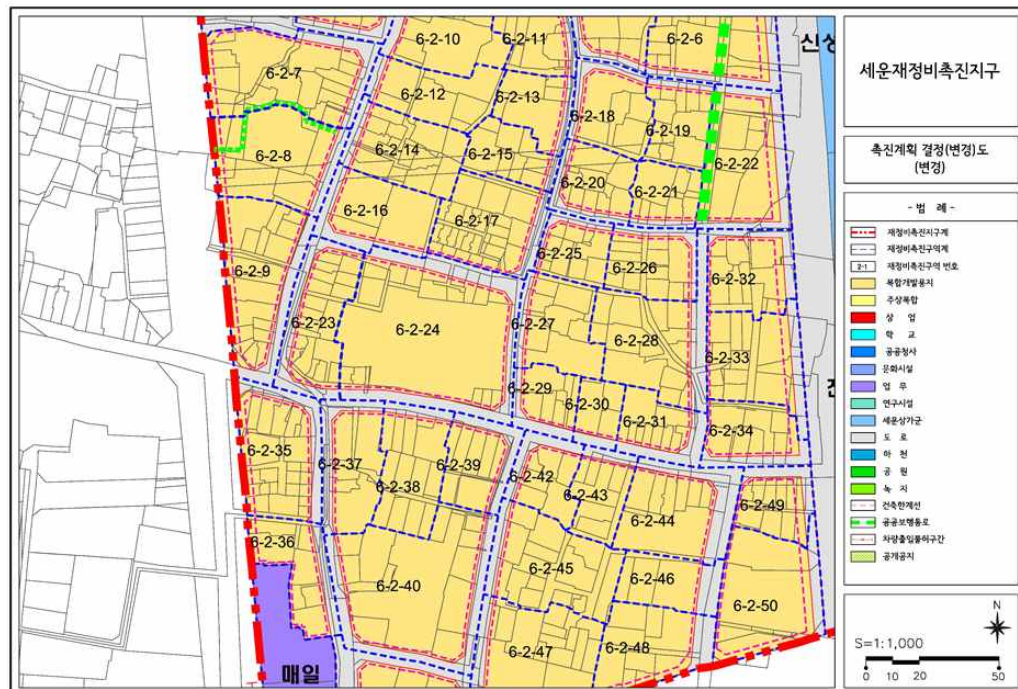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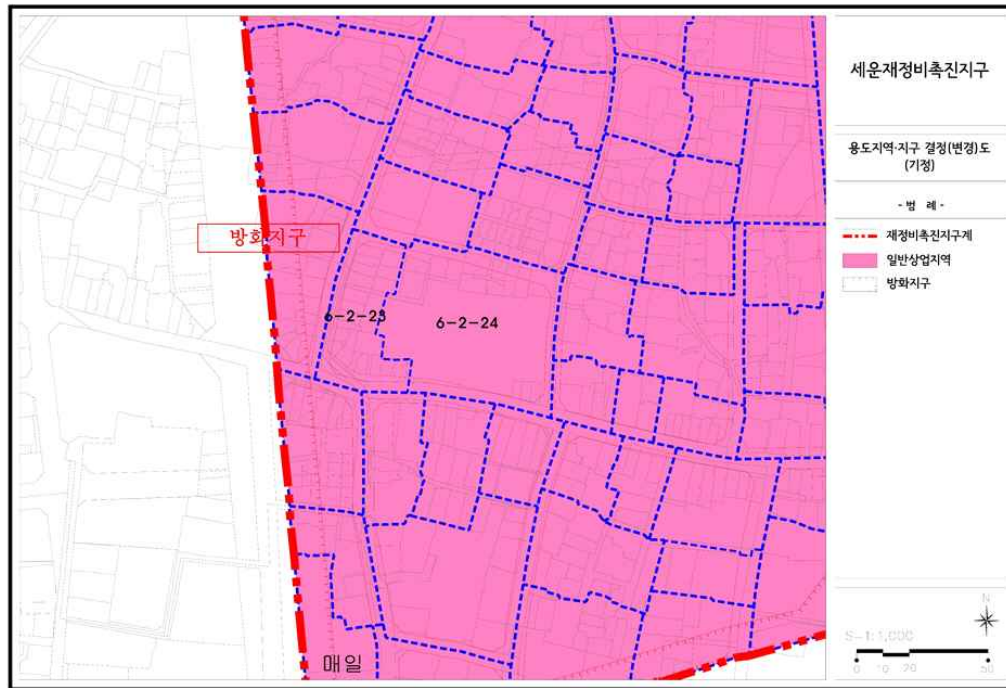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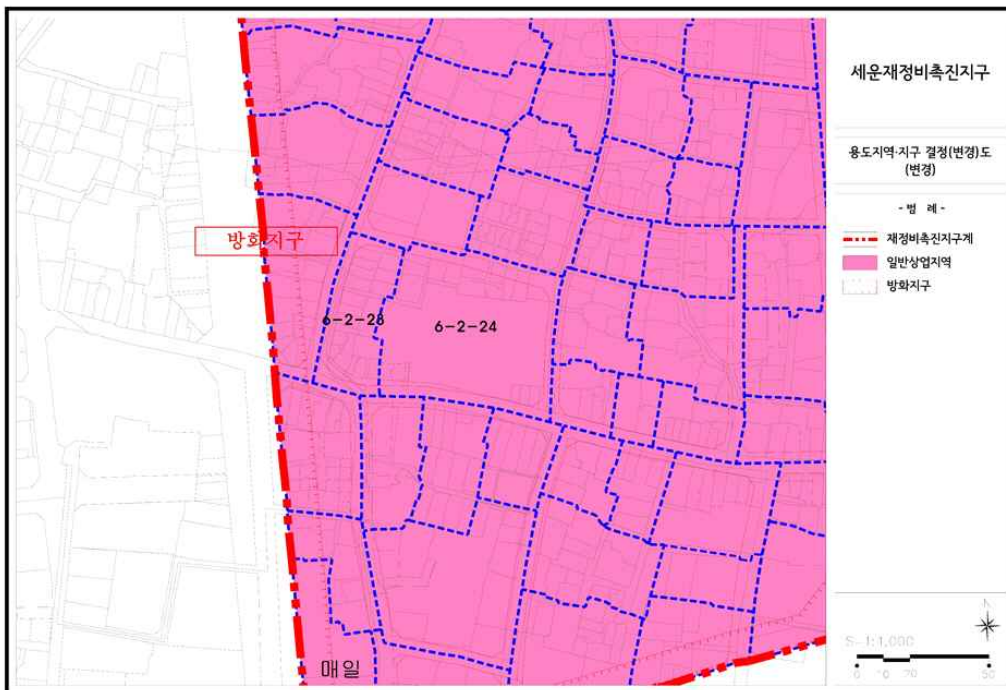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변경)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기정)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2호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6호(2019. 6. 13.)호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일부 단순착오로 작성 고시된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I. 정정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86호(2019. 6. 13.)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중 용도지역에 대한 결정조서에 단순착오로 작성된 일부 오기사항 정정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원	87,123 (1,335.38)	-	87,123 (1,335.38)	1996. 11. 20 (서울시고시 제1996-317호)	

※ 항목중()의 숫자는 노량진동 54-1번지 외 8필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정정 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7,123	—	87,123	100.0	
주거지역	합 계	10,990	—	10,990	12.6	
	제1종일반주거지역	10,490	—	10,490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0	—	500	0.6	
주거지역	합 계	76,133	—	76,133	87.4	
	제2종일반주거지역	76,133 (1,335.38)	—	76,133 (1,335.38)	87.4	

※ 항목중()의 숫자는 노량진동 54-1번지 외 8필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정정 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7,123	—	87,123	100.0	
주거지역	합 계	10,990	—	10,990	12.6	
	제1종일반주거지역	10,490	—	10,490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0	—	500	0.6	
상업지역	합 계	76,133	—	76,133	87.4	
	일반상업지역	76,133 (1,335.38)	—	76,133 (1,335.38)	87.4	

※ 항목중()의 숫자는 노량진동 54-1번지 외 8필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도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	25~40 (36~40)	주간선 도로	6,490 (170)	노량진역앞 (노량진동 63-12)	구로동 (노량진동 47-2)	일반 도로	상도동길	건고시 제177호 (62.12.8)	장승배기길 서고시제952호 (88.12.6)
기정	중로	2	31	15	국지 도로	1,120 (195)	노량진동 (노량진동 114-3)	상도동 (노량진동 119-164)	일반 도로	대림아파트 서측	총고시 제722호 (36.12.26)	만양로
기정	중로	3	101	12	국지 도로	134	노량진동 264-1	노량진동 267-49	일반 도로	전신전화국 입구	서고시 제174호 (78.4.25)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42)	(노량진동 27-12)	(노량진동 264-15)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430 (268)	(노량진동 31-15)	노량진동 244-82	일반 도로	-	서고시 제174호 (78.4.25)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6 (76)	(노량진동 240-79)	(노량진동 246-79)	일반 도로	-	서고시 제483호 (79.11.23)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304.5 (304.5)	(노량진동 54-31)	(노량진동 92-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63호 (01.8.6)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90)	(노량진동 41-23)	(노량진동 36-3)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93)	(노량진동 113-8)	(노량진동 116-3)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99)	(노량진동 29-12)	(노량진동 31-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12)	(노량진동 45-31)	(노량진동 34-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보행자 우선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47)	(노량진동 37-11)	(노량진동 39-1)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26)	(노량진동 71-4)	(노량진동 58-3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88)	(노량진동 119-205)	(노량진동 116-3)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59)	(노량진동 40-3)	(노량진동 40-3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폭원 및 연장, 기점 및 종점을 나타냄

2)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	25~40 (36~40)	주간선 도로	6,490 (170)	노량진역앞 (노량진동 63-12)	구로동 (노량진동 47-2)	일반 도로	상도동길	건고시 제177호 (62.12.8)	장승배기길 서고시제952호 (88.12.6)
기정	중로	2	31	15	국지 도로	1,120 (195)	노량진동 (노량진동 114-3)	상도동 (노량진동 119-164)	일반 도로	대림아파트 서측	총고시 제722호 (36.12.26)	만양로
기정	중로	3	101	12	국지 도로	134	노량진동 264-1	노량진동 267-49	일반 도로	전신전화국 입구	서고시 제174호 (78.4.25)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42)	(노량진동 27-12)	(노량진동 264-15)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430 (268)	(노량진동 31-15)	노량진동 244-82	일반 도로	-	서고시 제174호 (78.4.25)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6 (76)	(노량진동 240-79)	(노량진동 246-79)	일반 도로	-	서고시 제483호 (79.11.23)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304.5 (304.5)	(노량진동 54-31)	(노량진동 92-1)	일반 도로	-	서고시 제263호 (01.8.6)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90)	(노량진동 41-23)	(노량진동 36-3)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93)	(노량진동 113-8)	(노량진동 116-3)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99)	(노량진동 29-12)	(노량진동 31-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12)	(노량진동 45-31)	(노량진동 34-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보행자 우선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47)	(노량진동 37-11)	(노량진동 39-1)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126)	(노량진동 71-4)	(노량진동 58-3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88)	(노량진동 119-205)	(노량진동 116-3)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59)	(노량진동 40-3)	(노량진동 40-3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26호 (2009.03.26)	
신설	소로	3	7	6	국지 도로	(27)	(노량진동 54-13)	(노량진동 62-29)	일반 도로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주1)}

주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3) 도로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3-7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신설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도로의 개방성과 연속성 확보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신설

1)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소로 3-7	도로	노량진동 54-13	연장(m)	-	27	27	-	주2)
				폭(m)	-	6	6		
				높이(m)	-	6	6		
				면적(㎡)	-	162	162		

주2) 1. 노량진동 54-13도(기점)와 노량진동 62-29도(종점)를 연결하는 연장 27m 구간에 대하여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해발고도(m) = 기준지반고(GL : 설계의 기준이 되는 대지의 고도)]에 대하여 사업 준공 전 확정측량을 통하여 높이의 범위(해수면 기준)를 확정하여 고시토록 하겠음

2)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3-7	• 역세권 청년주택을 통과하는 도로구간에 대하여 연장 27m, 폭6m, 높이 6m 부분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구간 설정	• 도로 본연의 기능유지 및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위해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가. 획지선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1) 기정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법정동	지번			
A	1	노량진동	27-11,12,16,28-2,6,7,8,10,11,29-3,5,6,7,8,10,11,12,29, 31-3	1,496	획지선지정	
B	2	노량진동	27-3,5,10,17, 31-2,15,18, 32-2	1,383	획지선지정	
B	3	노량진동	24-66, 26-6, 40-100, 41-4, 41-27, 27-2	3,053	획지선지정	
C	4	노량진동	41-9,11,14,23,24,28,29, 34-1,2,5, 40-31	1,067	획지선지정	
C	5	노량진동	40-3,16,28,30,32,33,34,35,38,39,40,42,43,45,46,47,52,66,67,68,69,70,71,72,73,74,75,76,78,79,80,81, 41-5,29, 30	2,805	획지선지정	
E	6	노량진동	40-14,96, 42-11	2,737	획지선지정	
E	7	노량진동	42-6,7,14,43-17,45-14,17, 24,31,46-6	4,933	획지선지정	
E	8	노량진동	43-5,6,7,16,17, 44-11,12,16,18,23,45-27,28,33, 62-12	925	획지선지정	
E	9	노량진동	45-3,5,6,7,8,9,11,12,29,30,42	745	획지선지정	
F	10	노량진동	47-2, 45-31, 46-6	8,382	획지선지정	동작구청
G	11	노량진동	54-1,3,4,5,6,7,13, 62-7,11,23,29, 63-9,11	1,868	획지선지정	
G	12	노량진동	62-8,22	384	획지선지정	
G	13	노량진동	54-8	193	획지선지정	
G	14	노량진동	54-11,14,20,56-32	629	획지선지정	
G	15	노량진동	56-1	2,541	획지선지정	KTF
H	16	노량진동	57-1, 56-40, 60-27, 62-24	3,820.4	획지선지정	한국보건산업 연구원
H	17	노량진동	58-2, 59-8,9,10,29,30,32,33,34,35,43,41,44,70-16, 71-4	1,435	획지선지정	
I	18	노량진동	71-2,5,6, 72-18,22,23,24,25,26,47,51	1,182	획지선지정	이데아빌딩
I	19	노량진동	62-19, 70-10,12,27, 72-3,16,17,34	492	획지선지정	
I	20	노량진동	70-15, 72-57, 73-1,3, 75-2	887	획지선지정	
I	21	노량진동	62-20,26, 70-19,20,28, 72-35,37,38,56,58,61,63	4,572	획지선지정	동작경찰서
I	22	노량진동	72-48, 100-1, 113-8	1,801	획지선지정	
J	23	노량진동	114-5	1,523	획지선지정	
J	24	노량진동	116-2	2,168	획지선지정	획지25번과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J	25	노량진동	90-1,8,11, 91-1, 119-1,64,166,237	771	획지선지정	획지24번과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2) 변경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면적 (㎡)	계획내용	비 고
		법정동	지번			
A	1	노량진동	27-11,12,16,28-2,6,7,8,10,11,29-3,5,6,7,8,10,11,12,29, 31-3	1,496	획지선지정	
B	2	노량진동	27-3,5,10,17, 31-2,15,18, 32-2	1,383	획지선지정	
B	3	노량진동	24-66, 26-6, 40-100, 41-4, 41-27, 27-2	3,053	획지선지정	
C	4	노량진동	41-9,11,14,23,24,28,29, 34-1,2,5, 40-31	1,067	획지선지정	
C	5	노량진동	40-3,16,28,30,32,33,34,35,38,39,40,42,43,45,46,47,52,66,67,68,69,70,71,72,73,74,75,76,78,79,80,81, 41-5,29, 30	2,805	획지선지정	
E	6	노량진동	40-14,96, 42-11	2,737	획지선지정	
E	7	노량진동	42-6,7,14,43-17,45-14,17, 24,31,46-6	4,933	획지선지정	
E	8	노량진동	43-5,6,7,16,17, 44-11,12,16,18,23,45-27,28,33, 62-12	925	획지선지정	
E	9	노량진동	45-3,5,6,7,8,9,11,12,29,30,42	745	획지선지정	
F	10	노량진동	47-2, 45-31, 46-6	8,382	획지선지정	동작구청
G	12	노량진동	62-8,22	384	획지선지정	
G	13	노량진동	54-8	193	획지선지정	
G	14	노량진동	54-11,14,20,56-32	629	획지선지정	
G	15	노량진동	56-1	2,541	획지선지정	KTF
H	16	노량진동	57-1, 56-40, 60-27, 62-24	3,820.4	획지선지정	한국보건산업 연구원
H	17	노량진동	58-2, 59-8,9,10,29,30,32,33,34,35,43,41,44,70-16, 71-4	1,435	획지선지정	
I	18	노량진동	71-2,5,6, 72-18,22,23,24,25,26,47,51	1,182	획지선지정	이데아빌딩
I	19	노량진동	62-19, 70-10,12,27, 72-3,16,17,34	492	획지선지정	
I	20	노량진동	70-15, 72-57, 73-1,3, 75-2	887	획지선지정	
I	21	노량진동	62-20,26, 70-19,20,28, 72-35,37,38,56,58,61,63	4,572	획지선지정	동작경찰서
I	22	노량진동	72-48, 100-1, 113-8	1,801	획지선지정	
J	23	노량진동	114-5	1,523	획지선지정	
J	24	노량진동	116-2	2,168	획지선지정	획지25번과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J	25	노량진동	90-1,8,11, 91-1, 119-1,64,166,237	771	획지선지정	획지24번과 획지간 공동개발 (권장)

3) 획지선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가구 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G	• 획지선 지정 해제 - 획지번호 : 11 - 지번 : 54-1,3,4,5,6,7,13, 62-7,11,23,29, 63-9,11 - 면적 : 1,868㎡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 개발 지정에 따른 획지선 지정 해제

나. 공동개발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기정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법정동	지번			
I	-	노량진동	81,82	531	공동개발지정	
I	-	노량진동	72-40,68,69	302	공동개발지정	
F	-	노량진동	37-1,4,6,7,15, 39-13,14,39	923	공동개발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2) 변경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 적(㎡)	계획내용	비 고
		법정동	지번			
I	-	노량진동	81, 82	531	공동개발지정	
I	-	노량진동	72-40,68,69	302	공동개발지정	
F	-	노량진동	37-1,4,6,7,15, 39-13,14,39	923	공동개발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G	-	노량진동	54-1,3,4,5,7,13,17,19,62-25	1,335.38	공동개발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G	-	노량진동	62-7,11,23, 63-11	292	공동개발지정	

3) 공동개발 지정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가구 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G	- 공동개발 지정 1 - 지번 : 54-1,3,4,5,6,7,13, 62-7,11,23,29, 63-9,11 - 면적 : 1,335.38㎡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지정에 따른 획지선 지정 해제
	- 공동개발 지정 2 - 지번 : 62-7,11,23, 63-11 - 면적 : 292㎡	획지선 지정 해제에 따른 잔여필지에 대한 관리 및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공동개발 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건축물의 지정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1) 건축물의 지정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지정용도	노량진동 54-1, 54-3, 54-4, 54-5, 54-7, 54-13, 54-17, 54-19, 62-25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3)}	가	역세권 청년주택

주3)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2) 건축물의 지정용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거복합)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지정용도 신설

※ 비주거용도는 지하2층~지상3층에 한하며, 이중 근린생활시설은 지하2층~지상1층, 교육연구시설은 지상2층~지상3층에 한함

나.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불허용도	간선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단, G가구 12획지(62-8, 62-22번지)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를 추가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바닥면적 150㎡미만),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A	구역 전체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B	

※ 불허용도 적용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함

2)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변경	불허용도	간선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단, G가구 12획지(62-8, 62-22번지)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를 추가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바닥면적 150㎡미만),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A	구역 전체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B	

※ 불허용도 적용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함

3)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불허용도(간선부) 계획내용 변경 - 지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변경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거복합 제외)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불허용도(간선부) 계획내용 변경 - 노량진동 54-1 외 8필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다. 건축물의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권장 용도	지정	간 선 부	전 층 권 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1	구역 전 체
		이 면 부	전 층 권 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학원 및 독서실(당해용도 바닥 면적 500㎡ 미만인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2	

라.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호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지정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 간선도로변 (노량진로 및 장승배기길 등)	300% 이하	63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	
• 이면도로변 (15m이하 도로)	250% 이하	500% 이하	-		

■ 변경

구 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기본 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 간선도로변 (노량진로 및 장승배기길 등)	300% 이하	63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	
• 이면도로변 (15m이하 도로)	250% 이하	500% 이하	—		
• 노량진동 54-1외 8필지 (54-1, 54-3, 54-4, 54-5, 54-7, 54-13, 54-17, 54-19, 62-15)	—	—	900% 이하	1,075.5% 이하 주4)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 역세권 청년주택

주4) 도시계획시설로 지구단위계획 기 결정된 도로를 기부채납하여 상한용적률 산출

- 상한용적률 산정식 : 기본용적률 $\times$ (1+1.3 $\times$ α $\times$ 가중치)
 - α : 순부담 공공시설부지 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상한용적률 산정
 - $900 \times (1 + 1.3 \times 0.15 \times 1) = 1,075.5\%$
 - ※ α : $181.94/1,153.44 = 0.15$
 - ※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용적률(변경) - 지정 :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630%이하 - 변경 : 기본용적률 900%이하 상한용적률 1,075.5%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 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른 운영기준 준용

3) 건축물 높이 : 변경없음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최고높이	• 간선도로변(노량진로, 장승배기길)	90m이하	
	• 만양로변, 동작경찰서	50m이하	
	• 이면도로변	40m이하	

마. 용적률 적용(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2% 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지 제공면적 : 142.14㎡(12.32%) - 142.14㎡(12.32%) ≥ 138.41㎡(12.00%)	기본 용적률 9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동작구 노량진동 54-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 비주거비율 10.75%(1,332.58㎡) - 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주거 : 비주거 = 11,066.93㎡(89.25%) : 1,332.58㎡(10.75%) - 비주거비율 10% 이상 20% 이하(용적률 기준)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14.14% : 85.86% (41세대) (258대)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8.28㎡ A, 30.55㎡ B, 34.61㎡ A Type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8.16㎡ A, 18.28㎡ A, 19.98㎡ A, 30.55㎡ B, 30.68㎡ A, 30.80㎡ B, 31.70㎡ B, 32.29㎡ B, 33.42㎡ B, 34.61㎡ A Type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7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상 1층에 100.74㎡ 계획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3층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함.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법 및 지침내에서 건축인허가시 변동될 수 있음.

바. 공공기여계획

구 분	기본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 고
일반 상업지역	900% 이하	법정 용적률 (1,075.5%) 이하	- 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12% 이상 - 1,153.44㎡ × 12% = 138.41㎡(12.00%)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142.14㎡(12.32%) ≥ 138.41㎡(12.00%)	동작구 노량진동 54-1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함

사.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적용대상		건축 한계선	벽면 한계선	비 고
기정	간선 도로변	노량진로, 장승배기길	3m	-	• 보도형 조성(간선부 보행구간 확보)
	이면 도로변	6m 도로변	1m	-	• 보행공간의 안전 및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계선 추가
		8m미만 도로변	1~2m	-	• 차도형 조성(이면부 차도구간 6m이상 확보)
		이투스학원 이면부통로	4~6m 미만	-	• 차도형 조성(이면부 차도구간 6m이상 확보)
		KTF이면부고사원밀집지 일대	1m 미만	-	• 차도형 조성(이면부 차도구간 6m이상 확보)
		만양로 신한은행 이면부 일대	1m	-	• 보차혼용형 조성(이면부 보행 및 차도 구간확보)
		공공보행통로 조성부분	-	3m	• 보도형 조성(노량진동 56-9 일대 이면부 보행구간 확보)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변경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쌈지형 공 지	기정	보행통로 및 가각부	26개소	
	변경	보행통로 및 가각부	26개소	• 노량진로와 장승배기로 교차가각부에 있는 쌈지형 공지 (1개소) 위치조정(역세권 청년주택내)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 간선변 가각부 및 주요전면도로변(노량진로 및 장승배기길) 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교차로에 면한 대지(획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 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		• 간선변으로의 차량 직접출입 규제로 안전한 교통소통 및 차량흐름의 효율성 상승 도모
보행자 우선도로	• 동작구청과 대성학원 사이의 이면도로를 지역주민들의 통행 편의성제고를 위해 동서방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폭원 6m) • 노량진로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계획의 보행녹지축을 연결 하는 이면도로 2개소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폭원 6m, 8m) • 만양로 이면도로변의 보행자를 위주로 한 통행체계 확립		•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쾌적한 통행공간 확보 및 차량과 보행자의 조화로운 소통 유도 • 주요지역 및 이면도로체계와 보행흐름 연계
보차 혼용통로	• 노량진동 40-31일대의 획지단위 개발시기에 따른 맹지발 생방지를 위해 한시적 보차혼용 통로 운영 • 노량진동 116-2일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유도를 위하여 8m폭원의 보차혼용통로 운영 • 노량진동 57-1일대의 노량진로와 이면도로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6m폭원의 보차혼용통로 운영		• 노량진로, 만양로 및 이면도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차혼용통로 신설로 차량과 보행자의 보다 원활한 통행 유도

가. 차량출입금지구간 : 변경

1)기정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A	차량출입금지구간	
B	차량출입금지구간	
C	차량출입금지구간	
E	차량출입금지구간	
G	차량출입금지구간	
H	차량출입금지구간	
I	차량출입금지구간	
J	차량출입금지구간	

2)변경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A	차량출입금지구간	
B	차량출입금지구간	
C	차량출입금지구간	
E	차량출입금지구간	
G	차량출입금지구간 일부구간 해제	역세권 청년주택 주출입구
H	차량출입금지구간	
I	차량출입금지구간	
J	차량출입금지구간	

나. 보행자 우선도로 : 변경없음

다. 보차혼용통로 : 변경없음

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⑥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III. 관계도면 : 붙임 참고(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고

V.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02-2133-6296)와 동작구청(유한양행 임차청사 3층) 도시계획과(☎02-820-9177)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VI.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3호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 고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2019. 6. 28)에서 승인된 서울특별시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결산 개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결과는

예산현액 36,547,866,094,954원(전년도 이월금 766,173,346,954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8,112,058,295,242원이고,
지출액은 34,335,450,755,06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776,607,540,18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3,776,607,540,182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한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630,300,289,069원
사고이월 506,585,838,251원
국고보조금반납금 64,321,919,55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5,399,493,310원이다.

나. 기금 결산

2018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개(23개 계정)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3,740,878,968,660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 1,558,000,078,130원이고
당해년도 사용액 1,111,934,997,951원으로
당해년도말 조성액은 4,186,944,048,839원이다.

다. 재무회계 결산

2018년도말 기준

자산총액은 135,484,899,377,137원이고

부채총액은 7,907,449,755,826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7,577,449,621,311원이다.

2018년도 중 발생한

비용은 26,771,856,006,267원이고

수익은 28,282,380,989,545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510,524,983,278원)이다.

라. 성과보고서

2018회계연도 212개 정책사업목표에 대하여

42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42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51건, 달성 308건, 미달성 62건이다.

2.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	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수납총액 ㉠	환금액 ㉡	실제 수납액 ㉢=㉠-㉡			㉢/㉢	㉤/㉢
합 계	35,791,692,748,000	766,173,346,954	36,547,866,094,954	39,689,548,692,479	39,277,645,769,889	1,165,587,474,647	38,112,058,295,242	420,040,457,322	1,157,449,939,915	104.3 %	96.0 %
일 반 회 계	25,269,572,404,000	207,605,017,690	25,477,177,421,690	28,539,762,178,024	28,250,867,890,267	1,156,114,438,187	27,094,753,452,080	418,519,118,645	1,026,489,607,299	106.3 %	94.9 %
지방세수입	17,096,474,000,000		17,096,474,000,000	20,447,251,858,127	20,246,245,797,430	1,142,984,515,790	19,103,261,281,650	413,866,391,055	930,124,185,422	111.7 %	93.4 %
보통세	15,188,359,000,000		15,188,359,000,000	17,398,132,761,350	18,255,951,671,430	1,114,387,644,370	17,141,564,027,060	28,538,297,500	228,030,436,790	112.9 %	98.5 %
목적세	1,671,518,000,000		1,671,518,000,000	1,793,109,765,390	1,789,050,660,550	27,680,183,800	1,761,370,476,750	1,543,537,960	30,195,750,680	105.4 %	98.2 %
지난년도수입	236,597,000,000		236,597,000,000	1,256,009,331,387	201,243,465,450	916,687,610	200,326,777,840	383,784,555,595	671,897,997,952	84.7 %	15.9 %
세외수입	1,477,973,613,000		1,477,973,613,000	1,253,409,236,787	1,165,511,009,727	12,729,922,407	1,152,781,087,320	4,652,727,590	95,975,421,877	78.0 %	92.0 %
경상적세외수입	504,213,193,000		504,213,193,000	518,515,420,580	508,064,453,177	1,250,645,207	506,813,807,970		11,701,612,610	100.5 %	97.7 %
임시적세외수입	973,760,420,000		973,760,420,000	734,893,816,207	657,446,556,550	11,479,277,200	645,967,279,350	4,652,727,590	84,273,809,267	66.3 %	87.9 %
지방교부세	184,110,359,000		184,110,359,000	184,995,359,000	184,995,359,000		184,995,359,000			100.5 %	100.0 %
지방교부세	184,110,359,000		184,110,359,000	184,995,359,000	184,995,359,000		184,995,359,000			100.5 %	100.0 %
보조금	3,683,048,877,000		3,683,048,877,000	3,611,960,502,000	3,612,360,502,000	400,000,000	3,611,960,502,000			98.1 %	100.0 %
국고보조금등	3,683,048,877,000		3,683,048,877,000	3,611,960,502,000	3,612,360,502,000	400,000,000	3,611,960,502,000			98.1 %	100.0 %
보편수입등및내부거래	2,827,965,555,000	207,605,017,690	3,035,570,572,690	3,042,145,222,110	3,041,755,222,110		3,041,755,222,110		390,000,000	100.2 %	100.0 %
보편수입등	2,460,182,375,000	207,605,017,690	2,667,787,392,690	2,674,335,711,110	2,673,945,711,110		2,673,945,711,110		390,000,000	100.2 %	100.0 %
내부거래	367,783,180,000		367,783,180,000	367,809,511,000	367,809,511,000		367,809,511,000			100.0 %	100.0 %
특 별 회 계	10,512,120,344,000	558,568,329,264	11,070,688,673,264	11,149,786,514,455	11,026,777,879,622	9,473,036,460	11,017,304,843,162	1,521,338,677	130,960,332,616	99.5 %	98.8 %

구 분	예산액 ㉔	전년도 이월액④	예산원액 ㉔=㉔+㉕	장수 결정액⑤	수납액			발납결손액 ㉖	미수납액 ㉔=㉖-㉕-㉗	비율(%)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 수납액 ③=㉕-㉖			③/㉔	③/㉕
공기업특별회계	2,022,535,226,000	8,209,862,000	2,030,745,088,000	2,082,939,035,662	2,041,912,519,514	3,971,429,250	2,037,941,090,264	1,162,403,897	43,835,541,501	100.4 %	97.8 %
수도사업특별회계	820,000,000,000	8,209,862,000	828,209,862,000	897,825,993,615	877,877,263,494	1,737,032,780	876,140,230,714	837,182,017	20,848,580,884	105.8 %	97.6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02,535,226,000		1,202,535,226,000	1,185,113,042,047	1,164,035,256,020	2,234,396,470	1,161,800,859,550	325,221,880	22,966,960,617	96.6 %	98.0 %
기타특별회계	8,489,585,118,000	550,358,467,264	9,039,943,585,264	9,066,847,478,793	8,984,865,360,108	5,501,807,210	8,979,363,752,898	358,934,790	87,124,791,115	99.3 %	99.0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215,904,897,000	102,282,862,210	1,318,187,759,210	1,303,222,152,772	1,303,222,152,772		1,303,222,152,772			98.9 %	100.0 %
교통사업특별회계	1,665,835,220,000	56,515,834,580	1,722,351,054,580	1,811,989,640,938	1,763,664,787,897	669,337,890	1,762,995,250,007	362,479,860	48,641,911,071	102.4 %	97.3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36,519,286,000	40,559,877,962	377,079,163,962	396,695,631,888	383,401,752,288	1,094,114,970	382,307,637,318		14,387,994,570	101.4 %	96.4 %
주택사업특별회계	1,850,181,659,000	22,912,369,260	1,873,094,028,260	1,846,848,895,621	1,823,477,810,969	54,008,710	1,823,423,802,259		23,425,093,362	97.3 %	98.7 %
도시개발특별회계	1,377,637,900,000	314,065,116,987	1,691,703,016,987	1,647,550,954,034	1,650,609,503,322	3,675,477,740	1,646,934,025,582		616,928,452	97.4 %	100.0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86,326,124,000		1,186,326,124,000	1,188,930,054,752	1,188,930,054,752		1,188,930,054,752			100.2 %	100.0 %
한강수질개선훈원회계	28,935,256,000	1,868,366,670	30,803,622,670	31,498,056,472	31,498,056,472		31,498,056,472			102.3 %	100.0 %
소방안전특별회계	828,244,776,000	12,154,039,595	840,398,815,595	840,112,092,316	840,061,241,636	8,467,900	840,052,773,736	6,454,920	52,863,660	100.0 %	100.0 %

나. 세출결산

(단위:원)

구 분	예산액 ㉑	예산성립후증감액 ㉒	예산현액 ㉓=㉑+㉒	지출액 ㉔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㉕	전행잔액 ㉖=㉓-㉔-㉕-㉗-㉘					예비비 ㉙
					계 ㉖=㉑+㉒	명시 이월 ㉗	사고 이월 ㉘	계속비 이월 ㉙		계 ㉖=㉑+㉒ +㉕+㉗+㉘+㉙	예산 결감액 ㉚	보조금 정산잔액 ㉛	계획변경증정행 잔액 ㉜	지출잔액 ㉝	
합 계	35,781,692,748,000	766,173,346,954	36,547,866,094,954	34,335,450,755,060	1,136,886,127,320	630,300,289,069	506,865,838,251		64,309,428,394	011,279,784,240		113,567,794,560	248,099,034,354	443,225,696,328	206,328,319,000
일 반 회 계	25,269,572,404,000	207,605,017,690	25,477,177,421,690	24,698,782,868,682	216,232,650,801	102,533,343,540	113,699,507,261		37,815,219,907	524,346,483,300		85,268,838,152	39,411,081,224	233,371,251,924	166,303,312,000
일반공공행정	6,896,396,731,000	15,690,244,800	6,712,076,975,800	6,672,407,156,560	11,070,152,870	8,109,742,390	2,960,410,480		29,252,420	28,570,413,950		160,644,210	1,170,980,500	27,236,789,240	
공공질서확보	851,704,651,000	1,372,493,680	853,077,134,680	847,917,986,478	3,270,595,330	2,029,245,000	1,241,350,330		241,310,063	1,647,242,709		119,581,661	411,253,220	1,116,407,828	
교육	3,652,278,708,000	1,776,325,260	3,654,055,033,260	3,645,043,596,350	164,236,000		164,236,000		2,450,640	8,844,750,270		5,718,160	563,883,000	8,275,149,110	
문화및관광	629,945,634,000	28,080,839,217	658,026,473,217	606,760,925,081	29,106,469,432	20,564,329,710	8,542,138,722		1,599,934,703	20,559,145,031		1,182,461,183	7,273,828,744	12,102,855,104	
환경보호	853,182,104,000	62,093,610,506	915,275,714,506	837,803,986,938	27,629,866,250	10,489,699,560	17,139,966,690		20,845,719,580	28,996,142,737		6,701,155,788		13,133,012,899	
사회복지	7,792,151,439,000	38,611,141,270	7,830,762,580,270	7,621,700,015,555	42,614,969,846	18,483,827,960	24,151,140,886		9,473,388,025	156,974,207,844		70,085,879,697	8,087,459,960	78,800,868,187	
보건	460,262,744,000	4,895,416,830	465,248,160,830	434,527,852,657	9,029,165,010	4,402,940,000	4,626,225,010		519,369,929	21,171,773,234		6,312,669,743	6,152,557,000	8,706,546,491	
농림해양수산	17,052,807,000	473,199,990	17,525,806,990	16,105,193,194	330,421,340		330,421,340		54,639,637	1,035,552,819		113,962,103	221,000,000	700,590,716	
산업·중소기업	250,700,945,000	14,105,662,060	264,810,607,060	221,337,108,823	34,270,549,230	14,989,166,000	19,301,381,230		6,554,470	9,196,394,537		298,214,820	1,233,719,340	7,664,460,577	
수송및교통	1,364,024,947,000	18,895,171,110	1,382,920,118,110	1,376,047,229,164	2,882,674,260	2,604,833,000	277,741,260			3,980,214,866			13,050,000	3,977,164,666	
국토및지역개발	1,610,226,820,000	52,195,454,037	1,662,422,274,037	1,580,459,243,050	55,471,715,233	20,919,257,920	34,552,455,313		5,013,151,970	21,478,165,784		280,550,983	3,833,239,040	17,364,375,761	
과학기술	4,783,800,000	0	4,783,600,000	2,943,266,700	392,040,000		392,040,000			1,448,293,300			1,050,000,000	396,293,300	
예비비	196,981,943,000	△30,676,531,000	166,303,312,000	0						166,303,312,000					166,303,312,000
기타	889,889,631,000	0	889,889,631,000	835,729,308,131					29,448,470	54,130,874,398			238,136,370	53,882,738,025	

구분	예산액 ㉑	예산결정추경액 ㉒	예산액 ㉓=㉑+㉒	지출액 ㉔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㉕	전항전액 ㉖=㉓+㉔+㉕			
					계 ㉖=㉑+㉒ ㉑+㉒+㉓	명시 이월 ㉗	사고 이월 ㉘	계속비 이월 ㉙		계 ㉖=㉑+㉒ +㉕+㉑+㉒	보조금 정산잔액 ㉚	예산 결감액 ㉛	계획변경동원영 역 ㉜
특별회계	10,512,120,344,000	555,588,329,264	11,070,688,673,264	9,636,667,886,378	920,653,276,519	527,786,945,528	382,866,330,990		26,494,209,427	486,873,300,940	28,306,896,408		208,686,953,130
공기업특별회계	2,022,535,226,000	8,209,862,000	2,030,745,088,000	1,638,757,193,841	245,172,341,060	91,556,057,789	153,616,283,271			146,815,553,099	5,699,753,230		38,009,678,050
수도사업특별회계	820,000,000,000	8,209,862,000	828,209,862,000	736,536,466,455	17,132,606,000	1,500,000,000	15,632,606,000			74,540,789,545			16,408,394,000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02,535,226,000	0	1,202,535,226,000	902,220,727,386	228,039,735,060	90,056,057,789	137,983,677,271			72,274,763,554	5,699,753,230		21,601,284,050
기타특별회계	8,489,585,118,000	550,358,467,264	9,039,943,585,264	7,997,910,692,537	675,480,935,458	436,210,887,740	239,270,047,719		26,494,209,427	340,057,747,841	22,607,143,178		170,677,275,080
도시철도건설사업 비특별회계	1,215,904,897,000	102,282,862,210	1,318,187,759,210	1,188,314,946,010	98,732,873,750	55,756,363,400	42,976,510,350		14,038,851,000	17,101,088,450	1,100,000,000		7,399,000,000
교통사업특별회계	1,665,835,220,000	56,515,834,580	1,722,351,054,580	1,580,496,174,866	68,238,258,130	53,744,328,360	14,493,929,770		274,190,608	73,342,430,975	6,610,604,210		11,600,913,570
광역교통시설특별 회계	336,519,286,000	40,559,877,962	377,079,163,962	208,677,183,966	141,020,613,196	108,335,738,044	32,684,875,152			27,381,366,800			13,256,480,630
주택사업특별회계	1,850,181,659,000	22,912,369,260	1,873,094,028,260	1,751,527,943,100	14,255,702,443	2,617,960,000	11,637,742,443		3,017,255,240	104,283,127,477	357,317,480		95,270,613,880
도시개발특별회계	1,377,637,900,000	314,065,116,987	1,691,703,016,987	1,233,499,976,337	347,236,075,670	215,561,193,868	131,674,881,834		7,884,742,770	103,132,220,010	13,776,609,460		43,103,084,220
의료급여기금특별 회계	1,186,326,124,000	0	1,186,326,124,000	1,186,231,762,840						94,361,160	94,361,160		
환경수질개선특별 회계	28,935,256,000	1,868,366,670	30,803,622,670	25,767,723,832	1,900,710,100	195,304,000	1,795,406,100		1,324,012,448	1,721,176,290	756,300		45,182,780
소방안전특별회계	828,244,776,000	12,154,039,595	840,398,815,595	823,394,979,566	4,006,701,970		4,006,701,970		5,157,360	12,991,976,679	667,494,568		11,237,682,111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세입①	㉡/㉠	세출②	㉢/㉡	결산상 잉여금 ㉣=(㉡-㉢)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원 년 도 채무상환 ㉧
								계 ㉥=㉠+㉡+㉢	명사이월①	사고이월②	계속비이월③	
합 계	36,547,866,094,954	38,112,038,295,242	104 %	34,335,450,755,060	94 %	3,776,607,540,182	10 %	1,136,886,127,320	630,300,289,068	506,585,838,251		2,575,399,493,310
일 반 회 계	25,477,177,421,690	27,094,753,452,080	106 %	24,698,782,868,682	97 %	2,395,970,583,398	9 %	216,232,850,801	102,533,343,540	113,699,507,261		2,141,910,022,472
특 별 회 계	11,070,688,673,264	11,017,304,843,162	100 %	9,636,667,886,378	87 %	1,380,636,956,784	12 %	920,653,276,519	527,766,945,529	392,886,330,990		433,489,470,838
공기업특별회계	2,030,745,088,000	2,037,941,090,264	100 %	1,638,757,193,841	81 %	399,183,896,423	20 %	245,172,341,060	91,556,057,768	153,616,283,271		154,011,553,363
수도사업특별회계	828,209,862,000	876,140,230,714	106 %	736,536,466,455	89 %	139,603,764,259	17 %	17,132,606,000	1,500,000,000	15,632,606,000		122,471,158,259
강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02,535,226,000	1,161,800,859,550	97 %	902,220,727,386	75 %	259,580,132,164	22 %	228,038,735,060	90,056,057,768	137,983,677,271		31,540,397,104
기타특별회계	9,039,943,585,264	8,979,363,752,898	99 %	7,997,910,692,537	88 %	981,453,060,361	11 %	675,480,935,458	436,210,887,740	239,270,047,719		279,477,915,475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318,187,759,210	1,303,222,152,772	99 %	1,188,314,946,010	90 %	114,907,206,762	9 %	98,732,873,750	55,756,363,400	42,976,510,350		2,135,482,012
교통사업특별회계	1,722,351,054,580	1,762,995,250,007	102 %	1,580,486,174,866	92 %	182,499,075,141	11 %	68,238,258,130	53,744,328,360	14,483,929,770	274,190,609	113,886,626,402
광역교통거점특별회계	377,079,163,962	382,637,318	101 %	208,677,183,966	55 %	173,630,453,352	46 %	141,020,613,196	108,335,738,044	32,684,875,152		32,609,840,156
주요사업특별회계	1,873,094,028,260	1,823,423,802,258	97 %	1,751,527,943,100	94 %	71,895,859,158	4 %	14,255,702,443	2,617,960,000	11,637,742,443	3,017,255,240	54,622,901,476
도시개발특별회계	1,691,703,016,997	1,646,934,025,582	97 %	1,233,489,978,337	73 %	413,434,047,245	24 %	347,236,075,670	215,561,193,936	131,674,881,934	7,834,742,770	58,363,228,60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86,326,124,000	1,188,930,054,752	100 %	1,186,231,762,840	100 %	2,698,291,912	0 %					2,698,291,912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803,622,670	31,498,056,472	102 %	25,767,723,832	84 %	5,730,332,640	19 %	1,990,710,100	195,304,000	1,795,406,100	1,324,012,448	2,415,610,092
소방안전특별회계	840,398,815,595	840,032,773,736	100 %	823,394,979,566	98 %	16,697,794,150	2 %	4,006,701,970		4,006,701,970	5,157,360	12,645,934,820

※ 1. 현년도 채무상환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하여야 함
 2. 다음연도 이월액(명사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로 별도 표시

3. 기금 결산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	사 용 액 ㉤	
기 금 명	계				
재정투자자금	3,740,878,968,660	446,065,080,179	1,558,000,078,130	1,111,934,997,951	4,186,944,048,839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정	2,346,810,656,827	△32,662,667,784	302,112,130,536	334,774,798,320	2,314,147,989,043
중소기업육성자금 투자계정	195,612,919,552	△25,399,048,233	214,110,560,157	239,509,608,390	170,213,871,319
식품진흥자금		7,450,315,689	7,450,315,689		7,450,315,689
기후변화자금	67,274,932,644	△1,169,469,416	2,826,417,093	3,995,886,509	66,105,463,228
사회투자자금	52,945,794,128	24,909,185,515	64,969,565,085	40,060,379,570	77,854,979,643
도로국책복구자금	12,520,688,448	△3,639,433,586	9,725,150,169	13,364,583,755	8,881,254,862
성평등자금	13,450,519,690	1,040,045,153	32,057,586,513	31,017,541,360	14,490,564,843
지역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계정	24,134,687,486	171,387,690	1,028,929,580	857,541,890	24,306,075,176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31,669,873,738	△3,839,254,347	23,495,406,784	27,334,661,131	27,830,619,391
사회복지자금 노인복지 계정	270,339,090	34,061,950	28,534,061,950	28,500,000,000	304,401,040
사회복지자금 장애인복지계정	13,997,133,808	△561,061,489	295,524,261	856,585,750	13,436,072,319
사회복지자금 자활계정	24,587,958,541	1,093,988,506	3,288,194,796	2,194,206,290	25,681,947,047
사회복지자금 주거지원계정	7,524,491,153	377,121,090	1,370,143,090	993,022,000	7,901,612,243
체육진흥자금	12,371,660,047	△4,395,074,650	11,469,950,160	15,865,024,810	7,976,585,397
감체자금	58,441,185,108	△1,338,016,709	8,007,190,551	9,345,207,260	57,103,168,399
재난관리자금 재난계정	178,407,606,941	437,946,792,375	690,355,632,215	252,408,839,840	616,354,399,316
재난관리자금 구호계정	391,846,128,227	39,162,304,324	121,316,898,074	82,154,593,750	431,008,432,551
남북교류협력자금	277,225,744,565	2,532,764,052	6,834,161,142	4,301,397,090	279,758,508,617
대외협력자금 국제협력계정	17,541,677,975	△3,340,480,583	442,341,154	3,782,821,737	14,201,197,392
지역개발자금	5,637,663,658	△1,141,942,268	2,870,890,982	4,012,833,250	4,495,721,390
도시재생자금	2,882,086,855	837,099,167	3,086,849,679	2,249,750,512	3,719,186,022
	5,725,220,179	97,162,880	102,689,180	5,526,300	5,822,383,059
		7,899,300,853	22,249,489,290	14,350,188,437	7,899,300,853

4. 재무제표**재정상태표**

2018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과 목		계	일반회계
(자산총계)		135,484,899,377,137	91,612,685,734,522
자 산	I. 유동자산	7,289,205,441,172	3,502,436,160,411
	현금및현금성자산	1,753,980,414,097	945,970,583,398
	단기금융상품	4,160,655,000,000	1,450,000,000,000
	미수세금	930,124,185,422	930,124,185,422
	미수세금대손충당금	(209,189,072,899)	(209,189,072,899)
	미수세외수입금	207,379,084,231	81,998,802,617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5,629,893,190)	(4,290,952,744)
	미수정부간이전수익	142,431,945,937	141,536,576,177
	단기대여금	102,853,434,468	1,046,420,00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131,004,345)	(10,464,200)
	재고자산	26,137,128,765	5,976,951,866
	기타유동자산	180,594,218,686	159,273,130,774
	II. 투자자산	16,282,688,329,404	4,596,619,038,341
	장기대여금	1,019,231,164,767	120,107,764,586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7,991,785,228)	(214,164,188)
	장기투자증권	15,258,483,117,065	3,848,412,374,054
	기타투자자산	12,965,832,800	628,313,063,889
	III. 일반유형자산	8,630,725,255,273	7,048,316,740,622
	토지	7,559,899,760,918	6,255,456,551,969
	입목	3,011,676,180	3,011,676,180
	건물	849,806,168,025	838,454,513,711
	건물감가상각누계액	(275,047,495,107)	(273,239,505,400)
	구축물	188,038,226,062	177,997,939,890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160,600,745,044)	(153,908,090,247)
	기계장치	9,263,365,753	7,156,305,763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7,024,921,844)	(5,140,910,039)
	차량운반구	196,892,513,742	101,837,567,755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07,867,103,655)	(82,345,678,332)
	집기비품	566,107,757,666	448,002,584,307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액	(400,482,583,876)	(335,576,108,403)
	임차개량자산	1,325,405,375	1,325,405,375
	임차개량자산감가상각누계액	(839,957,611)	(839,957,611)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08,243,188,689	66,124,445,704
	IV. 주민편의시설	24,383,436,794,934	17,218,552,925,877
	도서관	107,745,345,629	106,941,708,919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74,259,647,886)	(73,456,273,176)
	주차장	1,634,341,720,918	191,217,949,777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169,818,634,365)	(2,827,220,597)
	공원	10,658,631,621,916	9,627,701,595,847
	공원감가상각누계액	(292,226,497,009)	(269,483,428,034)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28,995,794,465,538	6,539,192,707,729	11,894,983,404,630	(3,557,756,935,282)
1,309,122,864,821	2,494,434,353,919	621,513,062,021	(638,301,000,000)
221,453,533,361	187,372,400,915	399,183,896,423	
760,000,000,000	1,950,655,000,000		
87,124,791,115	4,631	38,255,485,868	
(478,664,468)		(860,275,978)	
851,108,760	44,261,000		
235,277,000,000	354,831,014,468	150,000,000,000	(638,301,000,000)
(97,770,000)	(22,770,145)		
		20,160,176,899	
4,992,866,053	1,554,443,050	14,773,778,809	
10,568,345,800,011	4,033,954,257,924	3,225,168,410	(2,919,455,935,282)
625,027,328,600	2,573,190,798,364	8,071,110	(2,299,102,797,893)
(1,120,401,740)	(6,657,219,300)		
9,942,650,064,151	1,467,420,678,860		
1,788,809,000		3,217,097,300	(620,353,137,389)
1,550,000,580,914	877,921,202	31,530,012,535	
1,273,551,333,631		30,891,875,318	
11,148,443,325		203,210,989	
(1,675,775,826)		(132,213,881)	
4,202,256,950	497,708,790	5,340,320,432	
(1,559,636,483)	(356,435,923)	(4,776,582,391)	
268,356,740	1,401,362,450	437,340,800	
(58,508,883)	(1,391,564,190)	(433,938,732)	
93,208,112,287	1,846,833,700		
(24,020,319,262)	(1,501,106,061)		
110,958,454,440	7,142,587,880	4,131,039	
(58,140,878,990)	(6,761,465,444)	(4,131,039)	
142,118,742,985			
7,159,961,051,584	4,922,817,473		
803,636,710			
(803,374,710)			
1,443,070,623,141	53,148,000		
(166,957,753,368)	(33,660,400)		
1,030,596,310,489	333,715,580		
(22,648,668,491)	(94,400,484)		

서울특별시

과 목		계	일반회계
자 산	박물관및미술관	293,393,083,391	259,191,663,458
	박물관및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59,068,904,291)	(53,386,983,645)
	동물원	954,933,010	954,933,010
	동물원감가상각누계액	(947,672,399)	(947,672,399)
	수목원및휴양림	1,823,977,710	96,653,370
	수목원및휴양림감가상각누계액	(412,430,115)	(27,296,536)
	문화및관광시설	3,517,246,708,501	3,390,751,898,987
	문화및관광시설감가상각누계액	(137,074,321,379)	(135,390,593,606)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47,932,116,667)	(47,932,116,667)
	체육시설	1,644,716,700,576	1,608,481,882,886
	체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89,696,241,120)	(189,056,892,818)
	사회복지시설	1,536,857,789,672	1,519,335,802,522
	사회복지시설감가상각누계액	(213,726,109,224)	(213,253,279,407)
	의료시설	786,185,370,733	454,251,504,663
	의료시설감가상각누계액	(206,158,272,026)	(158,579,405,915)
	교육시설	1,073,073,482,969	933,599,329,879
	교육시설감가상각누계액	(114,818,927,803)	(114,545,544,487)
	기타주민편의시설	4,430,106,861,216	336,354,159,353
	기타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누계액	(900,482,516,742)	(48,762,252,765)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1,104,981,489,719	97,322,803,258
	V.사회기반시설	78,303,503,435,768	58,926,034,514,458
	도로	56,895,457,074,936	54,675,847,415,057
	도로사용수익권	(230,780,162,105)	(230,780,162,105)
	도시철도	4,241,028,504,540	124,710,823,685
	도시철도사용수익권	(541,656,607,848)	
	상수도시설	8,009,959,871,128	1,505,249,300
	상수도시설감가상각누계액	(3,023,926,980,169)	(396,457,471)
	수질정화시설	20,377,566,428,502	62,247,860,686
	수질정화시설감가상각누계액	(14,578,585,050,206)	(1,576,014,458)
	하천부속시설	3,515,082,215,080	3,510,873,664,601
	폐기물처리시설	104,971,320,020	104,971,320,020
	폐기물처리시설감가상각누계액	(2,355,686,519)	(2,355,686,519)
	재활용시설	258,616,716,120	258,616,716,120
	재활용시설감가상각누계액	(88,277,125,953)	(88,277,125,953)
	농수산물기반시설	157,862,415,300	157,862,415,300
	농수산물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8,391,618,567)	(8,391,618,567)
	기타사회기반시설	59,731,248,689	59,457,851,659
	기타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누계액	(28,233,928,989)	(28,074,141,887)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3,185,434,801,809	329,792,404,990
	VI.기타비유동자산	595,340,120,586	320,726,354,813
	보증금	269,483,604,600	206,787,875,960
	무형자산	105,749,231,172	65,944,336,870
	기타비유동자산	220,107,284,814	47,994,141,983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34,201,419,933			
(5,681,920,646)			
1,727,324,340			
(385,133,579)			
126,494,809,514			
(1,683,727,773)			
35,380,065,850	854,751,840		
(242,606,844)	(396,741,458)		
17,521,987,150			
(472,829,817)			
331,779,525,560	154,340,510		
(47,560,279,166)	(18,586,945)		
139,166,562,090	307,591,000		
(22,184,000)	(251,199,316)		
4,091,154,766,763	2,597,935,100		
(851,717,858,406)	(2,405,571)		
1,006,240,356,844	1,418,329,617		
8,142,605,416,215	1,644,685,830	11,233,218,819,265	
2,219,604,973,879	4,686,000		
4,116,317,680,855			
(541,656,607,848)			
91,385,550		8,008,363,236,278	
(29,793,524)		(3,023,500,729,174)	
	744,641,090	20,314,573,926,726	
	(675,200,510)	(14,576,333,835,238)	
2,637,992,229	1,570,558,250		
175,330,030	98,067,000		
(61,721,102)	(98,066,000)		
2,345,526,176,146		510,116,220,673	
265,758,751,993	3,358,671,381	5,496,342,399	
60,180,077,240	2,515,651,400		
34,702,283,632	843,019,981	4,259,590,689	
170,876,391,121		1,236,751,710	

서울특별시

과 목		계	일반회계
(부채와순자산총계)		135,484,899,377,137	91,612,685,734,522
(부채총계)		7,907,449,755,826	1,398,101,774,352
부 채	I.유동부채	1,899,768,167,826	1,333,110,549,321
	단기차입금	38,7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부채	601,919,962,460	300,000,000,000
	기타유동부채	1,259,148,205,366	1,033,110,549,321
	II.장기차입부채	3,194,967,611,550	
	장기차입금	836,894,846,550	
	지방채증권	2,358,072,765,000	
	III.기타비유동부채	2,812,713,976,450	64,991,225,031
	퇴직급여충당부채	38,319,681,661	32,500,569,396
	기타비유동부채	2,774,394,294,789	32,490,655,635
(순자산총계)		127,577,449,621,311	90,214,583,960,170
순 자산	I.고정순자산	106,338,628,972,077	82,958,841,346,767
	II.특정순자산	6,235,426,529,579	1,079,969,110,279
	III.일반순자산	15,003,394,119,655	6,175,773,503,124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28,995,794,465,538	6,539,192,707,729	11,894,983,404,630	(3,557,756,935,282)
7,590,624,758,518	1,688,898,744,293	167,228,276,556	(2,937,403,797,893)
643,665,266,016	464,456,946,400	96,836,406,089	(638,301,000,000)
38,700,000,000			
409,535,962,460	463,771,000,000	66,914,000,000	(638,301,000,000)
195,429,303,556	685,946,400	29,922,406,089	
4,204,215,611,550	1,224,441,797,893	65,413,000,000	(2,299,102,797,893)
1,846,142,846,550	1,224,441,797,893	65,413,000,000	(2,299,102,797,893)
2,358,072,765,000			
2,742,743,880,952		4,978,870,467	
2,076,993,508		3,742,118,757	
2,740,666,887,444		1,236,751,710	
21,405,169,707,020	4,850,293,963,436	11,727,755,128,074	(620,353,137,389)
12,234,817,758,335	8,288,444,486	11,136,681,422,489	
256,829,062,641	4,842,005,518,950	56,622,837,709	
8,913,522,886,044	—	534,450,867,876	(620,353,137,389)

재정운영표(기능별)

당해연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단위 : 원)

과 목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I. 사업순원가	23,555,848,874,162	7,365,873,117,778	16,189,975,756,384		16,189,975,756,384
일반공공행정	5,809,071,822,351	39,079,924,139	5,769,991,898,212		5,769,991,898,212
공공질서및안전	103,131,824,652	8,935,142,977	94,196,681,675		94,196,681,675
교육	3,543,748,762,179	720,505,980	3,543,028,256,199		3,543,028,256,199
문화및관광	609,235,422,009	216,637,940,317	392,597,481,692		392,597,481,692
환경보호	1,780,248,756,417	1,651,879,283,913	128,369,472,504		128,369,472,504
사회복지	8,513,974,551,266	4,595,421,800,002	3,918,552,751,264		3,918,552,751,264
보건	432,079,628,667	165,049,316,921	267,030,311,746		267,030,311,746
농림해양수산	20,952,265,776	6,301,723,553	14,650,542,223		14,650,542,223
산업·중소기업	207,471,635,169	25,022,193,918	182,449,441,251		182,449,441,251
수송및교통	1,930,962,895,847	500,514,890,201	1,430,448,005,646		1,430,448,005,646
국토및지역개발	602,730,748,623	155,995,725,347	446,735,023,276		446,735,023,276
과학기술	2,240,561,206	314,670,510	1,925,890,696		1,925,890,696
II. 관리운영비			7,234,631,114,343	(5,505,743,163,530)	1,728,887,950,813
1. 인건비			1,726,761,353,807		1,726,761,353,807
급여			1,286,881,793,017		1,286,881,793,017
복리후생비			321,597,544,036		321,597,544,036
기타인건비			102,501,767,027		102,501,767,027
퇴직급여			15,780,249,727		15,780,249,727
2. 경비			227,146,250,878		227,146,250,878
도서구입및인쇄비			1,846,346,894		1,846,346,894
소모품비			3,831,482,328		3,831,482,328
홍보및광고비			240,408,170		240,408,170
지급수수료			2,336,779,612		2,336,779,612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492,573,265		492,573,265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399,968,120		399,968,120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5,255,092,940		5,255,092,940
기타자산수선유지비			1,815,000		1,815,000
교육훈련비			124,911,690		124,911,690
제세공과금			11,538,131,389		11,538,131,389
보험료및공제료			1,735,964,823		1,735,964,823
임차료			1,128,479,187		1,128,479,187
출장비			13,137,198,129		13,137,198,129
연구개발비			75,240,000		75,240,000
업무추진비			5,372,691,611		5,372,691,611
행사비			256,178,320		256,178,320
위탁대행사업비			98,172,799,290		98,172,799,290
연료비			3,561,698,348		3,561,698,348
원·정수구입비			1,040,477,020		1,040,477,020
기타운영비			76,598,014,742		76,598,014,742

당해연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현재

서울특별시

(단위 : 원)

과 목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3.정부간이전비용			(128,388,746,982)		(128,388,746,982)
시도비보조금			(128,388,746,982)		(128,388,746,982)
4.민간등이전비용			5,409,112,256,640	(5,505,743,163,530)	(96,630,906,890)
민간보조금			7,116,400		7,116,400
전출금비용			5,379,740,803,060	(5,505,743,163,530)	(126,002,360,470)
기타이전비용			29,364,337,180		29,364,337,180
Ⅲ.비배분비용			1,523,711,974,962	(36,592,793,670)	1,487,119,181,292
1.운영비			147,687,431,384	(36,592,793,670)	111,094,637,714
이자비용			147,687,431,384	(36,592,793,670)	111,094,637,714
2.기타비용			1,376,024,543,578		1,376,024,543,578
자산처분손실			23,841,097,327		23,841,097,327
자산손상차손			575,706,805,419		575,706,805,419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72,933,973,817		72,933,973,817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197,858,800,821		197,858,800,821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10,456,806,586		10,456,806,586
무형자산상각비			8,752,727,671		8,752,727,671
대손상각비			446,356,092,017		446,356,092,017
기타비용			40,118,239,920		40,118,239,920
Ⅳ.비배분수익			832,940,647,672	(56,594,822,970)	776,345,824,702
1.자체조달수익			774,158,960,634	(36,592,793,670)	737,566,166,964
경상세외수익			157,595,329,949	(36,592,793,670)	121,002,536,279
임시세외수익			616,563,630,685		616,563,630,685
2.기타수익			58,781,687,038	(20,002,029,300)	38,779,657,738
전입금수익			367,809,511,000		367,809,511,000
대손충당금환입			1,274,140,451		1,274,140,451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14,069,654		14,069,654
기타비배분수익			(310,316,034,067)	(20,002,029,300)	(330,318,063,367)
Ⅴ.재정운영순원가 (Ⅰ + Ⅱ + Ⅲ - Ⅳ)			24,115,378,198,017	(5,485,741,134,230)	18,629,637,063,787
Ⅵ.일반수익			25,625,903,181,295	(5,485,741,134,230)	20,140,162,047,065
1.자체조달수익			19,658,188,333,229		19,658,188,333,229
지방세수익			19,322,379,450,180		19,322,379,450,180
경상세외수익			8,134,565,960		8,134,565,960
임시세외수익			327,674,317,089		327,674,317,089
2.정부간이전수익			429,658,337,108		429,658,337,108
지방교부세수익			194,688,359,000		194,688,359,000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22,345,160,716		22,345,160,716
기타정부간이전수익			212,624,817,392		212,624,817,392
3.기타수익			5,538,056,510,958	(5,485,741,134,230)	52,315,376,728
전입금수익			5,485,741,134,230	(5,485,741,134,230)	-
기부금수익			2,391,389,790		2,391,389,790
기타일반수익			49,923,986,938		49,923,986,938
Ⅶ.재정운영결과(Ⅴ - Ⅵ)			(1,510,524,983,278)		(1,510,524,983,278)

순자산변동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과 목	계	일반회계
I. 기초순자산	121,725,634,876,326	90,095,945,250,480
II. 재정부영결과(비용-수익)	(1,510,524,983,278)	272,961,387,344
III. 순자산의 증가	5,460,027,387,601	600,345,607,548
1. 전기오류수정이익		
2.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이익	4,344,246,497,110	
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38,484,036,771	24,972,691,187
4.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368,997,103,635	317,869,971,696
5. 기타순자산의증가	708,299,750,085	257,502,944,665
IV. 순자산의 감소	1,118,737,625,894	208,745,510,514
1. 전기오류수정손실		
2.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3. 재산이관·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38,484,036,771	104,948,670
4.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192,431,158,891	192,397,490,051
5. 기타순자산의감소	887,822,430,232	16,243,071,793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27,577,449,621,311	90,214,583,960,170

(단위 : 원)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내부거래
20,874,839,732,238	4,363,069,576,419	6,791,178,346,808	(399,398,029,619)
(1,180,821,396,769)	(567,972,732,396)	(34,692,241,457)	
161,675,917,289	17,076,430,725	4,901,884,539,809	(220,955,107,770)
		4,344,246,497,110	
3,431,276,484	10,080,069,100		
51,127,131,939			
107,117,508,866	6,996,361,625	557,638,042,699	(220,955,107,770)
812,167,339,276	97,824,776,104		
28,308,088,101	10,071,000,000		
22,961,777	10,707,063		
783,836,289,398	87,743,069,041		
21,405,169,707,020	4,850,293,963,436	11,727,755,128,074	(620,353,137,389)

5. 성과보고서

(단위 : 개)

연번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초과달성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수	달성수	미달성수
계		212	421	51	308	62
1	효과적 언론 홍보를 통한 시민의 정책 수혜 극대화	1	2	0	2	0
2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6	13	1	11	1
3	시민과의 소통강화로 참여시정 구현	5	13	3	9	1
4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7	13	2	10	1
5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	3	6	1	5	0
6	「안전특별시 서울」 구현 위한 "비상대비·민방위정책 기획 · 추진"	1	2	0	2	0
7	데이터 기반 디지털서울 구현	7	12	2	10	0
8	민생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1	3	1	2	0
9	체계적 정책조정 및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	12	22	4	16	2
10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로 함께 잘사는 글로벌 경제도시 실현	13	21	3	14	4
11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	8	15	1	10	4
12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및 사람 중심 보행 친화도시 조성	10	20	2	13	5
13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만들기	12	15	2	11	2
14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 기후환경 선도도시 서울	8	14	3	6	5
15	소통·공감의 행정지원으로 시민 중심 서울 구현	9	15	2	10	3
16	체계적 재무관리와 안정적 세입 확보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	7	11	2	6	3
17	전 생애에 걸친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 보장	4	11	2	6	3
18	세계인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관광체육도시 서울!	6	11	1	9	1
19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격차 해소를 통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9	30	1	24	5
20	소통과 협력을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1	2	1	1	0

연번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초과달성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수	달성수	미달성수
21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2	4	0	3	1
22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	10	11	0	10	1
23	함께 성장 체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11	18	0	16	2
24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5	6	1	4	1
25	함께하는 주거공동체, 삶이 행복한 서울	5	9	1	7	1
26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푸른도시. 서울 실현	11	20	3	16	1
27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물환경 복지도시 서울	5	5	0	3	2
28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 추진	5	9	1	7	1
29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	9	21	1	18	2
30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완벽한 건설	5	7	0	7	0
31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	2	6	2	2	2
32	함께서울을 만들어 갈 전문인재 양성	1	4	1	3	0
33	서울의 장소와 역사와 기억을 저장하는 서울역사 박물관	1	5	0	5	0
34	수준높은 미술감상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이 즐겨찾는 열린 미술관	1	7	0	5	2
35	시민 소통의 중심매체로서 시민이 주인되는 수도권 대표 공익방송 구현	1	6	2	3	1
36	의회운영의 내실화로 의회 위상 제고 및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3	23	4	17	2
37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 구현	4	7	1	4	2
38	시민권익구제 강화	1	2	0	1	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7-62일원 『도시관리계획(광진구 구의동 587-6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19. 04. 04.) 심의 및 2109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2019. 06. 21.) 보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I.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광진구 구의동 587-62 일원
- 면 적 : 648.0㎡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2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광진구 구의동 587-6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587-62, -99	-	증) 648.0	648.0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비 고
신 설	광진구 구의동 587-6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648.0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신설)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648.0	-	648.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48.0	감) 648.0	-	-	
	준주거지역	-	증) 648.0	648.0	100.0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광진구 구의동 587-62일원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648.0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	-	• 광진구 구의동 587-62일원	648.0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계획내용	결정사유
-	• 획지단위개발 지정 - 광진구 구의동 587-62, -99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획지단위개발 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지정용도(1)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1)} , 근린생활시설	• 광진구 구의동 587-6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가)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주1)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를 결정(신설)하고자 함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광진구 구의동587-6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500%) 이하 ^{주2)}	
최고높이	• 52m 이하	

주2)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함

■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사유서

구 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500%) 이하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함
	최고높이	52m 이하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코자 함

다. 용적률 적용(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5% 이상 ^{주3)}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147.30㎡(22.73%) ≥ 146.68㎡(22.64%)	기본 용적률 4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광진구 구의동 587-62번 지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추가공공기여율 - 추가용적률 연면적의 50% 이상을 부지면적 으로 환산	- 기본공공기여 - 648.0㎡ × 15% = 97.20㎡(15.00%) - 추가공공기여 - 49.48㎡(7.64%)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비주거비율 14.25%(435.66㎡) - 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주거 : 비주거 = 2,621.58㎡(85.75%) : 435.66㎡(14.25%) - 비주거비율 15% 이하(용적률 기준)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26.60% : 73.40% (18세대) (52세대)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6.26㎡, 30.16㎡, 30.50㎡, 32.50㎡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6.26㎡, 17.90㎡, 30.16㎡, 30.35㎡, 32.50㎡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상 3층에 134.72㎡ 계획		

주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준용

※ 비주거 비율은 용적률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의 형태 및 고저차 등의 사유와 상업지역에서 지상 2층까지 비주거 비율 10%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위치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상기 계획사항은 관련법 및 지침내에서 건축인허가시 변동될 수 있음.

라. 공공기여계획

구 분	기본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 고
제2종 일반주거 지역 → 준주거 지역	400% 이하	법정 용적률 (500%) 이하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5% 이상 - 97.20㎡ (15.00%) - 추가공공기여율 : 추가용적률 연면적의 50% 이상을 부지면적으로 환산 - 49.48㎡ (7.64%) - 총공공기여율 - 97.20㎡ + 49.48㎡ = 146.68㎡ (22.64%)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147.30㎡ (22.73%) ≥ 146.68㎡ (22.64%)	광진구 구의동 587-62 일원 역세권 청년주 택에 한함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마.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대상		건축 한계선	벽면 한계선	비 고
-	간선도로변	구의강변로	3m	-	• 보도형 조성(간선부 보행공간 확보)

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주차출입구	• 간선부 구의강변로(23m)변 주차출입구 설치	

III. 관계도면 : 붙임 참고(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포함) 참고

V.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02-2133-6296)와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5층 도시계획과(☎02-450-7682)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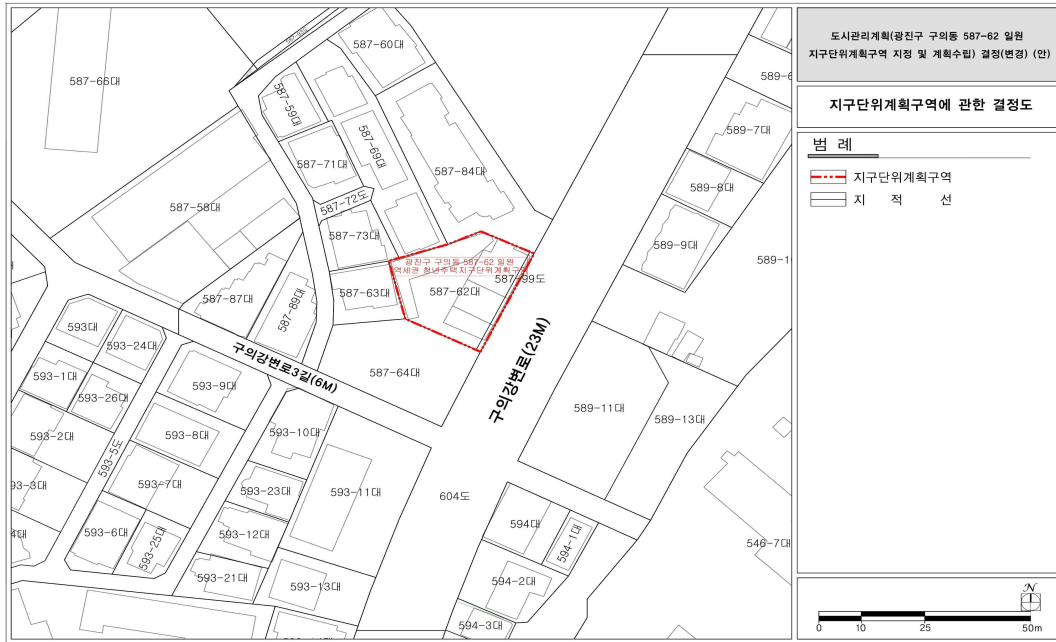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VI.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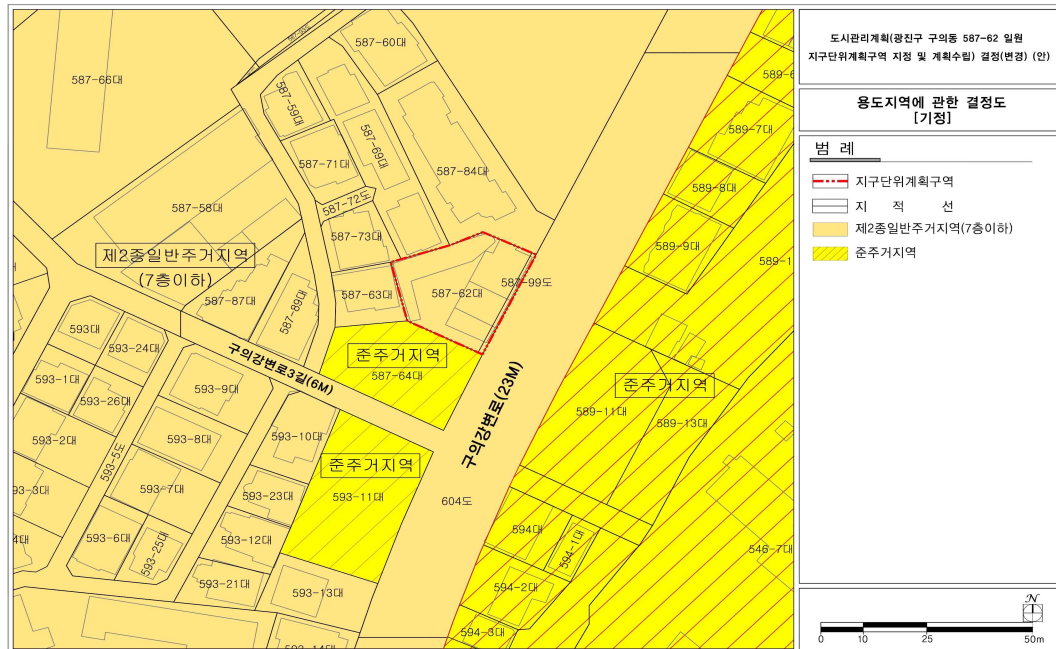
■ 첨부 : 결정도면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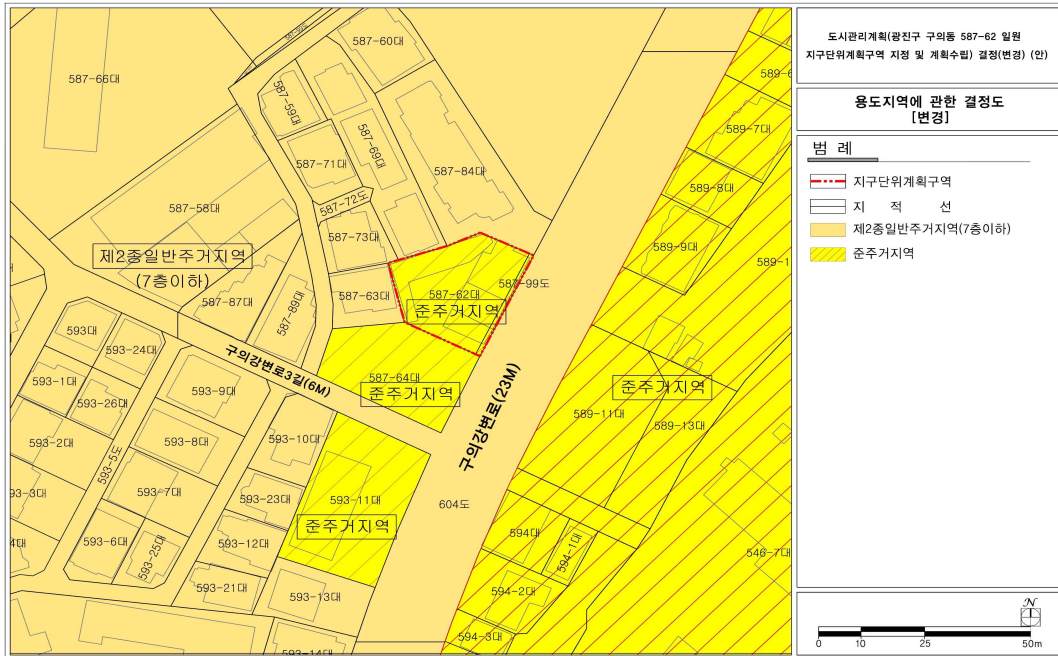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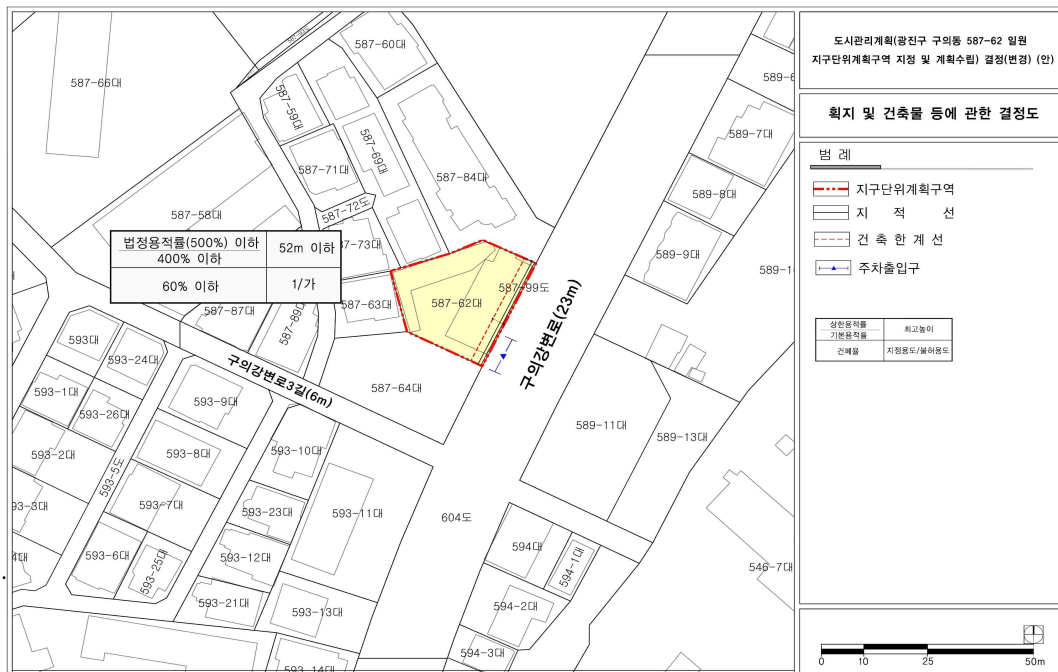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5호

행정용어 순화어 고시

「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행정용어 순화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용어 순화어

연번	바뀌야 할 말 (순화대상어)	뜻 또는 활용 예	권하는 말 (행정순화어)
1	고소 작업대	뜻: 높은 곳의 작업대 예: 고소 작업대에서 일한다.	높은 작업대
2	유보(留保)하다	뜻: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미루어 두다. 예: 파업을 유보하다.	미루다, 미루어 두다
3	해소(解消)하다	뜻: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림. 예: 대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다.	없애다, 풀다
4	금일(今日)	뜻: 오늘 예: 금일 중으로 꼭 방문하시오.	오늘
5	시민옴부즈만	뜻: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예: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관
6	미혼모	뜻: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예: 미혼모 지원	비혼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02-2133-644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6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07-177호(2007.06.07.)로 변경지정,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0-449호(2010.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1-126호(2011.05.19.), 제2011-187호(2011.07.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133호(2012.05.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195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255호(2012.09.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282호(2012.10.25.), 제2013-76호(2013.03.14.), 제2013-112호(2013.04.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68호(2013.05.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84호(2013.06.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290호(2013.09.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6호(2014.01.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55호(2014.0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97호(2014. 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17호(2014.06.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99호(2014.08.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445호(2014.12.18.)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26호(2016.04.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6-134호(2016.05.04.), 제2016-165호(2016.06.16)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2017-28호(2017.01.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7-97호(2017.03.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58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8-59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9-26호(2019.01.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143호(2019.05.09.)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동 증산동	792,888.2	-	792,888.2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43호(2019.5.9.) 촉진지구 면적 오기정정

- 정정내용 - 기정: 792,871.2㎡ → 792,888.2㎡, 변경후: 792,871.2㎡ → 792,888.2㎡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합 계		792,888.2	-	792,888.2	100.0	
주거 용지	소 계	546,576.9	-	546,576.9	68.9	
	공동주택	476,110.5	-	476,110.5	60.1	
	상업용지	13,685.0	-	13,685.0	1.7	
	복합용지	34,094.0	-	34,094.0	4.3	
	주택용지	145.0	-	145.0	0.1	
	유 치 원	2,273.8	-	2,273.8	0.3	
	종교용지	6,915.1	-	6,915.1	0.9	
존 치		13,315.5	-	13,315.5	1.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46,311.3	-	246,311.3	31.1	
	도 로	110,121.9	-	110,121.9	13.9	
	보행자도로	5,589.4	-	5,589.4	0.7	
	공 원	35,046.8	-	35,046.8	4.4	
	녹 지	23,783.6	-	23,783.6	3.0	
	광 장	1,120.0	-	1,120.0	0.2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	수색~향동
	변 전 소	542.0	-	542.0	0.1	건축물내부(지하)에 설치
	공공청사	3,967.0	-	3,967.0	0.5	
	학 교	56,477.3	-	56,477.3	7.1	
	사회복지시설	4,221.3	-	4,221.3	0.5	
	도 서 관	3,776.0	-	3,776.0	0.5	
	문화시설	1,666.0	-	1,666.0	0.2	
	체육시설	(4,023.0)	-	(4,023.0)	(0.5)	복합용지내 복합화

※ 【 】 는 중복결정 또는 지중시설임

※ () 는 복합용지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호(2019.1.17.) 광장 면적 오기정정

- 정정내용 - 기정: 1,077.0㎡(변경없음), 변경후: 1,020.0㎡ → 1,120.0㎡

2) 인구주택수용계획 : 13,637호 / 37,168인(변경)

구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575	증) 62	13,637	37,001	증)167	37,168	2.7인/세대 (2020서울시도시 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촉진구역	소계	12,795	증) 62	12,857	34,548	증)167	34,715	
	40㎡이하	1,161	감)102	1,059	3,135	감)276	2,859	
	40~50㎡	962	증) 23	985	2,598	증) 62	2,660	
	50~60㎡	3,358	증)142	3,500	9,066	증)384	9,450	
	60~85㎡	5,849	증)149	5,998	15,793	증)402	16,195	
	85㎡초과	1,465	감)150	1,315	3,956	감)405	3,551	
준치관리 구역	공동주택	533	-	533	1,440	-	1,440	2.7인/세대
준치지역		247	-	247	1,013	-	1,013	-

3)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가) 교육시설 : 변경없음
- 나)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다) 공공청사 : 변경없음
-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 마) 문화시설 : 변경없음
- 바) 도서관 :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 가) 주택재개발사업부문 : 변경없음
- 나)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 가) 수색1~13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 나) 증산2~5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 다) 수색1준치관리구역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 가) 수색1~13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 나) 증산2~5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 다) 수색1준치관리구역 :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가) 축진지구 기반시설 : 변경없음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구분	구역명	전용면적 40㎡	전용면적 40~50㎡	전용면적 50~60㎡	전용면적 85㎡	계
기정	수색1재정비축진구역	—	—	—	—	
기정	수색2재정비축진구역	—	—	—	—	
기정	수색3재정비축진구역	—	—	—	—	
기정	수색4재정비축진구역	84	84	35		203
기정	수색5재정비축진구역	—	—	—	—	
기정	수색6재정비축진구역	88	97	23		208
기정	수색7재정비축진구역	49	49	18		116
기정	수색8재정비축진구역	40	40	19		99
기정	수색9재정비축진구역	57	54	20	4	135
기정	수색11재정비축진구역	—	—	—	—	
기정	수색12재정비축진구역	—	—	—	—	
기정	수색13재정비축진구역	106	87	85	—	278
변경	수색13재정비축진구역	139	111	46	—	296
기정	증산2재정비축진구역	114	99	24	—	237
기정	증산4재정비축진구역	228	228	139	—	595
기정	증산5재정비축진구역	120	121	51	—	292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축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수색1~12 재정비축진구역 : 변경없음

나) 수색13재정비축진구역 (변경)

-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정비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① 도로 : 변경없음
 ② 공원 : 변경없음
 ③ 녹지 : 변경없음
 ④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⑤ 문화시설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②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수색13 재정비 촉진구역	69,681	계	55,401						
			13-1	55,090	수색동 341-6	132,216.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40% 이하	14.8/20 (65m이하)
			13-3	311	수색동 354-2	-	근린생활시설	관련 법규에 의함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계		1,402		증) 62		1,464		
		전용면적 40㎡이하		321		감)102		219		
		전용면적 40~50㎡		154		증) 23		177		
		전용면적 50~60㎡		330		증)142		472		
		전용면적 60~85㎡		349		증)149		498		
		전용면적 85㎡초과		248		감)150		98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적용기준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2호 기준준수)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1항1호 기준준수)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는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하여야 함.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6m								
기정	대지내 공지	●공동주택 대지 중앙부 폭 33.5m 건축한계선 부지를 공개공지로 조성(폐지되는 연결녹지 부지)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부지 면적(㎡)	연면적(㎡)			세대규모	세대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변경	55,090	18,449.33	증)1,478.47	19,927.80	계	278	증)18	296
					전용면적 40㎡이하	106	증)33	139
					전용면적 40~50㎡	87	증)24	111
					전용면적 50~60㎡	85	감)36	46
					전용면적 85㎡이하	—	—	—
	적용 기준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40%이상을 건설할 것 -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초과 40%이하로 건립						

다) 중산2~중산5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라) 수색1 존치관리구역 : 변경없음

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 변경없음
- 2) 용도지역 결정 : 변경없음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 5) 수색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 변경없음

바.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세부사항은 「수색·중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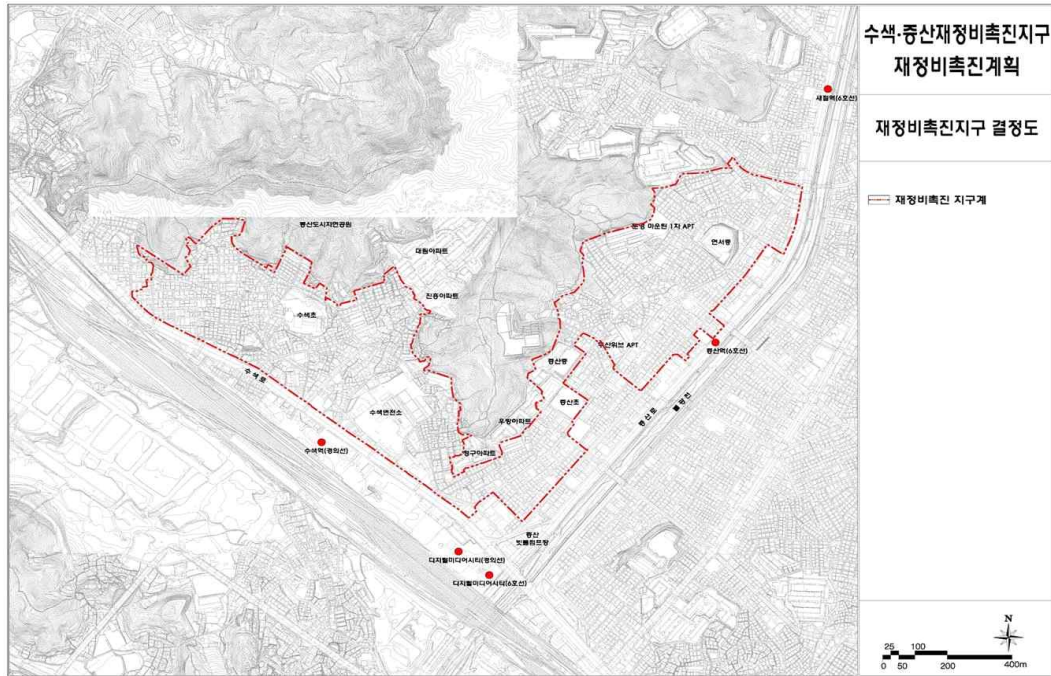
사.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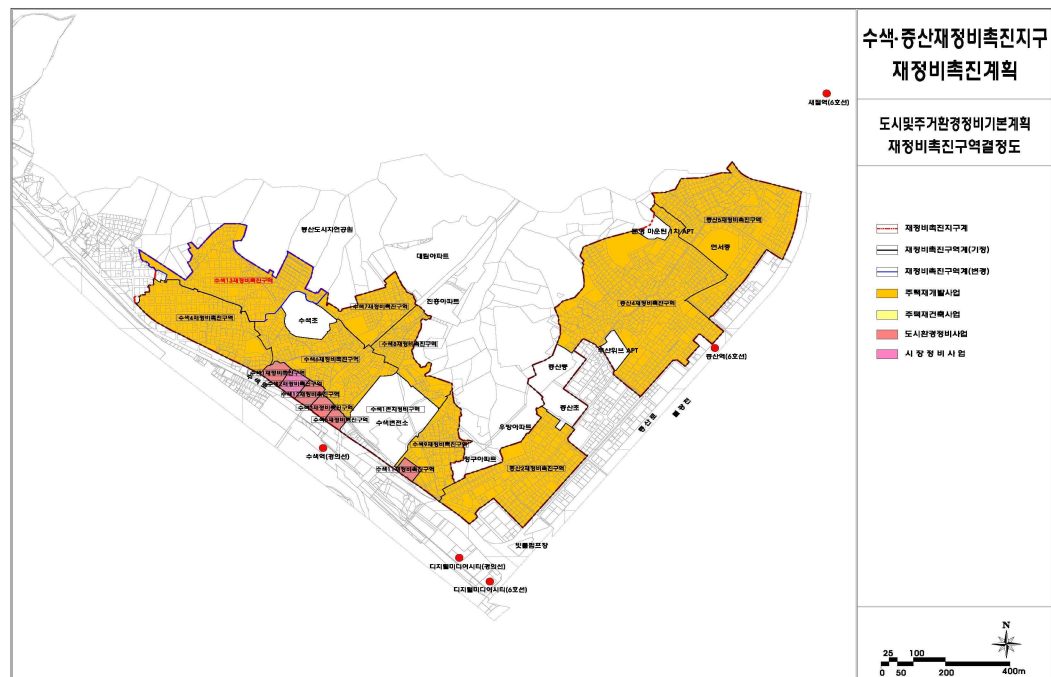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아.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8)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1-7425)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수색·중산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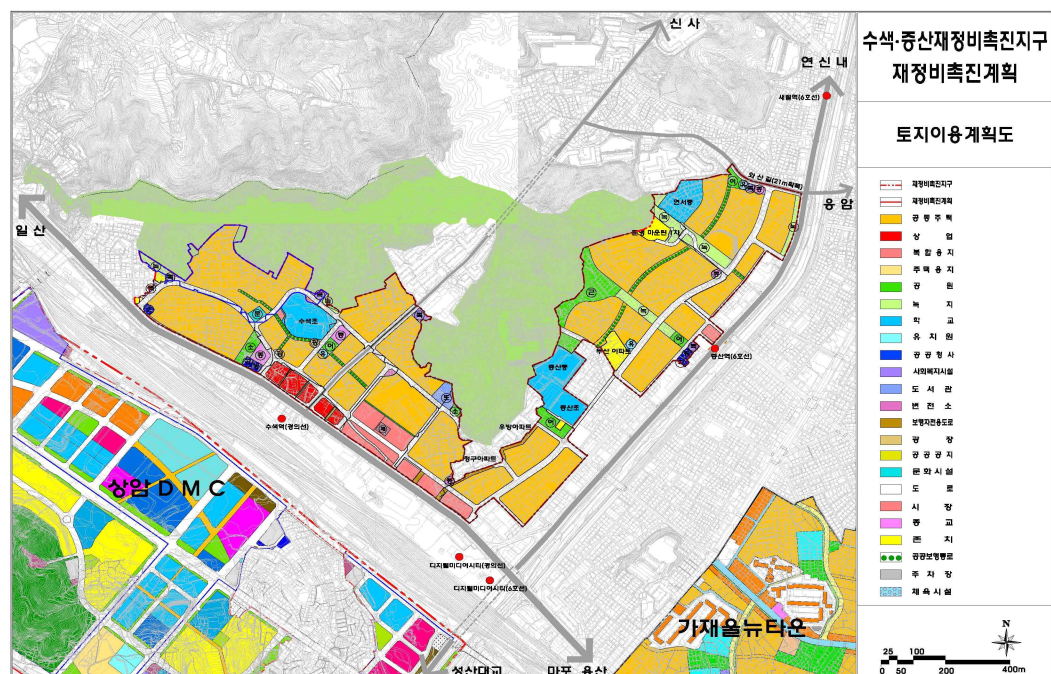
■ 수색·중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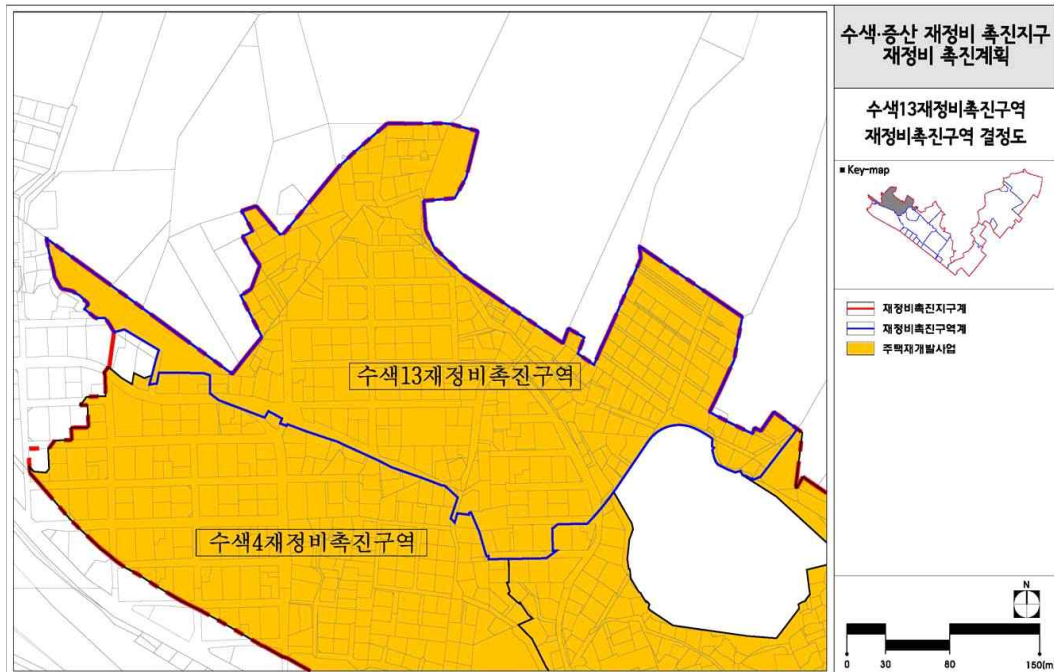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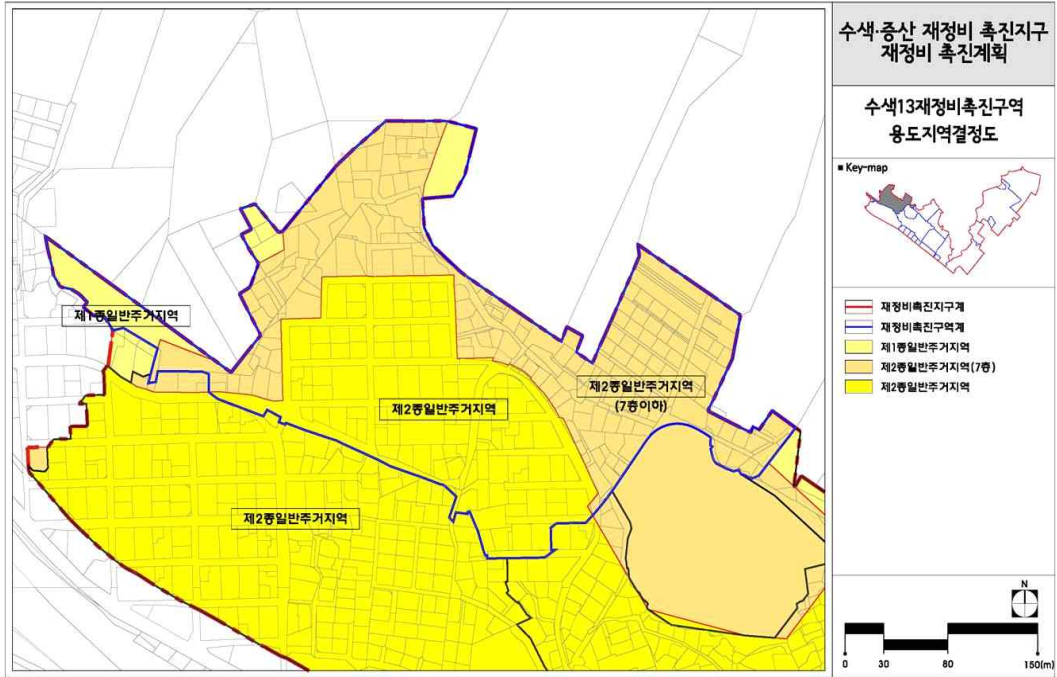
■ 수색·중산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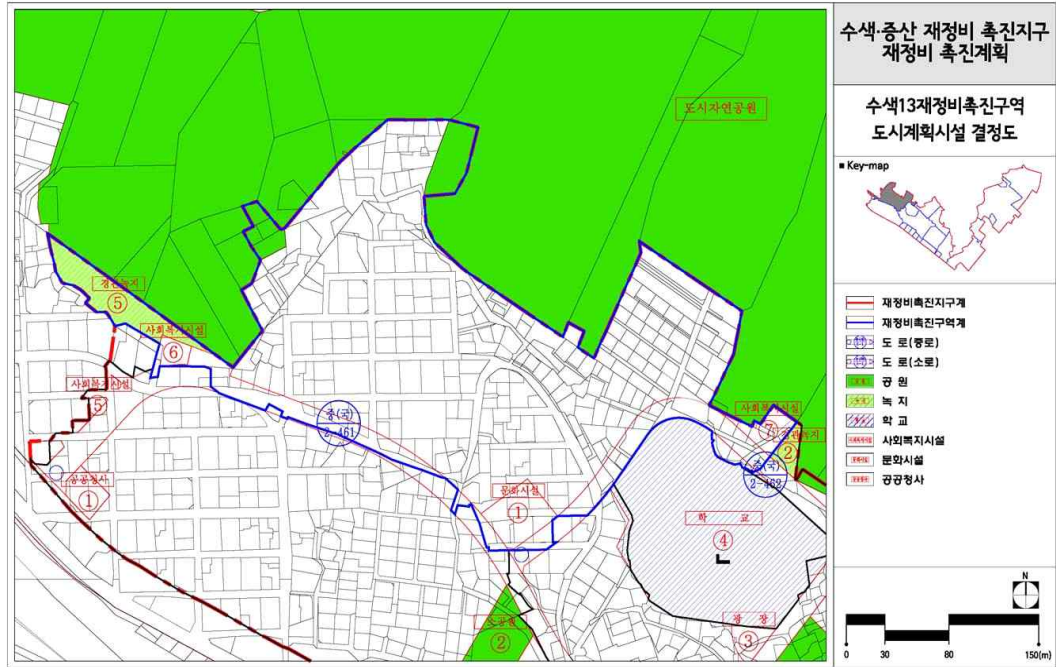
■ 수색13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 수색13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없음



■ 수색1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7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990-138호(1990.3.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245호(2000.8.25.)로 변경 승인되었고, 건설부 고시 제521호(1991.9.3.)로 택지개발계획 승인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245호(2000.8.25.)로 변경 승인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91호(1991.12.30.)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되었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20호(2001.7.4.)로 변경 승인된 도시계획시설 관련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등 규정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418호(2019.5.23.)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88조, 제9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87	19~63	구획 도로	430	공릉동 284-2전	목동 16-2답	자동차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91-391호 (' 91.12.30)	총기점:성산동56-1 총종점:목동16-2 총연장:19,770m
변경	대로	3	187	19~63	구획 도로	430	공릉동 284-2전	목동 16-2답	자동차 전용도로	-	서울시고시 제91-391호 (' 91.12.30)	총기점:성산동56-1 총종점:목동16-2 총연장:19,770m (주차장)증복:900㎡ 일부폭원변경

가-1) 도로(변경)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187	대로 3-187	변경 : 일부구간폭원변경	-연결램프 추가 설치에 따른 변경

2) 공간시설

가) 광장(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광 장	교통광장	신내동 639번지 일원	38,606.1	증)1,644	40,250.1	서울시고시 제91-391호 (' 91.12.30)	(녹지)중복:1,644㎡

가-1) 광장(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광 장	광장변경 : 당초: 38,606.1㎡ →변경: 40,250.1㎡ 증) 1,644㎡	-연결램프 설치에 따른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공간시설중복 도시계획시설 내역서

가)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복면적	중복(%)		
변경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목동 28번지 일원	6,115.2	900	14.7	서울시고시 제91-391호 (' 91.12.30)	(도로)중복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목동, 신내동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화랑로 진입램프 : 폭 5.0m, 연장 640.8m
 - 화랑로 진출램프 : 폭 5.0m, 연장 838.5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 조서(별첨)
- 7) 사업계획서 및 관련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 8) 위치도



다. 지형도면 : 별첨

라. 열람 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10층, ☎02-2133-8077)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2층, ☎02-3708-2556)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용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사업의 명칭 :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화랑로 진출입)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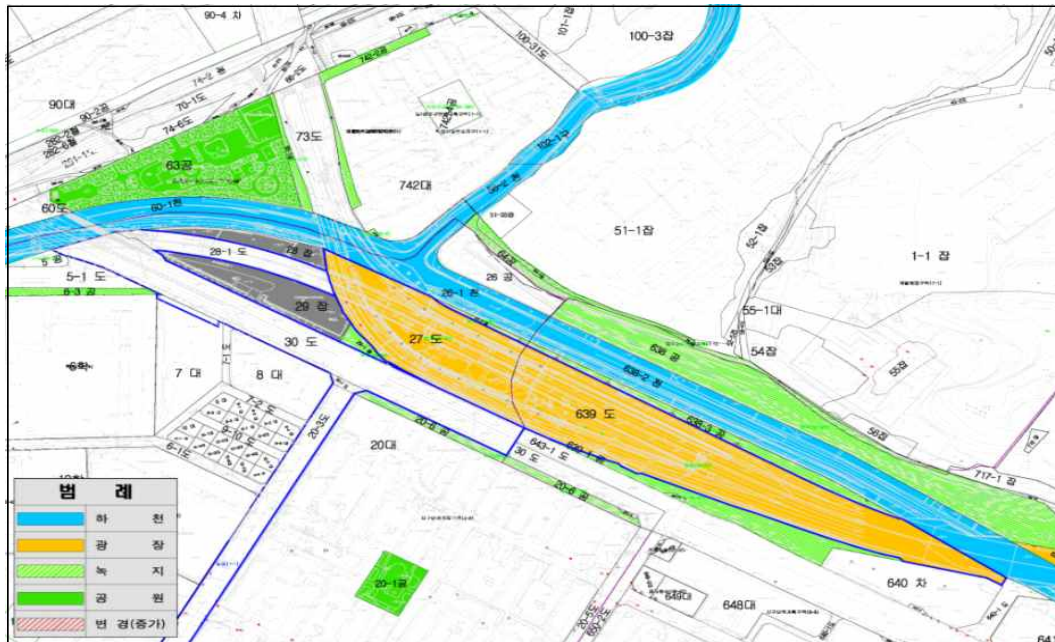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노원구 공릉동	73	도	4,906.2	1,854.0	공	서울특별시				
2	노원구 공릉동	60-1	천	9,122.3	644.0	공	서울특별시 노원구				
3	중랑구 묵동	26-1	천	10,514.5	1,494.0	공	서울특별시 중랑구				
4	중랑구 묵동	28-1	도	3,120.3	204.0	공	서울특별시				
5	중랑구 묵동	28	잡	1,723.0	733.0	공	서울특별시				
6	중랑구 묵동	27	도	11,618.6	9,989.0	공	서울특별시				
7	중랑구 묵동	27-1	공	296.9	296.9	공	서울특별시 중랑구				
8	중랑구 묵동	29	잡	4,392.2	166.0	공	서울특별시				
9	중랑구 신내동	639	도	20,934.3	3,445.0	공	서울특별시				
10	중랑구 신내동	638-3	공	2,450.9	985.0	공	서울특별시 중랑구				
11	중랑구 신내동	638-2	천	16,038.1	351.0	공	서울특별시 중랑구				
12	중랑구 신내동	639-1	공	3,381.3	342.0	공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축건축물 및 지장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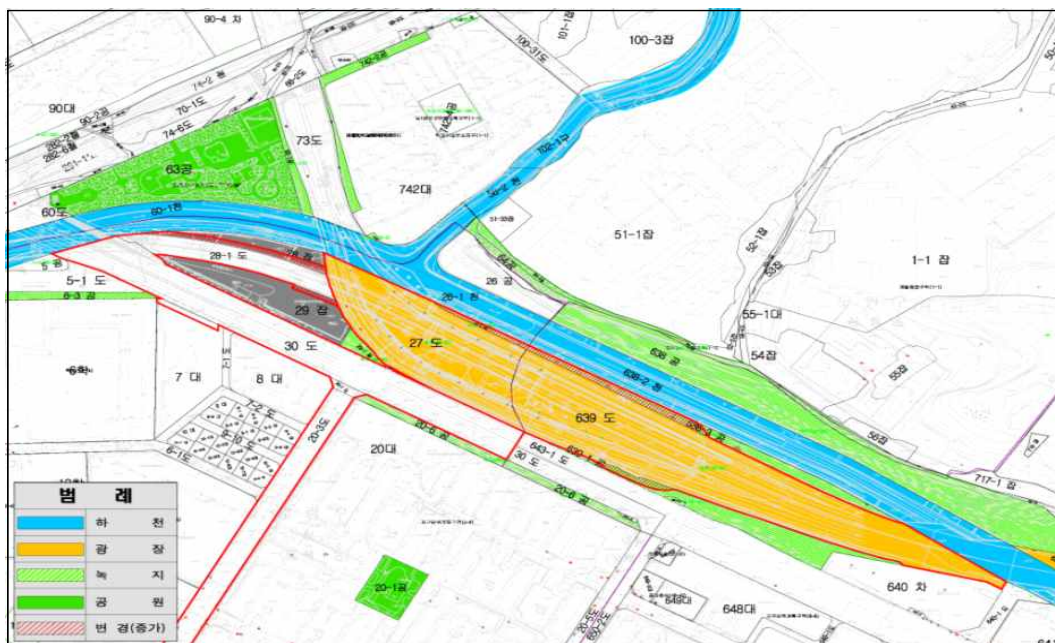
구 분	콘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물탱크	야적장	한전주	체신주	가로등	맨홀	기타
수 량	5동	1동	1개	1식	-	-	17본	6개소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지형도면

○ 당초



○ 변경



※ 참고용으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18호

2019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38,749,512,206	600,000,000
일 반 회 계		26,811,627,249	500,000,000
특 별 회 계		11,937,884,957	10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1,951,024,398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907,700,00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43,324,398	50,000,000
	기타특별회계	9,986,860,559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50,996,333	
	(4) 교통사업특별회계	1,450,758,485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32,144,576	
	(6) 주택사업특별회계	2,379,363,190	
	(7) 도시개발특별회계	2,420,811,980	
	(8) 균형발전특별회계	109,019,259	
	(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51,856,862	
	(1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725,519	
	(11) 소방안전특별회계	861,184,355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46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2. 예정된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명단 별첨)
 -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정지 60일 (명단 별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증서 미제출 등)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8월 2일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 택시물류과
 - 담 당 자 : 박정우 (02-2133-2338)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 .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국제물류주산업 등록취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1371	큐브라인콘솔리데이션(주)	서울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동, 쌍림빌딩) 3층	2018-05-15
2	1672	아시안림커머스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4 (영등포동1가) 304호(민경빌딩)	2018-07-26
3	3599	주식회사 온세미해운항공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5길 44, 304-2호 (등촌동, 청림오피스텔)	2018-08-18
4	4003	(주)케이쓰리로직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69 (연남동) 401호	2018-05-02
5	4174	디엠유해운 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신문로1가, 광화문오 피시아빌딩) 1110호	2018-05-30
6	4343	주식회사 씨에이엘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마포동, 한신빌딩) 1403호	2018-07-01
7	4558	에스케이엠로지스틱스(주)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내수동) 제3층 제오피스텔328호	2018-06-03
8	4620	(주)케이비제이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마곡동, 마곡나루 역프라임타워2) 1201호	2018-05-11
9	4666	(주)지지피에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가산동, 우림 라이온스밸리) 비동 301호	2018-08-11
10	4745	(주)청와국제물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가산동) 16층, 1605호	2018-08-04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업체
(행정처분내역 : 국제물류주산업 사업정지 60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주소	보험 만료
1	2416	(주)엔이에스코리아	서울시마포구어울마당로5길35 (서교동)	2018-09-09
2	3175	주식회사 자이온쉬핑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65 (망원동, 망원 양경회관) 6층, 602호	2018-10-28
3	3369	주식회사 성진해운	서울시성북구아리랑로7 (동소문동6가)	2018-11-30
4	3873	주식회사 인터링크로지스 텍스엔트랜스포테이션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길 6 (신사동) 1층 108호	2018-09-12
5	4058	주식회사 엠티쿼터코퍼레이션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2길 34 (합정동) 302호	2018-11-27
6	4243	(주)원원글로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38 (중림동, 대우디오센터) 311호	2018-11-28
7	4357	(주)투데이아아앤디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63 (방화동) 4층	2018-09-19
8	4366	우리글로지넷(주)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1513호	2018-09-09
9	4430	지피에스국제운송(주)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마포동, 강변한신코아빌딩) 11층 1116호	2018-10-19
10	4506	(주)에스앤에스오션	서울시 중구 다동길 5 (무교동, 광일빌딩) 802호	2018-09-05
11	4546	(주)씨에스엠로직스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길 22 (신설동) 302호	2018-12-14
12	4712	오코토버씨앤에어(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3길 18 (대치동, 동현빌딩) 102호	2018-09-2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4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을 추진하고자 하나, 사업장 부존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7.04. ~ 2019.07.18. (15일간)
3. 공고대상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역	행정처분	비고
㈜후너스	이*훈 조*현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8 후너스 강남타워	- 석유판매업 무단폐업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 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동아석유 (주)	이*우	서울 성북구 종암동 3-545	- 석유판매업 무단폐업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 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이시스 트리뷰션	김*수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2	- 석유판매업 무단폐업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 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뉴오일뱅크 주식회사	이*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9	- 석유판매업 무단폐업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 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폴라리 피티에스	김*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82-7, 603호(진조하우스)	- 석유판매업 무단폐업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 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4항제4호 및 제6호

5. 안내사항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상기 처분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711, FAX 02-2133-1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66호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서초구 우면동 141번지 품질시험소 별관부지 신축사업 -

1. 품질시험소 별관부지(서초구 우면동 141번지) 도시관리계획(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시청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 02-2133-8477)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20,938	증) 5,075	326,013	연구시설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11,949	감) 5,075	1,106,874	연구시설

-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구 분	위치	면적(㎡)	기준/ 허용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 고
기 정	우면동141	5,971.8	40%이하/ 50%이하	20%이하	15m이하	연구시설
변 경	우면동141	5,075	250%이하/ 250%이하	50%이하	35m이하	연구시설

※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896.8㎡편입 예정

※ 기타사항 게재 생략 :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와 같음).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67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 작성(경미한 사항 변경) 열람 공고

건설부고시 제84호(1983.03.14.)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650호(1983.12.3.)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경미한사항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36 외119필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경미한사항변경)
3. 사업의 내용 : 슬러지건조시설 예비품 보관창고 증축공사
 - 규모(증축) : 지상1층, 연면적 121.5㎡
 - 구조 및 용도 : 철골조(샌드위치판넬조), 자원순환관련시설(부속창고)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소장
5. 사업착수예정일 : 2019년 7월
6. 사업준공예정일 : 공사착수일로부터 2.5개월
7. 열람기간 : 2019. 7. 4. ~ 2019. 7. 18.
8.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관리과 ☎ 02-2211-2524)
9.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고-310호(1987.07.0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잔여구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하고자, 같은 법 제90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국회대로 75(대진목재) ~ 경인 제2지하차도 BOX시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잔여구간) 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1) 전 체 : 왕복4차로, 연장1,220m (지하차도995m)
- 2) 잔여구간 : 왕복4차로, 연장440m (지하차도 44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조서]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조서]

아. 열람기간 및 장소

- 1) 열람일시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02-3708-8765)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양천구 신월동	862	도	10,163.1	5,121	서울특별시					
2	양천구 신월동	863	도	7,443.6	1,471	서울특별시					
3	강서구 화곡동	951-8	도	3,490.6	2,055	서울특별시					
4	강서구 화곡동	947-3	도	5,932.6	103	강서구					
5	강서구 화곡동	951-7	도	3,539.8	3,366	서울특별시					
6	강서구 화곡동	951-6	도	3,490.6	312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74호

2019년도 제8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8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가. 심의일시: 2019. 6. 20.(목) 14:00 ~ 18:00

나. 심의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총 24건 35작품(조각 32작품, 회화 2작품, 미디어아트 1작품)

라. 심의결과: 승인 10작품, 부결 25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8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19년 제8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권 고 사 항
				승인	부결	
1	강서구 마곡지구 C12-3,4	조각	아침의 시(詩)-Ⅶ	○		
2	구로구 향동 100-5번지일원 중흥 S 클래스	조각	고향		○	
3-1	금천구 독산동 1007-19번지 (독산 2-1 특별계획구역) e편한세상 더 타워	조각	Walking stones (걷는 돌)	○		
3-2		조각	"물의 정원"		○	
4-1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Y22 개발사업	조각	은홍의 바이올린	○		
4-2		조각	모닥불	○		
4-3		회화	Secret Garden #312 SecretGarden #305	○		
4-4		회화	Double Ends, Constellation (virgo)	○		
5	강서마곡도시개발 구역 C11-3 블록	조각	바이탈리티· Vitality		○	
6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17 한성 아펠시티 오피스텔	조각	maiden voyage (처녀항해)		○	
7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일반상업 용지5-1-1-블록 북위례 세계로병원	조각	하모니 (Harmony) 2019	○		

2019년 제8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19년 제8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권 고 사 항
				승인	부결	
8-1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일대 고덕 아르테온	조각	balance tree		○	
8-2		조각	HARMONY		○	
8-3		조각	Flying Horse		○	
8-4		조각	Top spinning		○	
9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55외 6필지 H TOWER	조각	융합 1903 (Fusion1903)		○	
10	도봉구 방학동 707-14외1필지 방학역 모비우스 스퀘어	조각	행복을 향한 비행		○	
11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A1-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각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	
12	마포구 상암동 DMC2-2블록 (상암동1650)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신사옥	조각	Station		○	
13	광진구 자양동 2-2외 8필지 건대입구역 지구 3-2-A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조각	LOVE		○	

2019년 제8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19년 제8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권 고 사 항
				승인	부결	
14	강서구 마곡지구 C13-7,8,15,16 블록 마곡 파인스퀘어	조각	스위트 피크닉· Sweet Picnic		○	
15	노원구 상계동 85-33번지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조각	수락산, 바람이 닿다.		○	
16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원 NINE ONE Hannam	미디어 아트	박연폭포	○		
17-1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조각	빛으로 다시 피어난 꽃		○	
17-2	가재울 뉴타운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각	形(형)·積(적)- Reflection	○		
18	강서구 화곡동 998-5호 외 6필지 강서 크라운 펠리스	조각	From The Form	○		
19	강남구 언주로 615 논현 아이파크	조각	기운상승 (氣運上昇)		○	
20-1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일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조각	꿈을 꾸는 보석의정원- Dreaming gemstone garden		○	
20-2		조각	ECLIPSE		○	
20-3		조각	Flower in a vase		○	

2019년 제8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Gud/Committee_guide_list.jsp#list/1) 홈페이지 내 '2019년 제8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결과'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권 고 사 항
				승인	부결	
21	성동구 성수동 1가 656-335번지 서울숲 문화복합시설	조각	원심림		○	
22	강서구 화곡동 1111외1필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조각	리뉴(Renew) - 빛의 공존		○	
23	은평구 응암동 455-25호 일대 백련산 해모로	조각	러브 송 (Love Song)		○	
24-1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A1-4BL	조각	Rainbow bridge		○	
24-2	위례 신도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각	도토리동산		○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783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창*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8*9-1 (삼정동)	위반일시 : 2019-03-26 09:43 위반장소 : 강변북로 하늘공원앞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95t, 초과값:1.95t, 인천06사80*5)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5-13 납기일 : 2019-06-30
지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7, 8층 (주교동)	위반일시 : 2019-04-01 15:45 위반장소 : 북한산 더샵아파트 앞 위반내용 :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36.2t, 초과값:4.2t, 경기06조6226)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5-13 납기일 : 2019-06-30
황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33번길 23, **4동 201호 (만수동, 남동아파트))	위반일시 : 2019-04-03 16:26 위반장소 : 가양대로 남단앞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55t, 초과값:1.55t, 서울06하6381)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5-13 납기일 : 2019-06-30
강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33번길 23, 1**동 201호 (만수동, 남동아파트)	위반일시 : 2019-04-03 16:26 위반장소 : 남산1호터널 입구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55t, 초과값:1.55t, 서울06하6*81)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5-13 납기일 : 2019-06-30
이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04번길 *-9, **1호 (영화동, 그랜드샤인)	위반일시 : 2019-04-22 10:48 위반장소 : 구파발시계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6t, 초과값:1.6t, 경기06로87*0)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5-13 납기일 : 2019-06-30
문성*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45번길 8-14, *동 2*2호 (경서동, 영진연립)	위반일시 : 2019-04-18 10:22 위반장소 : 마포경찰서 앞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35t, 초과값:1.35t, 적발횟수:2회, 인천06마*385)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5-13 납기일 : 2019-06-30
유등*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길 ** (풍세면)	위반일시 : 2019-04-22 06:22 위반장소 : 남산1호터널 출구 위반내용 : 차량의 총중량 초과(실측값:24.75t, 초과값:4.75t, 충남15고6*07)	과태료 : 5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5-13 납기일 : 2019-06-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김*식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 22, 2*1호 (소사본동, 슈펠리스)	위반일시 : 2018-12-05 10:31 위반장소 :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대로 아현초등학교앞 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2.9t, 초과값:2.9t, 적발횟수:3회, 서울07나5*85)	과태료 : 160만원 부과 처분일 : 2019-01-25 납기일 : 2019-06-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19. 07.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03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열람 공고

1.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장

1. 도로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사업의 명칭 :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건설공사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 규 모 :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개선 (평면교차로→입체교차로)

2.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방법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세목조서 별첨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02-3708-2586), 마포구 토목과 (☎02-3153-9754)

3. 주민 의견제출기간 : 열람공고 기간 내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02-3708-25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93	50	주간선 도로	2,498	성산동 537-4	고양시 덕은동 269	일반 도로			월드컵로
변경	광로	2	93	50	주간선 도로	2,498	성산동 537-4	고양시 덕은동 269	일반 도로			일부노선 폭원변경
기정	광로	3	94	41~ 48	주간선 도로	751	상암동 1568 (광로2-93)	상암동 487-3 (대로1-66)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00-50호 (2000.3.15.)	증산로
변경	광로	3	94	41~ 48	주간선 도로	751	상암동 1568 (광로2-93)	상암동 487-3 (대로1-66)	일반 도로			일부노선 폭원변경
기정	대로	2	20	30	주간선 도로	6,723	성산동 53-26 (광로2-93)	불광동 (대로2-12)	일반 도로			증산로
변경	대로	2	20	30	주간선 도로	6,723	성산동 53-26 (광로2-93)	불광동 (대로2-12)	일반 도로			도로모퉁이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광로2-93	광로2-93	변경구간 · 폭원 : 52.7→56.7m · 연장 : 540m	· 월드컵파크 3단지 교차로 ~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확장(6차로→8차로, 양측 1차로)에 따른 도로 사면 추가로 일부노선 폭원 변경
변경	광로3-94	광로3-94	변경구간 · 폭원 : 41.5→48.3m · 연장 : 215m	·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지하차도 신설 구간중 도로 사면 추가에 따른 폭원 변경
변경	대로2-20	대로2-20	변경구간 · 시점부 도로모퉁이	·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에 따른 시점부 도로모퉁이 변경

나. 공간시설(공원)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월드컵공원)	근린공원	마포구 상암동 1535 일원	2,284,085	증) 9	2,284,094	2000.7.25. (서고198)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공원 (월드컵공원)	· 변경 - 면적 : 2,284,085→2,284,094㎡ (증 9㎡)	·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 건설공사로 인한 면적 변경 - 도로에 의한 감소 면적 728㎡ - 대체시설 부지 면적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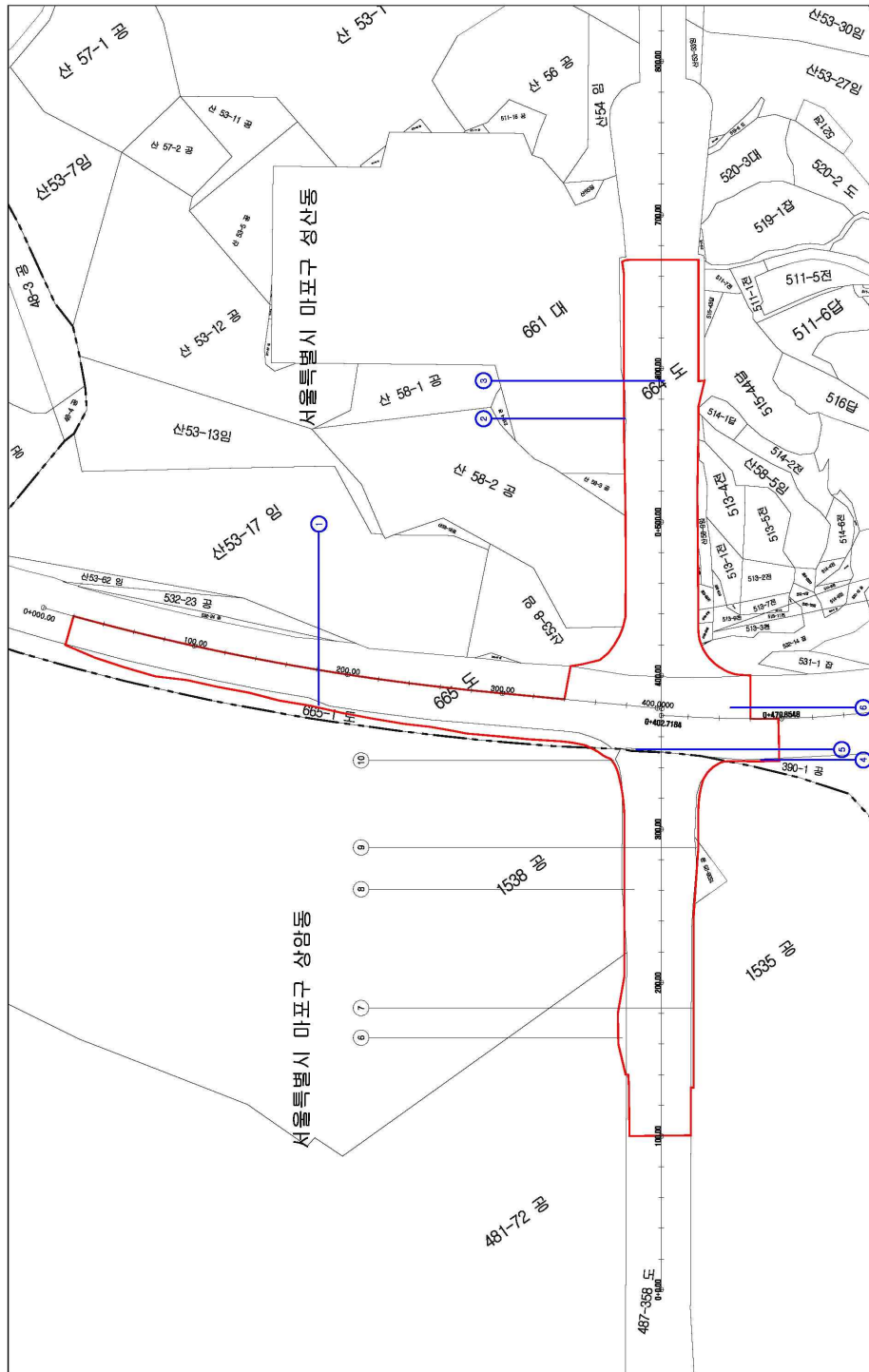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도(S=1:5,000)

		공간시설(공원) - ①
		공간시설(공원) - ②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1-72	공원	396,357	270	공	서울특별시	상암동- 6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5	공원	225,413	241	공	서울특별시	상암동- 7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7-358	도로	41,953	10,998	공	서울특별시	상암동- 8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8-25	공원	427	41	공	서울특별시	상암동- 9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38	공원	294,083	124	공	서울특별시	상암동- 10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65-1	도로	5,190.4	1,734	공	서울특별시	성산동- 1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61	대지	35,212.8	30	공	서울특별시	성산동- 2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64	도로	32,773.9	13,387	공	서울특별시	성산동- 3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390-1	공원	162,413	64	공	서울특별시	성산동- 4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32-2	도로	21	21	공	서울특별시	성산동- 5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65	도로	48,196.1	12,801	공	서울특별시	성산동- 6

용 지 도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04호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충신권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연극공유센터와 두레주택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 운영자와 함께할 지역맞춤형 운영주체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운영자 선정 입찰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나. 대상현황

구분	지 번	규 모(㎡)		재산평가액 (19년 감정평가액)	대상	연간사용료(천원) ※ 부가세 별도		
		토지	연면적			일반시설 (5.0%)	문화시설 (2.5%)	감면(1%) ¹⁾
충신동	합 계	72	117.84	448,399천원		22,420	11,209	4,483
	1-165	72	1층 68.31	259,863천원	1호	6,497	3,248	1,299
					2호	6,497	3,248	1,299
			2층 49.56	188,536천원		9,426	4,713	1,885

○ 예정가격 : 3,248천원 ※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 총액 금액이며,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작성시 문화시설 예정가격 이상 작성·제출하여야 유효함.
- 첫째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낙찰자가 감면대상인 경우 ‘낙찰가액 × (감면대상 예정가격/문화시설 예정가격)’을 낙찰가액으로 본다.
- 사용료 감면대상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5항)
 - 운영자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인 경우
 -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2. 사용 용도

위 시설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을 위한 행정재산으로서 다음 용도를 주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시설
 - 지역문화복지시설 : 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

-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 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어린이집·경로당·공동육아방 등 노유자시설
 -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 마을관리센터, 북카페, 작은 마을박물관, 전시관, 마을공방 등

3. 신청 대상

- 충신마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공동 입찰 불가)

※ ‘문화예술’ 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운영 기간 : 2년 (1회에 한하여 3년내 갱신 가능)

- 최초 2년 운영 후 갱신 신청시 운영실적 평가 등을 감안하여 재협약 추진

5. 입주 예정일 : 우리시와 협의 후 결정

6. 입찰 방법

- 본 입찰은 ‘사업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70점이상, 최대 3명) 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임.
- ‘가격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onbid.co.kr>, 이하 ‘온비드’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사업계획서’의 심사, 낙찰자 결정 등 기타 입찰과정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 개선과에서 시행함.

7. 사업제안서 입찰일정

가. 현장 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가조건 및 관련자료 등으로 갈음하며, 입찰참가자 희망시 현장 확인 가능

나. 사업제안서 접수

- 1) 공고기간 : 2019. 7. 4(목) ~ 7. 15(월), 10일간

- 2) 접수기간 : 2019. 7. 15(월) 10:00~17:00
- 3) 접수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정책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2133-7257 담당 이수연)
※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4) 제출서류
1. 운영자선정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1)
 2. 사업제안서 10부 (증빙서류 및 CD 등 이동형 저장장치와 함께 제출) (붙임2 참조)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개인, 법인 1개월 이내 발행분)
 5. 서약서 1부 (붙임 3)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개인에 한함) 1부. (붙임 4)
- 5)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사업제안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심사 기준의 항목 순으로 작성
 - 사업제안서는 A4용지로 20쪽 내외로 제출하되, 심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해야 하며, 서술내용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심사상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8. 사업제안서 심사
-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 나. 선정위원 구성 : 총 7명
- 선정위원 :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 선정위원장 :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다. 선정위원회 운영방법
- 제안서 제출 역순에 따라 신청자가 10분 이내 발표 및 질의응답
 - 개인은 반드시 본인 발표, 법인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발표 허용
 - 운영계획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 ※ 신청자(단체)가 1인일 경우에도 적격성 여부 심사,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유효한 입찰인 경우에 한함)
- 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지역활성화 사업 참여
- 지역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추진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역 내 공공사업시 기획, 디자인 등 자문 및 협업 추진
 - 중심거리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공사업
 - 지역 내 다른 앵커시설 운영 지원 (공공 임대주택 포함)
 - 활용방안, 입주자 선정기준, 내부 규약 마련

- 입주자 교육 및 연계한 마을활동 기획 등
- ※ 구체적 참여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협약 체결 전 ‘앵커시설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서울시/종로구 협의 후 진행
- 마. 선정(심사) 기준 : 사업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선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 ① 사업 이해도 (20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익목적 구현이라는 사업의 이해도
 - 성곽마을에 적합한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 충신마을의 장기발전 모델 및 비전 등
- ② 사업수행계획 (60점)
 -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합성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 (주민 커뮤니티 구축 등)
 - 중장기발전 모델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명소화 방안,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 ③ 홍보 및 활성화 방안 (20점) : 타겟별 홍보전략,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성(교류)방안 등
- 바. 적격자 결정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를 심사하며, 70점 이상 중 상위 고득점자 순으로 3인(업체) 이내를 적격자로 선정
 - ※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사. 심사결과 및 적격자 통보 :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
 - 적격 대상자 개별 전화 및 메일로 통보

9. 가격입찰 일정

가. 접수기간 : 추후 통보

나. 입찰방법 : 온비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다. 참가방법 및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 자격은 사업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입찰자에 한함
- 입찰참가자는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만, 공인 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음

- 2인 이상의 공동명의 입찰은 불가함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접수일 다음날 10:00

- 장 소 : 주거환경개선과 입찰집행관 PC

※ 온비드에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통보 : 개찰일 14:00 이후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 (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

※ 입찰보증금을 입금 창구은행 이외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바.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공고 → 연기공고 → 취소공고)에 게재함

10. 세부운영계획서 작성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

○ 절 차

- 낙찰자 선정 발표 후 「세부운영계획서」 협의일 개별 통지 및 협상

- 서울시와 최종 선정된 자와 「세부운영계획서」 최종 확정
- 「세부운영계획서」가 확정된 이후 10일 이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신청 완료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구비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사본(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부

11. 사용료 납부

- 가.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낙찰자가 감면대상인 경우 ‘낙찰가액 × (감면대상 예정가격/문화시설 예정가격)’을 낙찰가액으로 봄
- 나. 낙찰자는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 다. 낙찰자가 1차년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됨

12.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사용·수익허가조건, 운영계획서 작성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입찰절차상의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자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운영자 선정결과와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상기내용 외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온비드 이용에 관한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 7257)로 연락주시기 바람

- 붙임 1.~4. 각종 제출서류 서식 1부.
5. 위치도 및 대상지 현황 1부.
6.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끝.

붙임 1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선정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작성 불필요)			
신청인	성명(법인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대표자(법인)		법인등록번호

위와 같이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모집’에 신청서 작성기준 및 모집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제안서(A4 20쪽 내외) 10부
 2. 사업제안서와 별도로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동형 저장장치(USB메모리, CD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3.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법인) 1부
 5.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2019. 7.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접 수 증

1. 공 고 명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2. 접수번호 :
3. 제 출 자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모집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인)

붙임 2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작성 항목	세부 작성 내용	비 고
1. 기본구상	① 신청자(단체) 소개서 ② 충신마을에 대한 이해 ③ 운영 목표, 기본방향 및 운영프로그램 ④ 충신마을의 장기발전 모델 및 비전 등	
2.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① 세부 운영프로그램별 추진계획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 (체험, 관람, 교육 등) ③ 시설운영계획 - 월 15일, 일 6시간 이상 - 관리 인력 - 방문객 편의제공 등 서비스 방안 등 ④ 충신마을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안사업 등 - 지역명소화방안, 일자리창출 등	
3. 홍보 및 활성화방안	① 주민/방문객 타겟별 홍보전략 (리플릿, 홈페이지 등) ②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성(교류) 방안 등	

※ 상기 작성요령 중 '세부 작성내용'은 참고자료로 신청자가 운영계획서 작성방향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붙임 3

서 약 서

귀 시에서 모집 공고한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2호) 운영자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운영자 선정평가를 위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7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제공·활용 목적 : 사업과 관련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제공·활용 내용

- 개인 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소속, E-mail, 휴대전화 등)

■ 제공·활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주민번호 외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 7.

위 동의인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붙임 5

위치도 및 대상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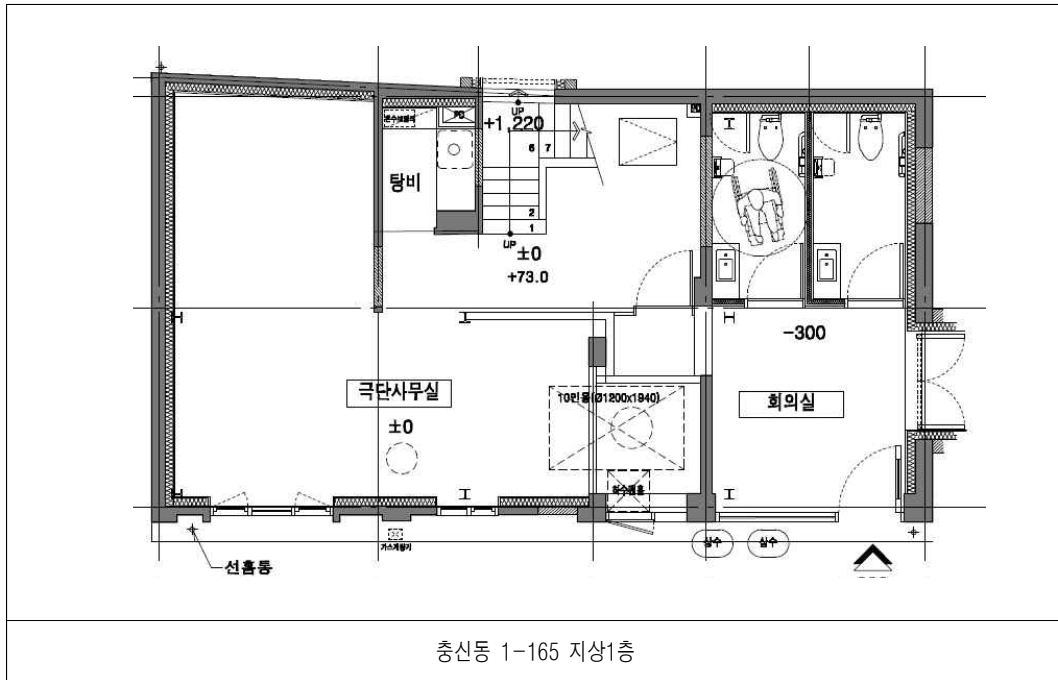
□ 위 치 도



□ 건물 현황



□ 도 면



붙임 6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재산을 충신동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 용도를 주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시설
 - 가. 지역문화복지시설 : 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
 - 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 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나. 어린이집·경로당·공동육아방 등 노유자시설
 - 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 라. 마을관리센터, 북카페, 작은 마을박물관, 전시관, 마을공방 등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대상 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월 일로부터 2021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금 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 납부의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허가일로부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위치에 소유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표찰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제한)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0호, 제11호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의 목적에 시민을 위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용 이나 공공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법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일까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때
8.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9.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제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시 또는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10.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서비스 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수익행위를 개시하지 않거나 사용·수익기간 중 30일 이상 사용·수익 행위를 하지 않아 허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12. 업무과 관련된 민·형사소송이 확정되거나 업무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청문) 서울특별시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요청)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철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철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① 서울특별시는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와 서울특별시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사용·수익허가기간 동안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협약 준수여부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평가한다.

⑤ 제2항에서 제4항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시민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사용허가 전 서울시와 협상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활성화 사업 참여

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추진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다. 지역 내 공공사업시 기획, 디자인 등 자문 및 협업 추진
 라. 지역 내 다른 앵커시설 운영 지원 (공공 임대주택 포함)
 · 활용방안, 입주자 선정기준, 내부 규약 마련
 · 입주자 교육 및 연계한 마을활동 기획 등

2. 공간사용 원칙 준수

- 나. 월 15회 이상, 일 6시간 이상 공간 실제 사용 ※ 특수 사유 사전 협의

② 서울시는 운영자가 작성한 「세부운영계획서」에 따른 분기별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 등을 수시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①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부운영 계획서’는 본 허가조건에의 일부로 본다.

제21조(송달의 책임) 서울시는 사용허가 재산의 소재지로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통지를 하며, 사용허가 재산의 소재지로 송달된 문서 등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제22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사용기간)에서 명시한 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05호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충신권 성곽마을 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연극공유센터와 두레주택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 운영자와 함께할 지역맞춤형 운영주체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운영자 선정 입찰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나. 대상현황

구분	지 번	규 모(㎡)		재산평가액 (19년 감정평가액)	대상	연간사용료(천원) ※ 부가세 별도		
		토지	연면적			일반시설 (5.0%)	문화시설 (2.5%)	감면(1%) ¹⁾
충신동	합 계	72	117.84	448,399천원		22,420	11,209	4,483
	1-165	72	1층 68.31	259,863천원	1호	6,497	3,248	1,299
			2층 49.56	188,536천원	2호	6,497	3,248	1,299
						9,426	4,713	1,885

○ 예정가격 : 3,248천원 ※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 예정가격은 1년간 사용료 총액 금액이며, 입찰자는 가격입찰서 작성시 문화시설 예정가격 이상 작성·제출하여야 유효함.
- 첫째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낙찰자가 감면대상인 경우 ‘낙찰가액 × (감면대상 예정가격/문화시설 예정가격)’을 낙찰가액으로 본다.
- 사용료 감면대상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제5항)
 - 운영자가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인 경우
 -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2. 사용 용도

위 시설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을 위한 행정재산으로서 다음 용도를 주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시설
 - 지역문화복지시설 : 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
 -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 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어린이집·경로당·공동육아방 등 노유자시설
 -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 마을관리센터, 북카페, 작은 마을박물관, 전시관, 마을공방 등

3. 신청 대상

- 충신마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공동 입찰 불가)

※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운영 기간 : 2년 (1회에 한하여 3년내 갱신 가능)

- 최초 2년 운영 후 갱신 신청시 운영실적 평가 등을 감안하여 재협약 추진

5. 입주 예정일 : 우리시와 협의 후 결정

6. 입찰 방법

- 본 입찰은 ‘사업제안서’를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70점이상, 최대 3명)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임.
- ‘가격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onbid.co.kr>, 이하 ‘온비드’라 한다)에서 시행하고, ‘사업계획서’의 심사, 낙찰자 결정 등 기타 입찰과정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 개선과에서 시행함.

7. 사업제안서 입찰일정

가. 현장 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가조건 및 관련자료 등으로 갈음하며, 입찰참가자 희망시 현장 확인 가능

나. 사업제안서 접수

- 1) 공고기간 : 2019. 7. 4(목) ~ 7. 15(월), 10일간
 - 2) 접수기간 : 2019. 7. 15(월) 10:00~17:00
 - 3) 접수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정책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2133-7257 담당 이수연)
- ※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서류

1. 운영자선정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1)
2. 사업제안서 10부 (증빙서류 및 CD 등 이동형 저장장치와 함께 제출) (붙임2 참조)
3.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개인, 법인 1개월이내 발행분)
5. 서약서 1부 (붙임 3)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개인에 한함) 1부. (붙임 4)

5)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 사업제안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시한 ‘사업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심사기준의 항목 순으로 작성
- 사업제안서는 A4용지로 20쪽 내외로 제출하되, 심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해야 하며, 서술내용이 부족하거나 불명확하여 발생하는 심사상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8. 사업제안서 심사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나. 선정위원 구성 : 총 7명

- 선정위원 :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 선정위원장 :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선정위원회 운영방법

- 제안서 제출 역순에 따라 신청자가 10분 이내 발표 및 질의응답
- 개인은 반드시 본인 발표, 법인은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발표 허용
- 운영계획서 발표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단체)가 1인일 경우에도 적격성 여부 심사,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 (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유효한 입찰인 경우에 한함)

라. 사업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지역활성화 사업 참여

- 지역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추진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역 내 공공사업시 기획, 디자인 등 자문 및 협업 추진
- 중심거리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공사업
- 지역 내 다른 앵커시설 운영 지원 (공공 임대주택 포함)

- 활용방안, 입주자 선정기준, 내부 규약 마련
- 입주자 교육 및 연계한 마을활동 기획 등

※ 구체적 참여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협약 체결 전 ‘앵커시설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서울시/종로구 협의 후 진행

마. 선정(심사) 기준 : 사업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선정위원회' 에서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① 사업 이해도 (20점)

-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익목적 구현이라는 사업의 이해도
- 성곽마을에 적합한 현실적인 사업계획 수립
- 충신마을의 장기발전 모델 및 비전 등

② 사업수행계획 (60점)

-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합성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 (주민 커뮤니티 구축 등)
- 중장기발전 모델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역명소화 방안,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③ 홍보 및 활성화 방안 (20점) : 타겟별 홍보전략,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성(교류)방안 등
바. 적격자 결정방법

-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를 심사하며, 70점 이상 중 상위 고득점자 순으로 3인(업체) 이내를 적격자로 선정

※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적격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심사결과 및 적격자 통보 :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

- 적격 대상자 개별 전화 및 메일로 통보

9. 가격입찰 일정

가. 접수기간 : 추후 통보

나. 입찰방법 : 온비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다. 참가방법 및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 자격은 사업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입찰자에 한함
- 입찰참가자는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만, 공인 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만,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후 입찰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입찰자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음
- 2인 이상의 공동명의 입찰은 불가함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일 시 : 접수일 다음날 10:00
- 장 소 : 주거환경개선과 입찰집행관 PC
- ※ 온비드에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 통보 : 개찰일 14:00 이후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 (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
- ※ 입찰보증금을 입금 창구은행 이외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액 미만이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바.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공고 → 연기공고 → 취소공고)에 게재함

10. 세부운영계획서 작성 및 사용·수익허가 신청

- 절 차
 - 낙찰자 선정 발표 후 「세부운영계획서」 협의일 개별 통지 및 협상
 - 서울시와 최종 선정된 자와 「세부운영계획서」 최종 확정
 - 「세부운영계획서」가 확정된 이후 10일 이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신청 완료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구비서류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사본(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1부

11. 사용료 납부

- 가.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가액과 부가가치세(낙찰가액의 1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낙찰자가 감면대상인 경우 ‘낙찰가액 × (감면대상 예정가격/문화시설 예정가격)’을 낙찰가액으로 봄
- 나. 낙찰자는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 다. 낙찰자가 1차년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됨

12.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사용·수익허가조건, 운영계획서 작성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입찰절차상의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자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운영자 선정결과와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상기내용 외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온비드 이용에 관한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 7257)로 연락주시기 바람

- 붙 임 1.~4. 각종 제출서류 서식 1부.
5. 위치도 및 대상지 현황 1부.
6. 사용·수익허가 조건 1부. 끝.

붙임 1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선정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신청인 작성 불필요)			
신청인	성명(법인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E-mail		
	대표자(법인)		법인등록번호

위와 같이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모집’에 신청서 작성기준 및 모집공고 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제안서(A4 20쪽 내외) 10부
 2. 사업제안서와 별도로 사업제안서 내용을 이동형 저장장치(USB메모리, CD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3. 주민등록등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4.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법인) 1부
 5.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2019. 7.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접 수 증

1. 공 고 명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
2. 접수번호 :
3. 제 출 자 :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모집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7.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인)

붙임 2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작성 항목	세부 작성 내용	비 고
1. 기본구상	① 신청자(단체) 소개서 ② 충신마을에 대한 이해 ③ 운영 목표, 기본방향 및 운영프로그램 ④ 충신마을의 장기발전 모델 및 비전 등	
2.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① 세부 운영프로그램별 추진계획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프로그램 운영계획 (체험, 관람, 교육 등) ③ 시설운영계획 - 월 15일, 일 6시간 이상 - 관리 인력 - 방문객 편의제공 등 서비스 방안 등 ④ 충신마을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안사업 등 - 지역명소화방안, 일자리창출 등	
3. 홍보 및 활성화방안	① 주민/방문객 타겟별 홍보전략 (리플릿, 홈페이지 등) ②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성(교류) 방안 등	

※ 상기 작성요령 중 '세부 작성내용'은 참고자료로 신청자가 운영계획서 작성방향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붙임 3

서 약 서

귀 시에서 모집 공고한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1호) 운영자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운영자 선정평가를 위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7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충신동 성곽마을 연극공유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제공·활용 목적 : 사업과 관련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제공·활용 내용

- 개인 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소속, E-mail, 휴대전화 등)

■ 제공·활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주민번호 외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 7.

위 동의인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붙임 5

위치도 및 대상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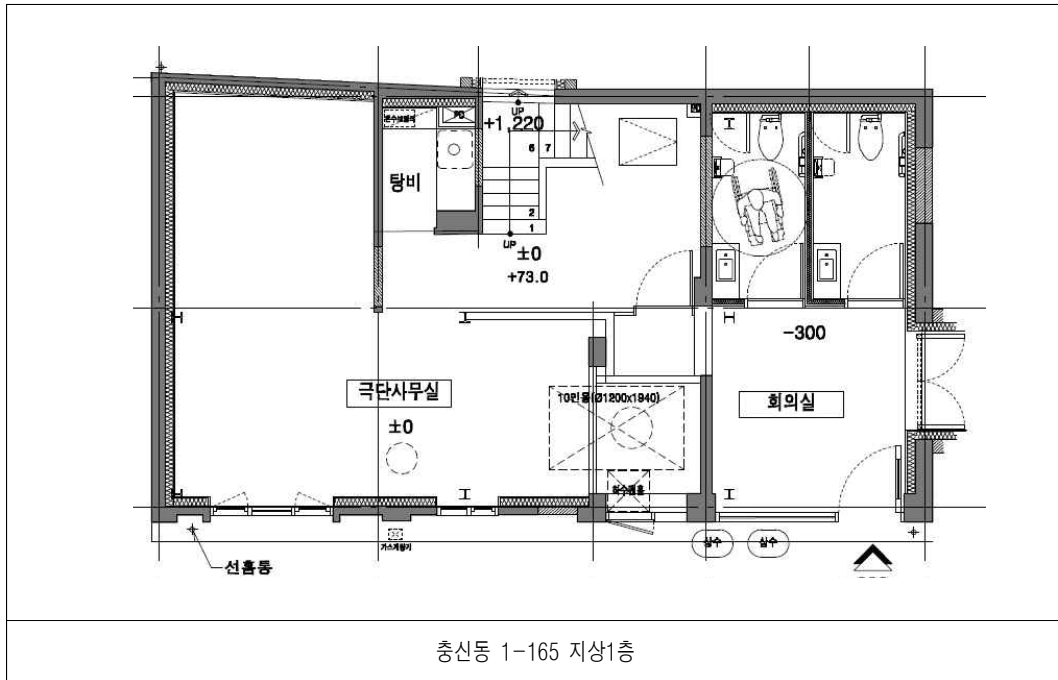
☐ 위치도



☐ 건물 현황



□ 도 면



붙임 6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수익목적) ① 서울특별시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재산을 충신동 내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 용도를 주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등 문화시설
 - 가. 지역문화복지시설 : 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등
 - 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 문화예술 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 나. 어린이집·경로당·공동육아방 등 노유자시설
 - 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지시설
 - 라. 마을관리센터, 북카페, 작은 마을박물관, 전시관, 마을공방 등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대상 재산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월 일로부터 2021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 금 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 납부의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허가일로부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위치에 소유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표찰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찰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행위제한)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0호, 제11호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의 목적에 시민을 위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직접 공용 이나 공공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때
5. 허가받은 재산을 법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한 때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기일까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때
8.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
9.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제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의 지시 또는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10.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서비스 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수익행위를 개시하지 않거나 사용·수익기간 중 30일 이상 사용·수익 행위를 하지 않아 허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 사용·수익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12. 업무과 관련된 민·형사소송이 확정되거나 업무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청문) 서울특별시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철회요청)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철회의 의사와 사유를 표시한 서면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철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서울특별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변상금 등의 징수) 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철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 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① 서울특별시는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에 필요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와 서울특별시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사용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사용·수익허가기간 동안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서비스 수준을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의 협약 준수여부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평가한다.

⑤ 제2항에서 제4항은 제1조에서 정한 사용·수익 목적에 시민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사용허가 전 서울시와 협상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활성화 사업 참여

- 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추진
-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체험)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다. 지역 내 공공사업시 기획, 디자인 등 자문 및 협업 추진
- 라. 지역 내 다른 앵커시설 운영 지원 (공공 임대주택 포함)
 - 활용방안, 입주자 선정기준, 내부 규약 마련
 - 입주자 교육 및 연계한 마을활동 기획 등

2. 공간사용 원칙 준수

- 나. 월 15회 이상, 일 6시간 이상 공간 실제 사용 ※ 특수 사유 사전 협의

② 서울시는 운영자가 작성한 「세부운영계획서」에 따른 분기별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 등을 수시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법령의 적용 등) ①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부운영계획서’는 본 허가조건의 일부로 본다.

제21조(송달의 책임) 서울시는 사용허가 재산의 소재지로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통지를 하며, 사용허가 재산의 소재지로 송달된 문서 등 통지를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제22조(효력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발생하며, 제2조(사용기간)에서 명시한 기간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813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매각 입찰참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 공시송달내용 : 공유재산 지명경쟁 입찰참가 통지
- 매각 대상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31-59
- 공 고 기 간 : 2019. 7. 4.~ 7. 18.(14일간)
- 공시 송달 대상자(연접토지 소유자)

대상자	연접토지 소재지	주 소	반송사유
편○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3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68-○○ ○○주택 107	주소 불명
편○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88-○	이사 불명
편○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88-○	이사 불명
편○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6-○ ○○아파트 ○-703	수취인 불명

※ 공시송달자 주소는 현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임.

※ 수유동 531-5 지번은 소유자 6인(편문자 외 5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주소를 기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7) 문의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9-84호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11호(2017.8.24.)로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되었다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85호(2018.8.2.)로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된 봉래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중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봉래동1가 48-3 일원	30,741.8	감) 16.8	30,725.0	

나. 변경 사유

- 봉래구역 제1지구 택지개발예정측량 성과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감소(16.8㎡)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741.8	감) 16.8	30,725.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6,643.2	감) 0.4	6,642.8	21.6	
	도 로	6,146.2	감) 0.4	6,145.8	20.0	
	공공공지	497.0	－	497.0	1.6	
시행지구	소 계	12,866.9	감) 16.4	12,850.5	41.9	
	제1지구	2,820.6	감) 16.4	2,804.2	9.1	
	제2지구	3,378.9	－	3,378.9	11.0	
	제3지구	4,115.9	－	4,115.9	13.4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4지구	676.9	—	676.9	2.2	
	제5지구	939.5	—	939.5	3.1	
	제6지구	935.1	—	935.1	3.0	
존치지구	소 계	11,231.7	—	11,231.7	36.6	
	존치1지구	372.1	—	372.1	1.2	
	존치2지구	2,854.2	—	2,854.2	9.3	
	존치3지구	1,002.6	—	1,002.6	3.3	
	존치4지구	436.3	—	436.3	1.4	
	존치5지구	2,138.9	—	2,138.9	7.0	
	존치6지구	366.6	—	366.6	1.2	
	존치7지구	3,079.4	—	3,079.4	10.0	
	존치8지구	819.6	—	819.6	2.7	
	존치9지구	162.0	—	162.0	0.5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741.8	감) 16.8	30,725.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30,741.8	감) 16.8	30,725.0	100.0	

2) 용도지구 (변경)

가) 미관지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①	미관지구	중심지	철패로변	27,360 (5,056)	400 (180)	12	1982.4.22. (서고제164호)	
폐지	①	미관지구	중심지	통일로변					
폐지	①	미관지구	중심지	세종대로변	173,930 (6,195)	1,850 (229)	2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4.18.)로 중심지미관지구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사항임

나) 방화지구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자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방화지구	-	봉래동 48-3 일원	101,000 (30,743.3)	-	-	1973.8.1. (건고제317호)	집단

※ ()는 구역내 편입 면적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도로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4	50~53 (53)	주간선 도로	1,500 (300)	세종로광장	서울역앞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722)	세종대로
기정	광로	3	11	40~43 (43)	주간선 도로	1,150 (210)	서울역광장	서대문광장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722)	통일로
기정	대로	2	4	30~45 (33)	주간선 도로	1,340 (200)	남대문광장	중림동	일반 도로	-	1936.12.26. (총고722)	칠패로
기정	중로	2	-	14~15	집산 도로	232	봉래동1가 4-2	봉래동1가 79	일반 도로	-	2017.8.24. (서고제311호)	세종대로 5길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103	봉래동1가 6-23	봉래동1가 126-2	일반 도로	-	2017.8.24. (서고제311호)	세종대로1 길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85 (41)	봉래동1가 53-3	봉래동1가 88-1	일반 도로	-	2017.8.24. (서고제311호)	(1,2지구 동측)

※ ()는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2)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봉래동1가 111-3 일원	497.0	-	497.0	1999.4.14. (서중고제19호)	

3) 철도(정거장)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폭 (m)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1호선서울역)	서울역광장 (봉래동2가 122-27일대)	11.4~ 32.4	288.2	8,932.7	71.3.26. (건고158호)	· 중복결정 - 도로: 8,475.0㎡ - 광장: 8,191.5㎡ · 입체결정 - 3지구내: 880.2㎡

4) 철도(정거장) 입체적 결정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내용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서울역)	남대문로5 가 63-11번지 일대	면적 (㎡)	지상부	359.4	-	359.4	2017.8.24. (서고 제311호)	
					지하부	520.8	-	520.8		
				길이(m)		42.6	-	42.6		
				폭(m)		9.3~17.6	-	9.3~17.6		
				높이(m)		18.5~44.9	-	18.5~44.9		

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 계획 (변경)

1)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분	사업 지구	시행지구 면적(㎡)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 공공 용지 (㎡)	대지내 폐지 국공유지 (㎡)	기반시설 부담면적 (㎡)	순부담률(%)			비고
								기반시설 (토지) 부담률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률	합계	
계		14,501.2	12,850.5	1,650.7	－	－	1,650.7	11.4	1.8	13.2	평균 순부 담률 11.3%
기정	제1지구	3,394.0	2,820.6	573.4	－	－	573.4	16.9	－	16.9	
변경		3,377.2	2,804.2	573.0	－	－	573.0	17.0	－	17.0	
기정	제2지구	3,907.5	3,378.9	528.6	－	－	528.6	13.5	－	13.5	
기정	제3지구	4,592.5	4,115.9	476.6	－	－	476.6	10.4	0.9	11.3	
기정	제4지구	742.8	676.9	65.9	－	－	65.9	8.9	2.4	11.3	
기정	제5지구	939.5	939.5	0.0	－	－	0.0	0.0	11.3	11.3	
기정	제6지구	941.7	935.1	6.6	－	－	6.6	0.7	10.6	11.3	

※ 순부담률 = 순부담 면적 ÷ (시행지구 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면적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

※ 4,5,6지구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시 순부담률 11.3%이상 되도록 추가 기부채납(건축물 등)을 계획하되, 공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조정토록 함

마.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봉래구역	3,394.0	제1지구	2,820.6	봉래동1가 57-2 일원	업무 시설	60이하 (저층부 70이하)	1,011이하	90 이하	
변경		3,377.2		2,804.2				1,012이하		
제1지구 심의완화 사항		기정	■ 용적률 : 1,011%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200%							
			목 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 1등급)		정량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24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						
			도시경제활성화	벤처기업집적시설(940.13㎡이상) 설치		정률부여	50%			
			보행가로활성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부여	5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최우수 등급시						
			③ 상한용적률 : 1,011%							
			구 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도로) 부담		허용용적률×(1+1.3×α)		800×(1+1.3×(573.4/2,820.6))		1,011.4%	
			계				-		1,011.0%	
		변경	■ 용적률 : 1,012%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200%							
			목 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 1등급)		정량부여	10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24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						
			도시경제활성화	벤처기업집적시설(934.75㎡이상) 설치		정률부여	50%			
			보행가로활성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부여	5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최우수 등급시						
			③ 상한용적률 : 1,012%							
			구 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도로) 부담		허용용적률×(1+1.3×α)		800×(1+1.3×(573.0/2,804.2))		1,012.5%	
			계				-		1,012.0%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지정용도(1,2층) - 가로활성화용도(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한계선 - 통일로변 : 5m - 칠패로, 신설도로변 : 3m ■ 고층부벽면한계선(6층이상, 20m이상) - 통일로변 : 8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중 도면 표시 구간 ■ 시행구역내 포함된 가로변 지장물(변압기 등)은 획지 또는 건축물 내로 이전설치								

※ 제1지구 외 타 지구의 건축시설계획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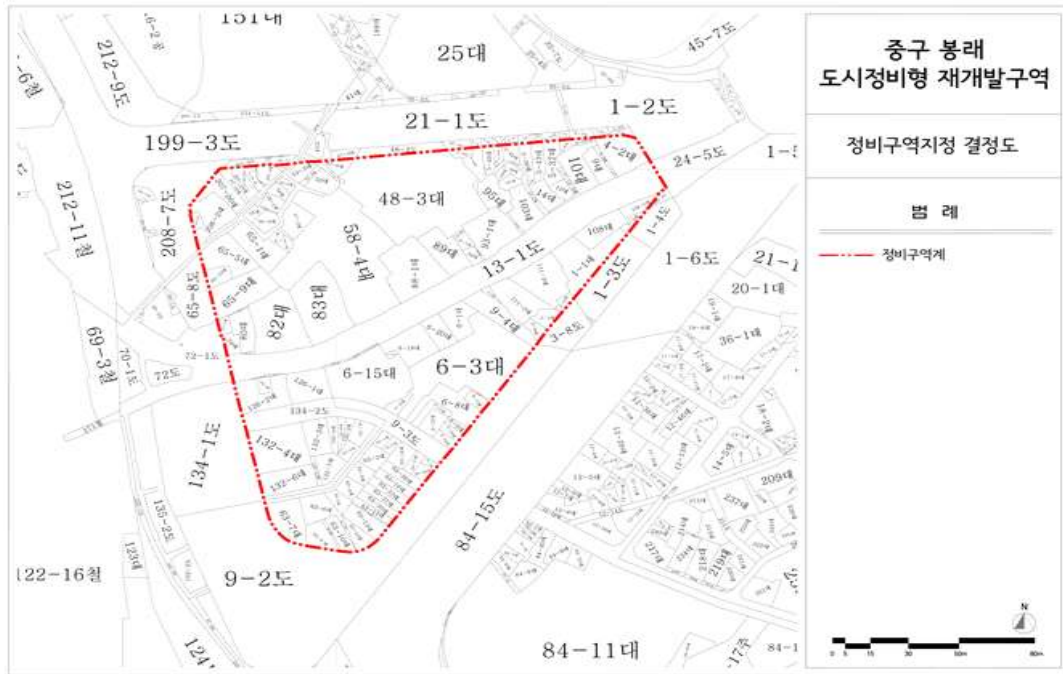
5.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관계도면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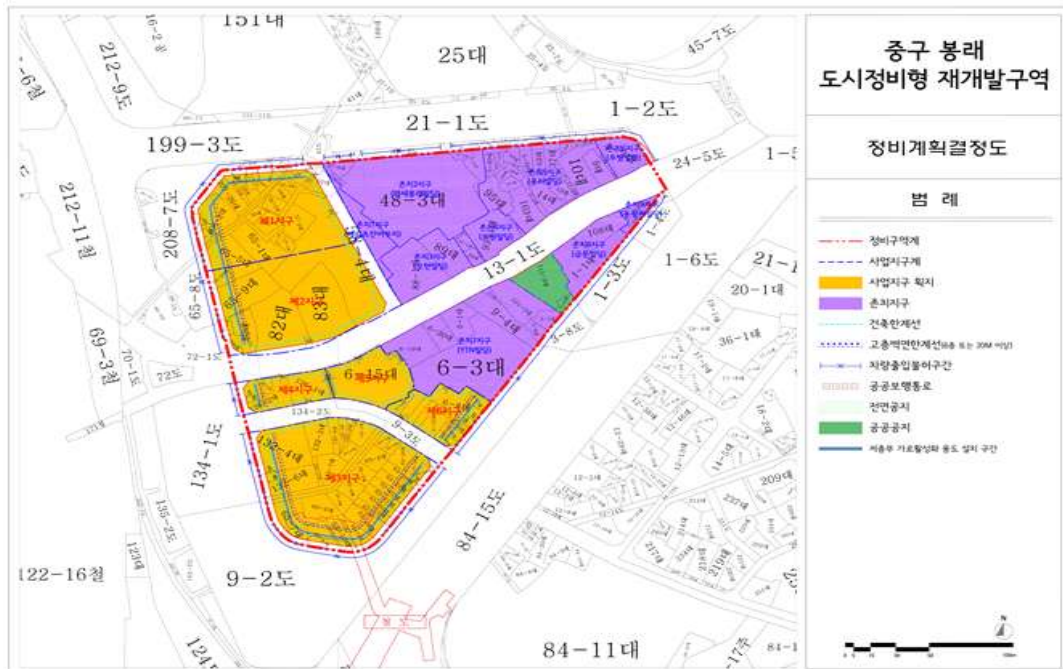
6. 관계서류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구 도심재생과(☎3396-5774)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정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 : 변경없음



◆ 성동구고시 제2019-60호

도시계획시설사업(달맞이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사업인정의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9-65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달맞이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열람공고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공원녹지과(☎2286-5656)에 비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4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367-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달맞이근린공원 조성사업(보상)

다. 사업의 면적 : 700㎡(※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 조정가능)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행자 : 성동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마. 시설관리청 : 성동구청장

바.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자. 열람장소 : 성동구청 공원녹지과(☎2286-5656)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 사업명 : 달맞이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성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9,410	700						
1	성동구 금호동4가 275	대	56	56	최*은	서울 성동구 금호로40, ***동 ***호 (금호동4가, 헬스테이트 서울숲리버)	쥬대웅은행	대구 수성구 범어동 13-7,14-6,14-7(성수동지점)	근저당권설정	
							쥬대웅은행	대구 수성구 범어동 13-7,14-6,14-7(성수동지점)	지상권설정	
2	성동구 금호동4가 275-1	대	56	56	송*숙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22 고운빌라1차 ***	쥬대웅은행	대구 수성구 범어동 13-7,14-6,14-7(성수동지점)	근저당권설정	
							쥬대웅은행	대구 수성구 범어동 13-7,14-6,14-7(성수동지점)	지상권설정	
3	성동구 금호동4가 367-1	잡	9,245	535	김*건	서울 중구 필동2가 ***-***	-	-		
4	성동구 금호동4가 367-2	잡	53	53	김*건	서울 중구 필동2가 ***-***	-	-		
					이	하	여	백		

◆ **강북구고시 제2019-99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43호(1993.8.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9-59호(2019.4.25.)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공고 제2019-681호(2019.6.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열람 공고한 『우진빌라 앞 도로확장』을 시행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4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	비고
우진빌라 앞 도로확장	강북구 미아동 791-1531 ~ 미아동 791-1359	폭 4~7m 연장 89m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19-59호 (2019.4.25.)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추가구간에 대한 명세로 당초구간에 대한 명세는 변동 없음)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901-5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우진벨라 앞 도로확장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미아동 791-4792	대지	13	13	서울시 성북구 월곡로18길 8-22 (하월곡동)	장순모	33.957/331	서울시 중구 세종 대로9길 20(태평 로2가) (동소문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권	201호
					서울시 성북구 오페산로3가길 8-3 (하월곡동)	이관성	33.309/331	서울시 중구 남대 문로 84(을지로2가 (미아역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	202호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20가길 10, 203호 (미아동,한백빌리지)	권필년	16.612/331	서울시 도봉구 해동로 166(쌍문동) (삼양로지점)	복서울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03호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17길 17-5, 301호 (미아동,동원맨션)	유광종	33.957/331	서울시 성동구 성 덕정길 116(성수 동2가)	성수2가1동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3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 163, 씨동 503호	김성은	33.309/331	서울시 강북구 도 봉로89길 13	강북구 (서울특별시)	압류	302호
								서울시 서초구 서초 대로74길 14(서초동)	삼성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근저당권	
					서울시 강북구 오페산로30길 9-10(미아동)	이준수	16.612/331				303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미아동 791-4792	대지	13	13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20가길 10, 401호(미아동,한백빌리지)	나명희	33.957/331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17	도봉세무서	압류	401호
								강원도 원주시 간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국민건강 보험공단	압류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방배사랑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길 27,301호 (서초동,화원)	뉴모아투자개 발주식회사	근저당권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20가길 10,402호(미아동,한백빌리지)	소성숙	33.309/331				402호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9가길 82, 101동 706호 (사당동,경남아너스빌아파트)	문성원	16.612/331	서울시 종로구 세 종대로 163(세종로)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근저당권	403호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13길 39, 304동 1502호(길음동,길음뉴타운)	유세진	29.445/331	서울시 송파구 오 금로 62(신천동) (신설동역지점)	수협은행	근저당권	501호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20가길 10, 502호(미아동,한백빌라)	허건수	33.309/331	서울시 중구 세종 대로9길 20(태평로 2가) (종로중앙금융센터)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권	502호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33, 102호(동선동3가)	허성은	16.612/331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도암동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권	503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용	
2	미아동 791-4793	대지	29	29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4길 52-5, 지층 1호(수유동, 미진빌라)	윤석근	13.91/634	서울시 중구 남대 문로 84(을지로2가) (북한산시가지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	가-101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5-2 삼성아파트 109-1903	김문정	31.96/634	서울시 광진구 자 양동 635-8 (건대역지점)	중앙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가-102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20가길 4, 가동 201호(미아동, 정은빌라)	김영삼	40.64/634	서울시 종로구 중 로 47(공평동) (리테일금융운영센 터리테일금융운영)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근저당권	가-201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91-1530 -202	김학천	39.98/634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미아역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근저당권	가-202
					캐나다국 온타리오주 엘4비 40에스7 리치몬드시 킹윌리엄 56	박미자	40.64/634				가-301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5-9 쌍용빌라 201호	박혜영	39.98/634	서울시 중구 남대 문로 84(을지로2가) (암구정서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	가-30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3가길 27-32, 401호(연건동, 4층)	김소리	40.64/634	서울시 강북구 도 봉로 117	도봉세무서	압류	가-401
								서울시 중구 을지 로 66 (을지로2가, 외환은행본점)	하나카드 주식회사	가압류	
								서울시 중구 세종 대로9길 20(태평 로2가)(창동역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권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11, 309동 1204호(야당동, 한빛마을3단지 자유로아이파크)	박정기	36.95/634				가-402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2	미아동 791-4793	대지	29	29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91-1530 나-101	김윤철	34.90/634				나-101
					서울시 강북구 번동 447-44	정경순	34.96/634				나-102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91-1530 나동 201호	박종대	34.90/634				나-201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91-1503 나-202	송호덕	34.96/634				나-202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20가길 8-4, 나동 301호(미아동)	박영찬	34.90/634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리테일 금융운영 센터리테일 금융운영)	주식회사한국스탠다 드치타드은행	근저당권	나-301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구로동, 지벨리비즈 플라자) (여의도역지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근저당권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20가길 8-4, 나동 302호(미아동)	박은영	34.96/63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역삼2동지점)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권	나-302
					서울시 강북구 번동 136 번동솔그린아파트 104-202	이춘기	34.90/634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동지점)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나-401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91-1530, 나동 402호	최영일	34.96/634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북한산시 티지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	나-402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47, 7층 701호(남현동,사 당타워)	주식회사 뉴아리원대부	근저당권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900, 502호(목동)	주식회사 빌리언대부	근저당권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84, 1803호 (하월곡동,김음서희스튜디오)	임철민	34.90/634				나-지1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1530 정은빌라 나-비2	최선희	34.96/634				나-지2

◆ 도봉구고시 제2019-88호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정정)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 7. 9.)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8-219호(2018. 7.1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77호(2019. 5.30.)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도봉구 창동 산159-1번지 일대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 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4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59-1 일대

나.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초안산근린공원 조성

라. 사업의 규모 및 내용(변경)

- 면 적 ㄱ 지정 18,900㎡ (기정면적 정정)
ㄴ 변경 21,556㎡ (증2,656㎡)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마. 사업기간(변경 없음) : 실시계획 변경고시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 따로 붙임(기정면적 정정)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2091-375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각 1부.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변경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 소			
합계	기정			18,900	18,900								
	변경			21,556	21,556								
1	변동 없음	창동 산156-5	임야	2,051	2,051	서울 특별시							
2	변동 없음	창동 산159-6	과수원	5,389	5,389	서울 특별시							
3	변동 없음	창동 산159-1	과수원	4,465	4,465	주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	154/1001	김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00, ***동 ***호 (목동*****)	지분가입류 근저당권가처분		
									노원 세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길14 (재산법인세과-694)	압류		
									강남 세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5 (숨긴재산추적과-9113)	압류		
									서울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장수과-7535)	압류		
									조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5, ***동 ****호(옥수동, *** 옥수 *****)	근저당권 설정		
4	변동 없음	창동 산159-5	과수원	389	389	주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	154/1001	김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00, ***동 ***호 (목동*****)	지분가입류 근저당권가처분		
									노원 세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9길14 (재산법인세과-694)	압류		
									강남 세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5 (숨긴재산추적과-9113)	압류		
									서울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장수과-7535)	압류		
									조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15, ***동 ****호(옥수동, *** 옥수 *****)	근저당권 설정		

연번	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지 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통 변 없음	창동 산160-3	임야	198	198	서울 특별시						
6	통 변 없음	창동 산193-4	임야	2,631	2,631	서울 특별시						
7	통 변 없음	창동 산193-5	임야	3,777	3,777	서울 특별시						
8	변경 (증가)	창동 산193-6	임야	2,656	2,656	이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5길 13-10, ***동 ****호 (서초동, *****)					

◆ 노원구고시 제2019-7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46일대 서울선곡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노 원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46번지 일대 서울선곡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학교	초교	노원구 월계동 446번지 일대	9,514	증) 466	9,980	서고 제138호 (1973.8.17.)

· 건축물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기정	변경			
학교 (서울선곡초등학교)	30 이하	35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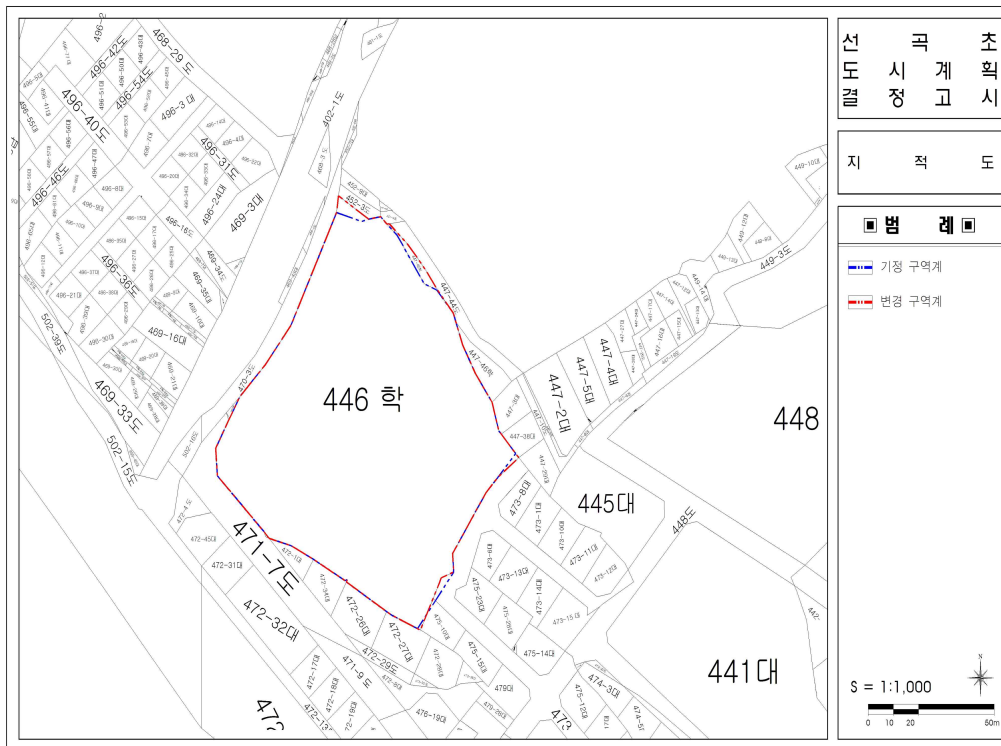
·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면적변경 - 9,514㎡ → 9,980㎡ (증 466㎡) - 건축범위(건폐율) 변경 - 30%이하 → 35%이하 (증 5%)	- 학교경계와 지적경계 불일치 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지(월계동 447-45번지) 편입 - 체육관, 급식실 증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86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19-9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73-38 ~ 73-166번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대문구청장

1. 결정 취지

- 해당 필지에 인접해있는 인근 토지의 분할 매수를 위한 측량 시행 중 지적선의 오류를 발견하여 현황에 맞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자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 결정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소로	3류	3	6	국지 도로	140	남가좌동 73-384	남가좌동 73-226	일반 도로	1973. 11.26	시설 결정당시 지번오류로 인해 기점, 종점 지번 수정
변경	소로	3류	3	6	국지 도로	140	남가좌동 73-38	남가좌동 73-166	일반 도로	1973. 11.26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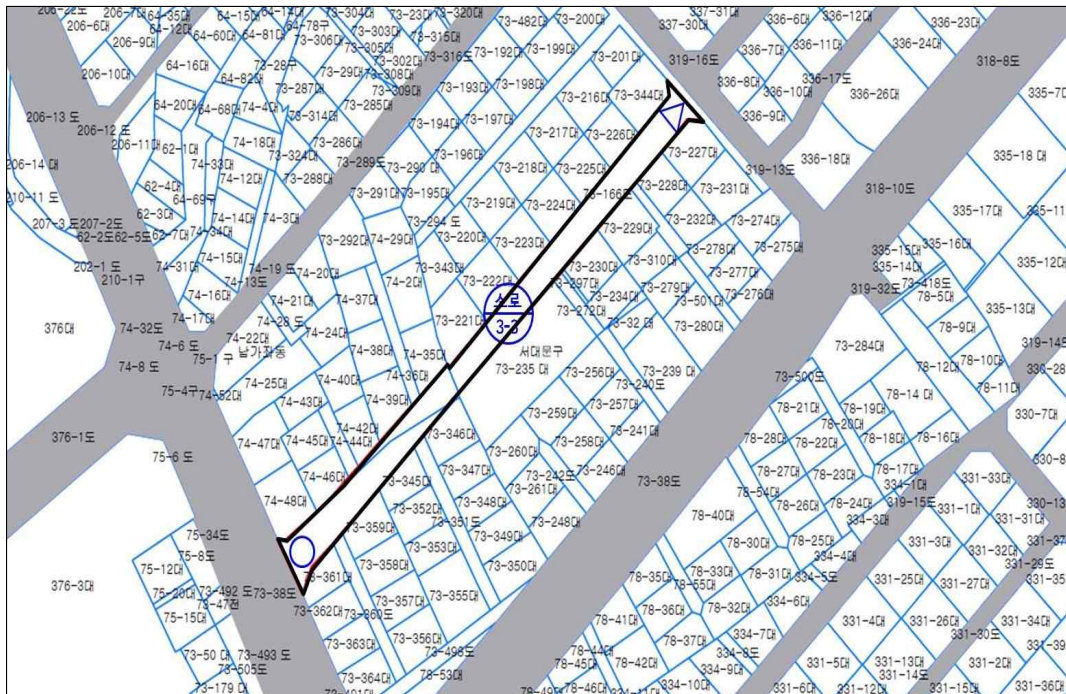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당초	변경	
소로 3-3	소로 3-3	- 위치 : 남가좌동 73-384 ~ 73-226	- 위치 : 남가좌동 73-38 ~ 73-166	남가좌동 74-36호의 분할 매수를 위한 측량을 시행 중 지적과에서 인접한 필지인 남가좌동 74-346호의 지적선 오류를 발견, 수정하여 변경된 지적선에 따라 도시계획선 변경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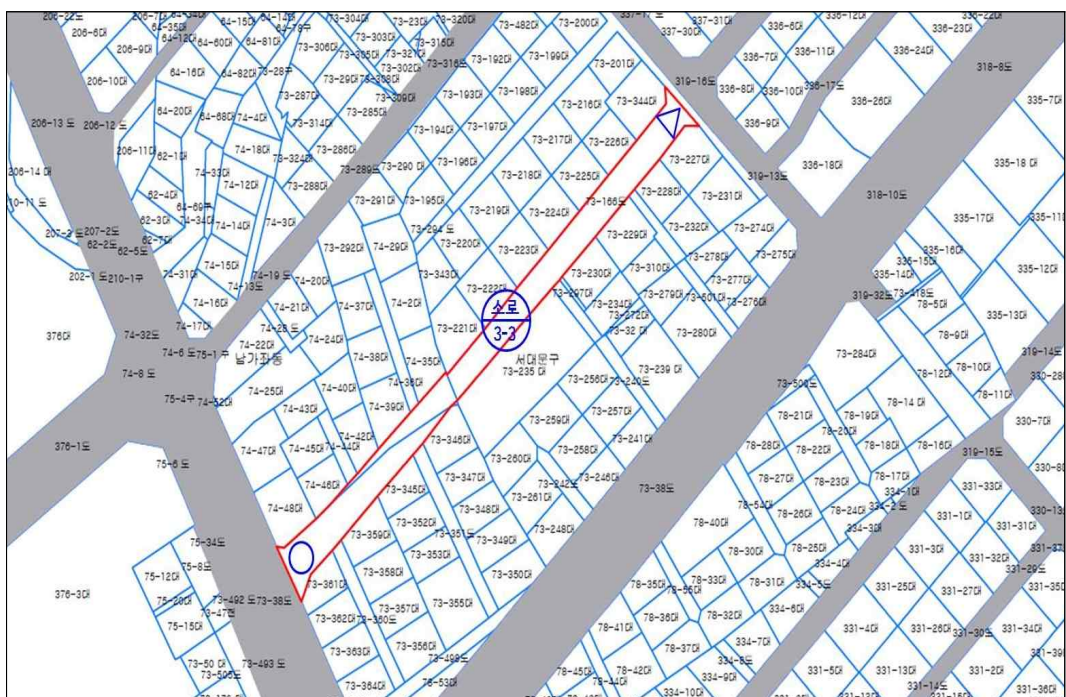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330-138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당초



○ 변경



◆ 마포구고시 제2019-91호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4호(2013.9.26.)로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노고산동 54-13외 3필지에 대하여, 2019년 제1차 마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6.2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마 포 구 청 장

1. 변경 결정 취지

-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마포구 노고산동 54-13외 3필지 획지단위개발 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마포구, 서대문구 신촌로타리일대	546,263.3 (183,264.3)	-	546,263.3 (183,264.3)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중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구분	위 치		대지면적(㎡)	세부사항	비고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노고산동	54-13	71.10	획지단위개발	
		노고산동	54-14	73.10		
		노고산동	54-65	50.90		
		노고산동	54-15	72.10	단독개발	
	변경	노고산동	54-13	71.10	획지단위개발	
		노고산동	54-14	73.10		
		노고산동	54-65	50.90		
		노고산동	54-15	7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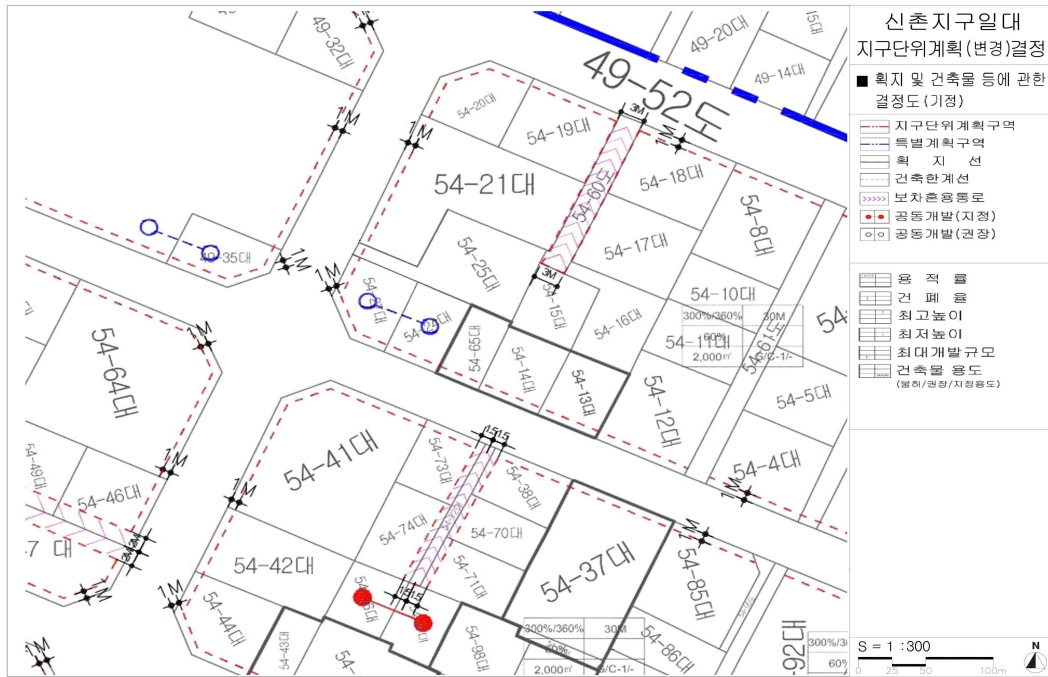
○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3. 관계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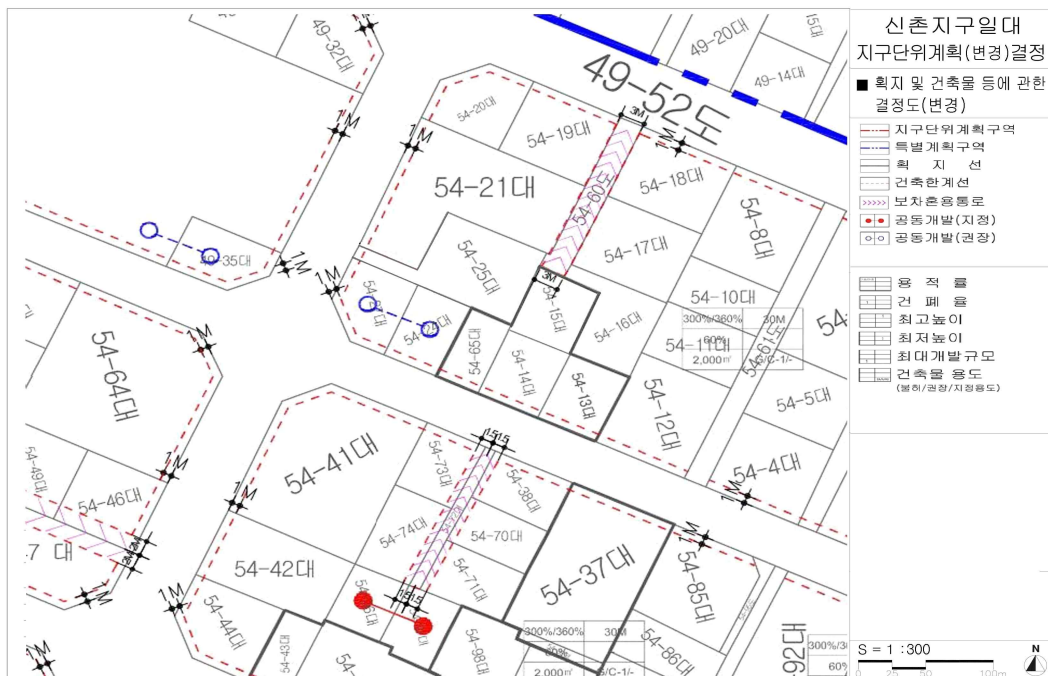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7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 양천구고시 제2019-4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73호(2018.1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된 온수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19-731호(2019.5.30.)로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조성)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를 공고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작성,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본 내용을 토지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02-2620-587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4일

양 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양천구 신월동 350-31번지 등 7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2019년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사업
3. 사업의 규모 : 토지보상 18,358㎡
4.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사업 시행자 ㄱ 성 명 : 양천구청장
 - ㄴ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5.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2. 12. 31까지
6. 사용·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등의 조서 : 따로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2019년 도시계획시설(온수도시자연공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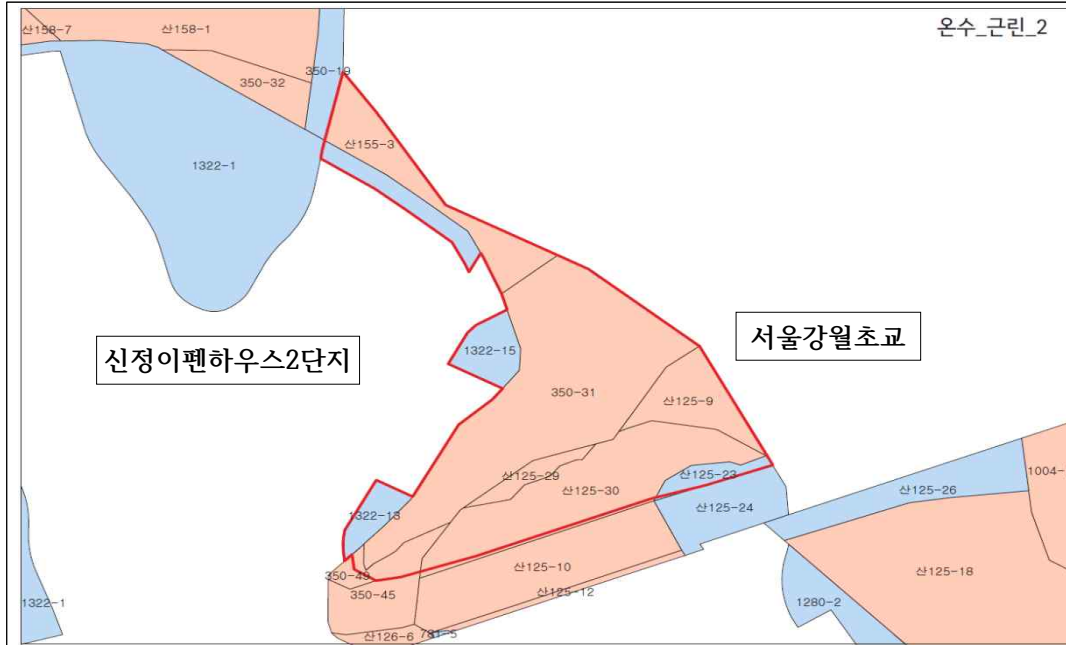
□ 사업시행자 : 양천구청장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내용
계			19,362	18,358	9명					
1	신월동 산155-3	임	1,989	1,989	왕흥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207동 2801호(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1/2			
					황교회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3동 301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3/18			
					신현중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43길 51, 101동 703호(서초동, 현대리츠빌)	2/18			
					김가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23동 301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18			
					신현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01동 2301호(정자동, 파크뷰)	2/18			
2	신월동 350-31	임	9,325	9,325	학교법인 고려중앙 학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145	1			
3	신월동 350-45	임	1,440	604	에스 에이치 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1			
4	신정동 산125-2 9	임	471	471	에스 에이치 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1			
5	신정동 산125-3 0	임	4,094	3,926	에스 에이치 공사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1			
6	신정동 산125-9	임	1,547	1,547	황병조	서울 서초구 서리폴길 12, 403호(서초동, 트라움하우스)	1			
7	신정동 739-31	임	496	496	천기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로142번길 22-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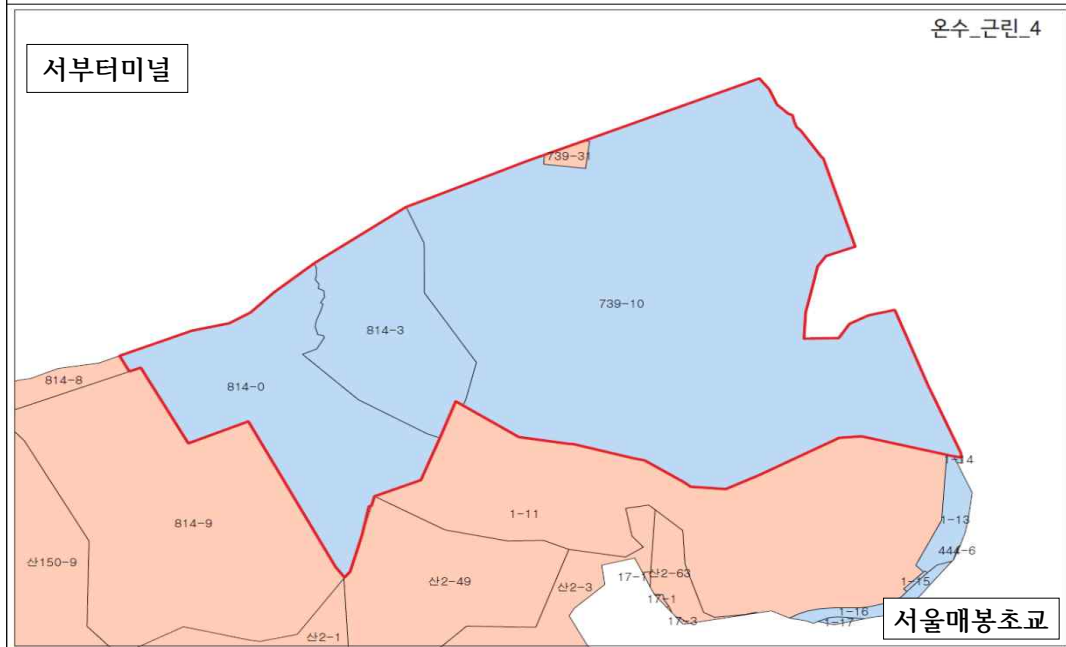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편입면적 및수량 (㎡)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신월동 산155-3	가설 건축물	철파이프 (농막)	47	왕흥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207동 2801호 (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2		과수목 (감나무)	-	11주	왕흥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207동 2801호 (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3		과수목 (뽕나무)	-	34주	왕흥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207동 2801호 (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위 치 도



신월동 산155-3 일대 6필지



신정동 739-31

◆ 강서구고시 제2019-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강서구고시 제2006-18호(2006.3.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설치하고자,
2. 서울특별시 강서구공고 제2019-775호(2019.5.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강서구 외발산동 270-7외 5필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동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 외발산동 270-7외 5필지

(강서구 외발산동 270-7, 268-31, 268-29, 268-8, 270-3, 270)

나.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명 : 강서구 외발산동 270-7외 5필지 도로개설공사

라.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시설 결정면적 : 2,608㎡(금회 시행면적 : 532㎡)

○ 규 모 : 도로개설(B=8m, L=69m)

마. 사업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66, ***동 ***호

○ 성 명 : 최기덕

바.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19.12.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편입토지 포함)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강서구)에 무상 기부채납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도로과(☎2600-69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최*덕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공사명 : 외발산동 270-7외 5필지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할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권리자 성명주소		
						성명	주 소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1	외발산동	270-7	전	40	40	최*덕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66, ***호	***동			
2	외발산동	268-31	임야	102	102	최*덕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66, ***호	***동			
3	외발산동	268-29	임야	807	66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4	외발산동	268-8	전	1,746	25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5	외발산동	270-3	도로	293	6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외발산동	270	전	1,775	4	최*덕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66, ***호	***동			
						이*옥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216-37				
						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부순환로19길 127(외발산동)				
	계				532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조서

■ 공사명 : 외발산동 270-7외 5필지 도로개설공사

사업시행자 : 최*덕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공부면적	사용 또는 수용할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권리자 성명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268-8	전	건물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746㎡	55㎡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2	268-8	전	담장	세멘블럭조	1,746㎡	높이:1.70m 길이:24.0m					
3	268-8	전	담장	경량판넬	1,746㎡	높이:1.3m 길이:39.0m					

◆ 동작구고시 제2019-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4-114호(2014.11.27.)로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 실시계획인가 의제된 동작구 동작동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및 소로3-1호선) 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4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소로1-1호선, 소로3-1호선(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 동작동 102번지 일대 도로 개설공사

라. 사업시행지의 규모

구 분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비고
		기 정	변 경	
소로 1-1호선	연장 : 705(122)m 폭원 : 6~16m	연장 : 705(122)m 폭원 : 6~16m	연장 : 705(122)m 폭원 : 6~17.4m	국지 도로
소로 3-1호선	연장 : 57m 폭원 : 6m	연장 : 57m 폭원 : 6m	연장 : 55.6m 폭원 : 6~7m	국지 도로
도로 면적	소로 1-1호선 : 1,147 m ² 소로 3-1호선 : 474.7 m ²	소로 1-1호선 : 1,147 m ² 소로 3-1호선 : 474.7 m ²	소로 1-1호선 : 1,200 m ² 소로 3-1호선 : 505 m ²	

※()는 구역내 연장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병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2018.11.22.)로부터 60개월

사.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편입토지조서 총괄표

구분		합 계		공유지				사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 지	면 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 지	면 적
대	기정	8	1,530					8	1,530
	변경	8	1,606.7					8	1,606.7
도로	기정	4	79.7	2	22	1	25.7	1	32
	변경	4	85.3	2	22	1	25.7	1	37.6
구거	기정	1	12			1	12		
	변경	1	13			1	13		
합계	기정	13	1,621.7	2	22	2	37.7	9	1,562
	변경	13	1,705.0	2	22	2	38.7	9	1,644.3

○ 세부 편입토지조서

▶ 도시계획시설 (소로1-1호선)

소재지 시·구리·동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기정	102	대	1,875	795	서울 동작구 동작동 102	김광성의 32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신사동지점)	(주)한국외환 은행	근저당권 설정	
		변경	102	대	1,875	84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 건축정비 사업조합				
		기정	102-18	대	416	183	서울 동작구 동작동 102-18	이현식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강남역지점)	(주)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근저당권 설정	
		변경	102-18	대	416	18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 건축정비 사업조합				
		기정	102-19	대	370	15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암빌딩	(주)생보 부동산신탁	서울 서초구 잠원동 27-8	금강종합건설 (주)	근저당권 설정	
		변경	102-19	대	370	15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 건축정비 사업조합				
		기정	102-90	대	14	14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17 백마마을 510-20	최봉환외 11인				
		변경	102-90	대	14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 건축정비 사업조합				
계		기정	4필지			1,147						
		변경	4필지			1,200						

▶ 도시계획시설 (소로3-1호선)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시·구	리·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기정	98-1	도	415	17		서울특별시				
		변경	98-1	도	415	1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기정	100-36	도	14	5		서울특별시				
		기정	102	대	1,875	75	서울 동작구 동작동 102	김광성의 32인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81 (신사등지점)	(주)한국 외환은행	근저당권설정	
		변경	102	대	1,875	6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3-5	대	181	6	서울 동작구 동작동 103-4	염남섭				
		변경	103-5	대	181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3-6	대	181	79	서울 동작구 동작동 103-4	염남섭				
		변경	103-6	대	181	94.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3-8	도	139	32	서울 중랑구 목동 20 신내두산아파트 상가-208	김종욱외 2인				
		변경	103-8	도	139	37.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4-1	대	288	220	서울 동작구 동작동 104-1	이희준				
		변경	104-1	대	288	23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104-5	구	258	12		동작구				
		기정	104-12	대	3	3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8-25 3층	공작파크맨션 재건축조합				
		변경	104-12	대	3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27길 17, 203호(방배동, 남부종합시장)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정	332-4	도	95.5	25.7		동작구				
계		기정	10필지			474.7						
		변경	10필지			505						

◆ 서초구고시 제2019-124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6호(2005.12.30.)로 결정된 서초구 우면동 700번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700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칭 : 우면동 700번지 사회복지시설 신축공사

3. 도시관리계획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사①	사회복지시설	우면동 700번지	1,583.0	증0.1	1,58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6호 (2005.12.30.)	면적산정 착오정정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①	우면동 700번지 사회복지시설	○ 시설면적 변경 · 1,583.0㎡ ⇒ 1,583.1㎡(증0.1㎡)	○ 면적산정 착오정정 ·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적확정 측량 결과 반영

※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 면적 착오정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4. 사업면적 및 규모

구분	내용	비고
사업시행면적	1,583.10㎡	
건축면적	355.38㎡	
연 면 적 (지상층 연면적)	1,396.13㎡ (1,049.18㎡)	
건 폐 율	22.45%	법정 60%이하
용 적 률	66.27%	법정 150%이하
층 수	지하1층 / 지상3층	법정 4층이하

5.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세진모터스 주식회사(대표 오연균)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촌4길 19(우면동)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인	
									성명	주소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700	대	1,583.1	1,583.1	세진 모터스	서초구 성촌4길 19	근저 당권	중소 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지상권	중소 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름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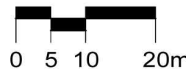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사회복지시설	우면동 700번지	1,583.0	증0.1	1,58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6호 (2005.12.30.)	면적산정 착오정정

범례

--- 공공주택지구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19-614호

도시계획시설(새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9-48호(2019.4.1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새꿈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폐지내용 및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내용·서류는 용산구청(공원녹지과 ☎ 02-2199-7603)에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 폐지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중 의견서를 작성하여 용산구청(공원녹지과 ☎ 02-2199-760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폐지)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8-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폐지)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2) 사업의 명칭 : 새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폐지) : 토지보상(106.5㎡)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폐지)

-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폐지)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 및 그외의 권리의 명세(폐지) : 별 첨

사. 실시계획 폐지사유 : 실시계획 사업계획(내용) 변경으로 인한 폐지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용산구보)에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폐지)

연번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	용산구 동자동 8-1	대지	106.5	106.5	○○○○○ ○○○○○	서울시 ○○○구 ○○○동 ○○-○				새꿈 어린이 공원

◆ 용산구공고 제2019-615호

**도시계획시설(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9-49호(2019.4.18.)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폐지내용 및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내용·서류는 용산구청(공원녹지과 ☎ 02-2199-7603)에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 폐지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중 의견서를 작성하여 용산구청(공원녹지과 ☎ 02-2199-760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폐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폐지)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 사업의 명칭 : 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폐지) : 토지보상(1,412.6㎡), 건물보상(1동/137.47㎡)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폐지)

-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 및 그외의 권리의 명세(폐지) : 별 첨

사. 실시계획 폐지사유 : 실시계획 사업계획(내용) 변경으로 인한 폐지

아. 공람공고 방법 : 서울시보(용산구보)에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폐지)

연번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	용산구 이촌동 301-86	대지	1,412.6	1,412.6	○○○○○ ○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빌딩 ***호				꿈나무 소공원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폐지)

연번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주) 또는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	용산구 이촌동 301-86	건물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슬래브지붕 2층 파출소	137.47	대한 민국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관리청	이촌 파출소

◆ 용산구공고 제2019-616호

**도시계획시설(이촌소공원 조성사업)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9-70호(2019.5.30.)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이촌소공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폐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폐지내용 및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내용·서류는 용산구청(공원녹지과 ☎ 02-2199-7603)에서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할 수 있으며, 사업 폐지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중 의견서를 작성하여 용산구청(공원녹지과 ☎ 02-2199-760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폐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6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폐지)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사업의 명칭 : 이촌소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폐지) : 토지보상(1,736.9㎡)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폐지)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 및 그외의 권리의 명세(폐지) : 별 첨

사. 실시계획 폐지사유 : 실시계획 사업계획(내용) 변경으로 인한 폐지

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용산구보)에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폐지)

연번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	용산구 이촌동 301-60	공원	1,736.9	1,736.9	○○○○○ ○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빌딩 ***호				이촌 소공원

◆ 노원구공고 제2019-67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동네뒷산공원화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 (2016.8.25.)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산145-11번지 일대 수락산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 서류는 노원구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45-1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수락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면적 : 3,676㎡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청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간

사. 공고방법 : 시보게재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 푸른도시과(☎02-2116-3943)

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붙임

토 지 조 서

- ☐ 사업명 : 수락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노원구 상계동 산145-11	임야	18,792	1,208 (165/19,240)	강인숙	서울 동작구 성대로12길 83, 101호(상도동, 영진빌라)				
				1,208 (562/19,240)	구자혁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100, 304호(괴안동, 현대홈션)				
				1,208 (331/19,240)	김명선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38, 707동 1303호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1,208 (661/19,240)	김백란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47, 109동 703호(신수동, 두암타운)				
				1,208 (165/19,240)	김선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78 다동 202호(파장동, 오피스케이빌라)				
				1,208 (661/19,240)	김성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80, 211동 1603호 (연수동, 연수2차우성아파트)				
				1,208 (1,322/19,240)	김점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48번길 21(풍동)				
				1,208 (330/19,240)	김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 33 104동 601호 (선암동, 선운지구 진아리채)				
				1,208 (166/19,240)	김지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5, 2동 1012호(신길동, 삼성아파트)				

토 지 조 서

- ☐ 사업명 : 수락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노원구 상계동 산145-11	임야	18,792	1,208 (331/19,240)	김충섭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10번길 54, 604동 601호 (검암동, 검암2차신명스카이뷰)				
				1,208 (248/19,240)	김희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29번길 28-4(분당동)				
				1,208 (330/19,240)	문애자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158길 30, 302호 (신림동)				
				1,208 (165/19,240)	박덕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95길 16, 101동 2103호(개봉동, 삼호아파트)				
				1,208 (595/19,240)	박정수	전라남도 여수시 무수로 50, 111동 302호 (학동, 신동아파밀리에)				
				1,208 (331/19,240)	박평하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원동4길 11-1				
				1,208 (1,488/19,240)	배성임	충청남도 서산시 정연면 성연3로 76, 405동 1601호 (힐스테이트 서산아파트)				
				1,208 (1,091/19,240)	봉희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446번길 58-5, 202호 (백석동)				
				1,208 (331/19,240)	서문광순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35, 8동 802호(성산동, 시영아파트)				

토 지 조 서

- ☐ 사 업 명 : 수락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노원구 상계동 산145-11	임야	18,792	1,208 (1,117/19,240)	선은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번3길 8 503동 1004호(불로동, 삼보해피하임)					
				1,208 (331/19,240)	안형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숫대로 24, 106동 204호 (삼천동1가, 오성아파트)					
				1,208 (24.75/19,240)	오선열	경기도 군포시 곡관로8번길 6, 102동 104호 (산본동, 임광그대가아파트)					
				1,208 (324/19,240)	오이화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93, 508동 103호 (청라동, 청라SK VIEW)					
				1,208 (331/19,240)	위경남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1길 10-1, 106동 1501호(답십리동, 동아아파트)					
				1,208 (330/19,240)	윤해영	서울 성북구 보문사길 84, 403호 (보문동6가, 골드페밀리움)					
				1,208 (165/19,240)	이금자	서울 관악구 조원로 25, 11동 1110호 (신림동, 강남아파트)					
				1,208 (212/19,240)	이미정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47, 1408동 402호(중동, 연화마을)					
				1,208 (331/19,240)	이민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안로68번길 7-10(운중동)					

토지조서

- 사업명 : 수락산 동네텃밭 공원화사업
 □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노원구 상계동 산145-11	임야	18,792	1,208 (165/19,240)	이복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526번길 27-17(괴안동)					
				1,208 (661/19,240)	이영석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0					
				1,208 (331/19,240)	이윤숙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373-20, 1102동 503호 (낙양동, 대광 로제비앙 포레스트)					
				1,208 (331/19,240)	이창오	서울 강동구 진행도로 99, 1412호 (길동, 강동한신휴플러스주상복합)					
				1,208 (661/19,240)	장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 19, 105동 405호(창신동, 쌍용아파트)					
				1,208 (331/19,240)	전병오	서울 광진구 면목로 22-6(군자동)					
				1,208 (165/19,240)	정선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83번길 23-25, 112동 201호 (관산동, 다울숲)					
				1,208 (992/19,240)	조순자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15, 108동 308호(하안동, 고층주공아파트)					
				1,208 (661/19,240)	조영락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48, 305-1401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토 지 조 서

- ☐ 사업명 : 수락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노원구 상계동 산145-11	임야	18,792	1,208 (851.25/19,240)	주식회사 우리법원경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1, 2층(중동, 위브더스테이트)				
				1,208 (165/19,240)	최신용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32번길 1, 104호 (창조아파트)				
				1,208 (430/19,240)	한인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65, 203동 304호(여월동, 여월휴먼시아)				
				1,208 (397/19,240)	홍영석	경기도 구리시 인창2로 13, 101동 505호 (인창동, 구리 더샵 그린포레)				
2	노원구 상계동 산145-19	임야	5,670	1,208 (660/19,240)	황선자	광주광역시 동구 중심천로 88, 101-1505(학동, 금호베스트빌)				
				1,412 (992/7,309)	김후남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4로 126, 201동 408호 (공간가든2차아파트)				
				1,412 (2,644.06/7,309)	윤지숙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02번길 20, 104동 804호 (호원동, 신일유평플러스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압류	

토 지 조 서

- ☐ 사 업 명 : 수락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지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노원구 상계동 산145-19	임야	5,670	1,412 (1,028.3/7.309)	최동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파운틴 벨리 산마테오 미17240호	김현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92-124	가압류	
							신혜자	서울 중랑구 묵2동 237-13	가압류	
							조달호	서울 도봉구 수유4동 569-9	가처분	
							조약래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 12동 1102호	가처분	
							조현영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두산아파트 102동 1508호		
							김명재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2-13		
							홍윤표	서울 노원구 공릉동 366-5 양지연립 가동 104호		
							유미자	서울 도봉구 수유2동 279-44	근저당권	
							김근식	서울 중랑구 묵1동 174-1		
							손병조	서울 노원구 공릉동 517-61,101		
					서대문 세무서				압류	

토 지 조 서

- ☐ 사 업 명 : 수락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지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노원구 상계동 산145-19	임야	5,670	1,412 (2,644.64/7,309)	한기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4길 110-12(중계동)	이도훈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658	가처분	
							정정희	서울 노원구 상계동 143-40	가입류	
							정연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9-7, 1110호 (수내동, 현대판테온)	가등기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의료보험회관(노원지사)	압류	
							동대문구		압류	
3	노원구 상계동 산145-22	임야	1,056	1,056	산림청		노원구		압류	
							황영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명산길 19, 102동 109호(창신동, 쌍용아파트)	압류	
							남양주 세무서		압류	
							이한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34, 3008동 2702호	근저당	

물진조서

- ☐ 사업명 : 수락산 동네텃밭 공원화사업
☐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노원구 상계동 산145-11	분묘		8		미상					
		묘지기둥		3		미상					
		묘지재단석		2		미상					
2	노원구 상계동 산145-19	분묘		1		미상					
		묘지기둥		2		미상					
3	노원구 상계동 산145-22	분묘		9		미상					
		묘지기둥		3		미상					
		묘지재단석		3		미상					

◆ 마포구공고 제2019-6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15호(1972. 8. 11.)로 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3호(2015. 5. 21.)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목과(☎02-3153-9754)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48-9 ~ 149-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염리동 148-9 ~ 128-19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 도로폭 : 10m
 - 연 장 : 5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인가일로부터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사. 열람기간 : 2019.07.04. ~ 2019.07.18.(14일간)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염리동 150-4	도로	1,326	1,206	서울 특별시 마포구					
2	염리동 149-18	대	185	17	황용*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83-9 황실자이 101-1201				
3	염리동 149-17	대	268	5	김미*	서울시 강동구 천호역14길28				(1/2)
					김미*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5길 7				(1/2)
4	염리동 149-9	대	304	17	유춘*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9-4				

<물건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리동 148-8	계단	나무 데크	4	김이*	서울시 마포구 영리동 148-8				
2	영리동 149-18	건물 (1층)	연외조 평육개	12	황웅*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83-9 황실자이 101-1201				
		건물 (2층)	연외조 평육개	12	황웅*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83-9 황실자이 101-1201				
3	영리동 149-17	계단	나무 데크	4	김미*	서울시 강동구 천호역14길28				(1/2)
					김미*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25길 7				(1/2)
4	영리동 149-9	가건물	가건물	5	유춘*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9-4				

◆ 강서구공고 제2019-99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강 서 구 청 장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m²)

구 분	시행기간 (2019~ 2028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5년차)			2단계(6년차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계	18	111,467	90,298	18	111,467	90,298	-	-	-	-	-	-	
도 로 (재정적 집행)	12	27,391	27,516	12	35,047	27,516	-	-	-	-	-	-	
공 원 (재정적 집행)	1	74,299	26,462	1	74,299	26,462	-	-	-	-	-	-	
도 로 (비재정적 집행)	5	9,777	36,320	5	9,777	36,320	-	-	-	-	-	-	

2.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별첨

3. 관계도면: 생략

4.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2600-638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사업 ·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백만원)	계획기간 중 사업비(2019~2028년)										실호 시기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1년~ '3년차	2~1단계 '4년~ '5년차		2~2단계 '6년차 이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소 계			90,298	90,298	53,978	22,854	31,125		36,320	90,298			2020		
공원	1	화곡동 산199일대	2019 ~2023	미집행면적 (71,854㎡)	26,462	26,462	26,462	11,731	14,731			26,462			2020		
도로	2	방화동 271-1~ 방화동 258-1	2019 ~2020	L=200m B=10m	851	851	851	139	712			851			2020		
도로	3	공향동 41-44~ 공향동 56-11	2019 ~2020	L=85m B=6m	1,309	1,309	1,309	548	761			1,309			2020		
도로	4	방화동 322-2~ 방화동 318-3	2019 ~2020	L=126m B=4~8m	1,267	1,267	1,267	518	749			1,267			2024		
도로	5	공향동 40-8~ 공향동 34-60	2020 ~2021	L=210m B=8m	2,601	2,601	2,601	946	1,655			2,601			2020		
도로	6	방화동567-4~ 방화동607-211	2020 ~2021	L=732m B=10m	3,128	3,128	3,128	1,064	2,064			3,128			2020		
도로	7	가양동 146-63~ 가양동 155-5	2020 ~2021	L=170m B=8m	1,787	1,787	1,787	690	1,097			1,787			2020		
도로	8	등촌동 365-105~ 등촌동 364-24	2020 ~2021	L=120m B=4~6m	985	985	985	408	577			985			2020		
도로	9	영창동 산30-17~ 영창동 산32-1	2020 ~2021	연장280m 폭원12m	343	343	343	110	233				343		2020		
도로	10	공향동 46-2~ 공향동 45-62	2020 ~2021	연장66m 폭원8m	1,391	1,391	1,391	614	777				1,391		2020		

사업 · 시설 부문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개요	총 사업비 (백만원)	계획기간 중 사업비(2019~2028년)										실효 시기		
						총계	국비	지방비			지방채	공기업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시비	구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도로	11	공항동 44-8~ 공향동 42-30	2020 ~2021	연장212m 폭원8~12m	844	844	844	145	699					844			2020	
도로	12	방화동 621-17~ 양화동 613-94	2020 ~2022	연장213m 폭원8m	4,736	4,736	4,736	2,070	2,666					4,736			2020	
도로	13	방화동 619-4~ 방화동 620-288	2020 ~2022	연장135m 폭원9~10m	8,274	8,274	8,274	3,873	4,401					8,274			2020	
도로	14	공항동 3-5 ~ 공향동 14-82	2020 ~2022	연장302m 폭원8~14m	10,205	10,205							10,205				2020	
도로	15	공항동 14-91 ~ 방화동 609-187	2020 ~2022	연장163m 폭원8~21m	16,927	16,927							16,927				2020	
도로	16	가양동 148-2~ 가양동 151-1	2020 ~2022	연장90m 폭원6m	1,179	1,179							1,179				2020	
도로	17	방화동 620-158~ 방화동 612-20	2016 ~2022	연장153m 폭원10m	7,907	7,907							7,907				2020	
도로	18	방화동 769-22~ 방화동 769-26	2020 ~2022	연장16m 폭원8m	102	102							102				2020	

◆ 구로구공고 제2019-10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13-71호(2013. 6.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길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택과(☎860-2940)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97-3번지의 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길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다. 사업규모 : 면적 : 748㎡, 도로확장 폭:6m~8m, 연장:119.27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길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12-38번지 길훈아파트 관리사무소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길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사 업 의 명 칭 : 길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권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개봉동 297-7	대	158	1	한대수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3길 87, 101동 1802호				
2	개봉동 297-3	대	329	213	허정무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50, 1223동 1503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35	근저당권설정	
3	개봉동 297-25	대	23	1	엄정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23번길 46, 108동 102호				
4	개봉동 297-26	도로	19	7	국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	개봉동 298-19	잡종지	284	68	신명석	서울시 등대문구 이문동 257-597				
					신창석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31-1				
					박숙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39번길13, 102동 1403호				
					박영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로71길64, 106동 702호				
					박영호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5길62, 5동 108호				
6	개봉동 산64-10	임야	390	26	신명석	서울시 등대문구 이문동 257-597				
7	개봉동 298-6	전	1,921	273	신명석	서울시 등대문구 이문동 257-597				
					신창석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31-1				
					박숙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39번길13, 102동 140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시세채납처분 에 의한 압류	
					박영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로71길64, 106동 70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시세채납처분 에 의한 압류	
					박영호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5길62, 5동 10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시세채납처분 에 의한 압류	
8	개봉동 298-39	전	69	3	김인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38-5, 301				
					이원영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295				
					구창한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5길 91, 1동 101호				
9	개봉동 산64-41	임야	8,549	156	신명석	서울시 등대문구 이문동 257-597				
					신창석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31-1				
					박숙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39번길13, 102동 1403호				
					박영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로71길64, 106동 702호				
					박영호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5길62, 5동 108호	구로구 세무관리과		압류	

◆ 영등포구공고 제2019-1158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Ⅰ-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1999. 2. 21.)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8-781호(2018.5.24.)로 열람공고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2번지 일대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Ⅰ-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련 도서를 (재)열람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42)
3. (재)열람사유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영등포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4.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5. 특별계획구역(Ⅰ-3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계도서 열람 및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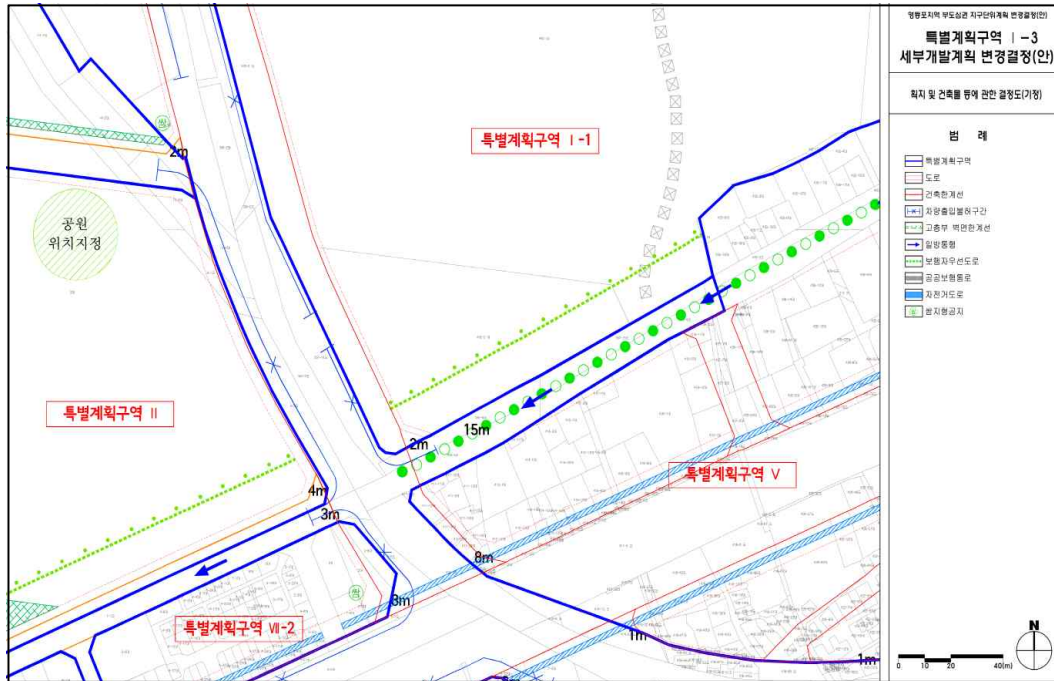
구분	특별계획구역지침			Ⅰ - 3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기정	변경			
		Ⅰ - 1	Ⅰ - 3		
구역	Ⅰ - 1 (구역면적 61,291.4㎡)	Ⅰ - 1 (55,966.9㎡)	Ⅰ - 3 (5,324.5㎡)	-	구역분할
도시계획 시설	-	-	◦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영등포동4가 442-2번지 - 연면적 : 3,652.0㎡ - 환산부지면적(대지지분 포함) : 1,291.8㎡ : 824.9㎡(계약면적 토지환산) + 466.9㎡(대지지분)	좌동	신설
건폐율	• 60% 이하	좌동	• 60% 이하	좌동	-
높이	• 95m 이하	좌동	• 80m 이하	좌동	-

구분		특별계획구역지침			1 - 3 세부개발 계획(안)	비고
		기정	변경			
			1 - 1	1 - 3		
용 적 률	기준	300%	좌동	300%	좌동	-
	허용	400%		400%		
	상한	공공시설을 20% 이상 설치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추가면적에 대해 적용		공공시설을 20% 이상 설치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추가면적에 대해 적용		
용 도	불허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거복합건축물 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 시설 (도매시장 중 청과물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 시설 (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좌동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도매시장 중 청과물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호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좌동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전체 지상부 연면적의 20% 이상 권장 용도 준수시 인센티브 부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 시설 중 관광호텔 • 2030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정한 산업시설 및 산업지원시설 ※ 전체 지상부 연면적의 20% 이상 권장용도 준수시 인센티브 부여		
	권장		좌동		좌동	-
기 타 사 항	건축 한계선	• 양평로 3m, 경방부지 서측 영등포고가도로변 2m 지정	좌동	• 영신로24길변 3m, 타임스퀘어 서측 고가도로변 5.5m 지정	좌동	-
	고층부 벽면 한계선	• 남측 보행자우선도로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으로 15m의 고층부 벽면한계선 지정(적용높이 20m이상)	좌동	-	-	-
	1층부 벽면 한계선	-	-	• 저층부 가로활성화 도모 및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영신로24길변에 1층부 벽면 한계선 5m 지정	좌동	신설
	공개 공지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	좌동	• 특별계획구역 1-1구역 및 2구역과의 보행 연계성을 고려하여 결정	• 대상지 남단에 2개소 결정 (타임스퀘어 서측 영등포고가도로변과 타임스퀘어 경계부)	-
	차량 출입 금지 구간	-	-	• 간선도로 및 교차부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고, 보행활동의 연속성 부여	좌동	-
	주차장	• 공용주차장 100면 이상 확보(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사항 반영)	좌동	• 기존 주차장 기능을 고려하여 건축물 내 개방형 주차장(민간 설치·운영) 일부 확보	좌동	-

4.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4.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펠리스 190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38척 (기선9척, 부선29척)	공사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19.07.01. ~ '19.07.31.	'19. 06.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광장티 엔비	서울시 강동구 선사로6길 54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73-2번지상 한강,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57번지상 한강	선박 27척 (기선6척, 부선 21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9.07.01. ~ 2019.09.30.	2019. 06.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59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 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174-1)	선박 3척 (기선1,부선2)	정박대기	'19.07.01. ~ '19.07.31.	'19. 05.2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60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미래환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807번길 26,101호	서울시계 내 한강 (올림픽대교 아래 풍납취수장)	선박 1척 (고무보트)	조류차단막 철거 및 오일펜스 설치	'19.06.27. ~ '19.07.08.	'19. 06.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61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B동 1002	서울시계 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174-1번지)	선박 1척 (부선1)	정박대기	'19.07.01. ~ '19.08.31.	'19. 06.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62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B동 1002	서울시계 내 한강 (강서구 개화동 174-1번지)	선박 1척 (기선1)	정박대기	'19.07.01. ~ '19.12.31.	'19. 06.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사회체육진흥회 수상스키중앙 연합회 (대표 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	-	수상시설물 452㎡	협회 수상스키 훈련장	2019.7.1. ~ 2019.12.31. (6개월)	2019. 6.2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에프앤에이치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	-	• 육상 150㎡	유선장 상수도 관로 공사	2019.7.1. ~ 2019.7.31. (1개월)	2019. 7.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오옌 대표 소문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420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80-2 (한강)	유선장 1,350㎡	유선사업	2019. 7. 1 ~ 2019.12.31	2019. 6.28
			선박 2척			
			전기, 상하수도 관로 17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9-1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장애인수상스키협회 (대표 이**)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	수상시설물 383.1㎡	수상스키 훈련장	2019.7.1. ~ 2019.12.31. (6개월)	2019. 7.1.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9-166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사전통지분)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19.7.4. ~ 7.17.(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19.7.18. ~ 2019.7.31.(14일)
6.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내역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발년월	사전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원)	자정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납주소	납세자소재주소
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33	김*영	비위기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31 16:31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나길 **	납세자소재주소 (군자동)
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34	차*환	비위기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31 18:02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우례순로로 **	납세자소재주소 ****동****호 (창곡동, 위례**단지)
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35	유*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1 13:34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	납세자소재주소 ****동****호 (연희동, 연희대우아파트)
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39	김*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1 13:39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	납세자소재주소 *중 (남현동)
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44	김*호	비위기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6-01 13:08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길 **	납세자소재주소 ***호
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49	김*철	비위기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6-01 16:40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길 ***~**	납세자소재주소 ***호 (쌍문동, 화이트빌)
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50	박*실	비위기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6-01 15:13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길 **~*	납세자소재주소 *중동 (자양동)
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66	김*호	비위기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6-02 14:08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길 **	납세자소재주소 ****동****호 (잠원동, 신반포참구아파트)
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68	최*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2 14:51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	납세자소재주소 ****동****호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1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65	박*신, 최*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2 15:17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길 **~***	납세자소재주소 ****동****호 (방이동)
1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67	최*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2 15:04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납세자소재주소 *중 (논현동)
1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69	임*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2 16:51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현로*번길 **	납세자소재주소 A동****호 (양지동, 금성맨션)
1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86	송*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5-12 18:04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	납세자소재주소 *동****호 (잠원동, 한강아파트)
1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0988	임*원, 오*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5-12 18:06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양주시 봉안구 경수대로***번길 **	납세자소재주소 ****동****호 (호계동, 한마음자아파트)
1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안과태료	2019-06	001000	김*자	비위기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15 18:10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	납세자소재주소 ****동****호 (아현동, 이원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종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원)	자정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1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01	조*진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15 19:15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	***동 ***층 (잠원동, 신반포**차이파트)
1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06	홍*찬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21 19:12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길 ***	(청파동*가)
1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07	김*열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18 19:37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길 **	***동***층 (도암동, 도암동 신일해피트리아파트)
1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08	정*근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18 19:37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길 **	*층 ***호 (이태원동)
2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13	황*우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25 19:26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반길 *	***호 (은행동)
2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14	황*우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25 19:26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반길 *	***호 (은행동)
2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16	박*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5-26 13:22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호 (역삼동)
2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21	육*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5-26 13:24	50,000	40,000	기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반길 *	(구마동)
2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28	이*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5-26 13:58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길 ***	(방배동)
2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30	임*근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26 14:00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	(자양동)
2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36	김*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5-26 14:11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길 **	***호 (내발산동)
2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38	강*모, 박*원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5-26 14:12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호 (논현동)
2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40	김*석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26 19:26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가길 **	***호 (동선동*가, 원촌빌라)
2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41	임*규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26 18:09	50,000	40,000	수화거절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대성길	(송악읍)
3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법규제	2019-06	001043	박*원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30 15:39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호 (물동, 백두아파트)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제법년월	사전공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원)	자정납부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3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45	KELLY * JAMES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31 18:53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	***호 (사당동)
3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48	조*환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31 19:25	50,000	40,000	기타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	***동 ****호 (신원동, 리버힐샵 아파트)
3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49	피*택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31 19:26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길 ***-**	***호 (대치동)
3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50	(주)캐*엔터테인먼트 민트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6-01 18:43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호 (역삼동)
3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53	류*영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6-01 16:04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길 **	***호 (봉천동)
3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56	남*호	자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2019-05-12 18:11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동 ****호 (중동, 벨리스크아파트)
3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59	민*기	자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2019-05-12 18:16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미로 ***-**	***동B**호 (식사동, 몽블랑에)
3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62	문*철	자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2019-05-12 18:22	50,000	40,000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하대로*길*번길 *	***호 (옥련동, 마이클+)
3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67	김*빈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12 18:17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길 **	비동 *층 ()
4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70	하*희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10 19:26	50,000	40,000	주소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현*길 ***-**	***동***호 (봉천동, 은천*단지아파트)
4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73	김*주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10 19:32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길 ***-**	B***호 (논현동)
4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77	우*현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05 15:50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원로*길 **	***호 (사당동)
4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79	SELIMRAGY*M QAWAD	자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2019-05-05 15:47	50,000	40,000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원로 **	*층 (용산동*가)
44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81	이*철	바위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6-02 18:10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승정로*길 *	(공천동)
45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82	박*국	자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2019-05-18 18:00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원로*길 **	***동 ****호 (진원동, 신반포*차이퍼트, **동*반)
46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 모전및이용관련관리과태료	2019-06	001085	한*경	자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행위	2019-05-23 17:10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	B***호 (중곡동, 기든시티)

순번	세목코드	세목명	적법년월	사전종지 번호	성명/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원)	자정납금액(원)	반송사유	납세자기본주소	납세자상세주소
47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관리비과태료	2019-06	001087	최*지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25 19:40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	***동 ***층 (잠원동, 신반교**차이파트)
48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관리비과태료	2019-06	001088	신*국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31 13:50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길 **	***호 (석촌동, 푸른명가)
49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관리비과태료	2019-06	001089	문*섭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5-31 15:35	50,000	40,000	폐문부재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모의로*길 ***	()
50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관리비과태료	2019-06	001092	김*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2 18:30	50,000	40,000	폐문부재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	***동***호 (녹양동, 청구아파트)
51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관리비과태료	2019-06	001095	VASSELIN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2 19:35	50,000	40,000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신로 ***~*	***호 (미아동)
52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관리비과태료	2019-06	001098	최*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2019-06-02 22:10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산대로*라길 ***~*	*층 (보림동)
53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환경공원 보전및이용관리관리비과태료	2019-06	001099	김*역	비과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019-06-05 19:45	50,000	40,000	기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길 **	***호 (정릉동)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8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SK텔레콤(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5길 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92번지
 - 면 적 : 3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통신주 설치
 - 내 역 : 통신주 1본 설치
5. 점용기간 : (당초) 2014.04.24.~2019.04.23.
(변경) 2019.04.24.~2024.04.2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8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광명지사장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1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569-2, 566-2, 565-2번지
 - 면 적 : 139.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송전선로 설치
 - 내 역 : 전선관로(PE관, D=200mm) 6공 : L=137m(지향성 압입구간)
전선관로(합성수지 파형관, D=175mm) 6공 : L=20m(개착구간)
개폐기(B=0.9m, L=1.3m) 5개소
5. 점용기간 : (당초) 2014.04.20.~2019.04.19.
(변경) 2019.04.20.~2024.04.1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8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륜이엔에스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5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1180-17번지
 - 면 적 : 64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관로 매설
- 내 역 : 가스관로 L=540m, B=5m (관 및 관보호구조물 540m×1.2m)

5. 점용기간 : (당초) 2012.02.14.~2017.02.13.

(변경) 2017.02.14.~2022.02.1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8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대륜이엔에스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5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창동 796번지 선
- 면 적 : 132.4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도시가스관 매설
- 내 역 : 도시가스관 매설(D=600mm, L=160m)

5. 점용기간 : (당초) 2013.04.30.~2018.04.29.

(변경) 2018.04.30.~2023.04.2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9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정정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정정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대륜이엔에스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0길 5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352-71번지 등 7필지
(하계동 352-71, 311-4, 상계동 754-14, 754-13, 754-6, 월계동 235-7, 230-2)
 - 면 적 : 433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가스관로 매설
 - 내 역
 - 가스관로 L=384m(D=500mm)
 - 관보호공 L=70m(D=600mm), 1m×1m 보호콘크리트(314m)
 - 압입구간 L=70m(D=800mm)
5. 점용기간 : 2016.04.13.~2021.04.12.(5년)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